발 간 등 록 번 호
11-1090000-000037-14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12

국 무 조 정 실

발간사

2003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로드맵 과제로 '국가평가 인프라 구축'이 선정된 이후,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합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1961년 심사분석 제도로 우리나라에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행정 체계 전반을 혁신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과정이 '계획-집행 · 점검-평가-환류'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였다는 점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제도적인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시행초기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안점을 두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과정, 시행 첫해인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의 내용 및 2007년도 평가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 백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업무평가 백서」가 각급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 연구와 관련한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국무조정실장 윤 대희

목 차

제 1 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제 1 절 정부업무평가의 의의 ····· 3
1. 정부업무평가의 도입 배경 ····· 3
2.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 3

제 2 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 4
1. 개 요 ····· 4
2.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 9 ~ 1981.10) ····· 8
3.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11 ~ 1994.12) ····· 9
4.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 4 ~ 1994.12) ····· 11
5.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12 ~ 1998. 2) ····· 13
6.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1998. 2 ~ 현재) ····· 14

제 3 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주요내용 ····· 20
1. 기본개념 ····· 20
2.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 21
3.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 22
4.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 24
5. 정부업무 성과관리 ····· 30
6.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 31

제 2 장 정부업무평가 세부내용

제 1 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 35
1. 자체평가 ····· 35
2. 특정평가 ····· 58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 94
1. 평가목적 및 배경 ····· 94
2. 평가 종류 ····· 95
3.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 ····· 95
4. 평가절차 및 방법 ····· 96

제 3 절 공공기관 평가 ·····103
1. 추진경위 ·····103
2. 평가 개요 ·····103
3. 공공기관의 평가계획 검토 및 평가결과 제출 ·····110

제 3 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 1 절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개념 ····· 121
제 2 절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 123
제 3 절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단계별 주요내용 ····· 128

제 4 장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 · 활용

제 1 절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 141
제 2 절 추진경과 ····· 142
제 3 절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기능 ····· 143
제 4 절 기대효과 ····· 147

제 5 장 향후 발전방향

제 1 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 151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 155
제 3 절 공공기관 평가 ····· 156
제 4 절 통합 평가체계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 ····· 157

부 록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 163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07~2009) ····· 183
3.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207
4.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 255

표 목 차

〈표 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 8
〈표 2〉 '06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37
〈표 3〉 '07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 39
〈표 4〉 '06년도 자체평가수행노력 부문 평가지표 ····· 41
〈표 5〉 '07년도 자체평가수행노력 부문 평가지표 ····· 42
〈표 6〉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평가대상의 변화 ····· 44
〈표 7〉 '06년도 일반재정사업 공통지표 ····· 45
〈표 8〉 '06년도 R&D 자체평가 평가지표 ····· 46
〈표 9〉 재정운용 평가지표 ····· 46
〈표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편 내용 ····· 47
〈표 11〉 '06년도 인사 부문 평가지표 ····· 49
〈표 12〉 '07년도 인사 부문 평가지표 ····· 50
〈표 13〉 '06년도 조직 부문 평가지표 ····· 53
〈표 14〉 '07년도 조직 부문 평가지표 ····· 54
〈표 15〉 '06년도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 56
〈표 16〉 '07년도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 57
〈표 17〉 '06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 59
〈표 18〉 '07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 61
〈표 19〉 '06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 63
〈표 20〉 '07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 64
〈표 21〉 '06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지표 ····· 67
〈표 22〉 '07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지표 ····· 68
〈표 23〉 '06년도 법제업무 부문 평가지표 ····· 70
〈표 24〉 '06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 72
〈표 25〉 '07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 73

〈표 26〉 '0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평가지표 ····· 75
〈표 27〉 '06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 77
〈표 28〉 '0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 78
〈표 29〉 '06년도 청렴도 부문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80
〈표 30〉 '06년도 위기관리 부문 평가지표 ····· 82
〈표 31〉 '06년도 주요정책만족도 평가지표 ····· 84
〈표 32〉 '06년도 일반 민원 평가지표 ····· 85
〈표 33〉 '06년도 인터넷 민원 평가지표 ····· 85
〈표 34〉 '07년도 일반 민원 평가지표 ····· 87
〈표 35〉 '06년도 분석 특정과제 ····· 88
〈표 36〉 실수·실책 정책사례 ····· 89
〈표 37〉 '06년도 특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대상과제 ····· 90
〈표 38〉 '06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지표 ····· 92
〈표 39〉 '0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지표 ····· 93
〈표 40〉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류 ····· 95
〈표 41〉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96
〈표 42〉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 ····· 97
〈표 43〉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99
〈표 44〉 합동평가(14개 부처 46개 과제) ····· 100
〈표 45〉 개별평가(12개 부처 35개 과제) ····· 101
〈표 46〉 '07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과제 ····· 102
〈표 47〉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대상 ····· 104
〈표 48〉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 106
〈표 49〉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절차 ····· 110
〈표 50〉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 111
〈표 51〉 공공기관의 평가 현황('07. 7월 현재) ····· 112
〈표 52〉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공기업·준정부기관) ····· 113

〈표 53〉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기금) ····· 115
〈표 54〉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116
〈표 55〉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 116
〈표 56〉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117
〈표 57〉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지방직영기업) ····· 117
〈표 58〉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공사 및 공단) ····· 118
〈표 59〉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118
〈표 60〉 성과관리 추진전략 ····· 124
〈표 61〉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현황 ····· 127
〈표 62〉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 132
〈표 63〉 성과연봉 등급 결정 기본모델('07년도) ····· 136
〈표 64〉 '07년도 성과급 지급등급별 지급액(고위공무원의 경우) ····· 136
〈표 65〉 성과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143
〈표 66〉 평가업무시스템 주요기능 ····· 144

그림 목차

〈그림 1〉 합동평가 흐름도 ····· 98
〈그림 2〉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 122
〈그림 3〉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 130
〈그림 4〉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 131
〈그림 5〉 개인성과관리체계 ····· 133
〈그림 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체계 ····· 134
〈그림 7〉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 135
〈그림 8〉 시스템 간 연계체계 ····· 146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제1장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부.업.무.평.가.백.서

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의의

① 정부업무평가의 도입 배경

국내·외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및 기능 역시 확대되어 왔다. 이에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은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 결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 실시된 이래 심사분석, 심사평가, 정책평가, 국정평가 및 기관평가 등 유사한 다양한 개념 및 형태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정부업무평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부사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모든 장·단기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정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Harry/Hatrty),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David Nachmias) 등 다양한 학술적 논의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정의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와 "평가"의 합성어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호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상의 법률상 정의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사업 및 업무에 관하여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의 정책집행과정 중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은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활동이고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평가는 일반적으로 집행된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적 점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감사가 준사법적 행위로서 업무추진의 합법성 및 책무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정책의 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2절 정부업무평가의 연혁

1 개 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4월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를 크게 4단계(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도입단계는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라는 개념이 우리 정부에 처음 도입된 시기로 당시 내각수반 기획조정실('61. 9～'81. 10)의 심사분석이라는 업무로 추진되었다.

- 1961년 9월 내각수반 하에 내각기획통제관을 신설하고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수행
-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
- 평가교수단 등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관련 진도분석,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중심의 '과정평가' 기능 수행(「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947호)
- 동 평가제도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 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시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고 폐지('81. 11)

둘째, 과도기 단계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81. 11～'94. 12)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90. 4～'94. 12)로 이원화되었다.

- 경제기획원에 의한 심사분석
  - 1981년 심사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
  - 부처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부처 자율로 수행하도록 하고, 기획원은 각 부처의 심사분석결과를 종합·조정하는데 주력
  - 사업진도 위주의 분석 및 공기업 등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역점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지닌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를 보완하고, 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을 신설(「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 4)
  - 주요 국정현안과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시책들을 분석·평가하고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점검(연 2회 정책평가보고회)
  - 평가대상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능률성, 국민 만족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평가와 심사분석의 비교
- 정책평가는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당 부처의 차기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 도모
- 심사분석은 개별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

✱ '98년 행정조정실(실장 : 차관급)을 국무조정실(실장 : 장관급)로 격상

셋째, 재정비 단계로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94. 12～'98. 2)를 수행하였다.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을 수행(「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31호, 1994. 12)
- 다만,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정부시책의 책임성 확보를 목적

▪ 당해연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평가' 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수시평가' 로 구분

넷째,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8. 3～2006.3) 기능을 강화한 발전 단계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이른바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업무평가의 법적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다음 해 5월부터 동법에 의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기관평가제 도입
- 평가기능의 혁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성과와 추진의지 등 기관역량,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를 도입
- 평가의 전문성 · 객관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 및 「평가전문위원」 구성 · 운영

-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분야별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

✱ 기관평가제 운영의 기본취지는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제정 · 운영

-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평가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 도모
-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한 현재는 통합단계(2006.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국가평가인프라 구축"을 행정개혁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정평가인프라구축기획단」을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종전의 법을 대체한 '국정평가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년여 동안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 ·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그간 개별적 · 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각종 평가의 통합실시를 규정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자율적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의 예산, 조직 및 인사관리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변천 개요

단계 / 내용	도 입	과 도		재 정 비	발 전	통 합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시 기	1961.9~ 1981.10	1981.11~ 1990.3	1990.4~ 1994.12	1994.12~ 1998.2	1998.3~ 2006.3	2006.4~ 현재
내 용	5·16직후 1961년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	1981년에 심사분석 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으로 이관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기능 신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 수행 -정부투자기관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도입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도입 추진
근 거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 4)	정부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821호 1982.5)	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4)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531호 1995. 2)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법률제6347호 2001.1.8)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제7928호 2006.4.1)

②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 : 1961. 9 ~ 1981. 10

가. 도입배경

5·16 직후인 1961년 정부부문에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조직법상 최초로 신설되었다. 심사분석 제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국가·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정을 원활히 통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하였다. 이때부터 기능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될 때 까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추진체계

내각수반 밑에 「내각기획통제관실」을 신설('61. 9. 4)하여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였으며, 각 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의 심사, 분석,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이후, 제 3공화국 헌법공포('62. 12.26)로 대통령제가 채택됨에 따라 정부조직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내각수반이 국무총리로 개편되면서 내각기획 통제관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을 신설('63.12.16)하여, 기본운영계획 조정제도 및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기획통제업무를 보좌하였다.

다. 평가방법

당시 심사분석제도는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1971년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교수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 부처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대통령령 제6143호로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제정('72. 4. 14)을 통해 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③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 1981. 11 ~ 1994. 12

가. 도입배경

1981년 11월 정부의 대폭적인 기구개편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이 폐지되고 심사분석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는 1982년 5월 심사분석 업무의 근거법령인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나. 추진체계

1984년「정부투자기관관리기준법」및「동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의 기능이 일부 조정되면서 1984년 6월에는 심사분석국을 심사평가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심사평가국에서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핵심시책에 대한「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다. 평가방법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은 그 실시목적 및 시기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사후평가)으로 구분되며 집행관리는 다시 실시목적 및 기법에 따라 점검과 집행 중 평가로 세분되어 운영되었다.

심사분석은 원칙적으로 정부활동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활동 또는 일련의 상호 연관된 모든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즉,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는 시책과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은 다시 건설적 사업과 시책적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보고된 심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심사분석 결과는「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 경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편성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영토록 배치하며, 비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한편,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④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 1990. 4 ~ 1994. 12

가. 도입배경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제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6공화국 중반기를 맞아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평가·조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내각통할 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사회 여건변화 속에서 정부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추진체계

이러한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심사평가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로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이루어졌다.

총리령(제364호)으로 「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공포('90. 4. 16)됨에 따라 행정조정실에 평가기능이 신설되어 제2행정조정관실에 정책평가심의관실이 설치되었으며, 당시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상위평가도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위주로 흐르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 평가방법

정책평가 시 역점을 둔 주요 평가사항은 첫째,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 둘째,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셋째, 정책추진의 성과분석 넷째,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분석(특기사항) 등이 있었으며, 국무총리실에서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부의 주요정책이었다.

정부 주요정책은 매년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주요시책과제와 부처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국정운영 주요과제이다.

심사분석제도에 비해, 이 시기의 평가제도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와 같이 범위가 넓은 정책을 전 정부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침」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시달(정책평가심의관실 주관)하면, 각 부처는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총리실에 제출하였고, 총리실은 부처 자체평가를 토대로 종합조정평가를 실시했다.

종합조정평가는 부처 자체평가내용 검토를 위하여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리스트(세부실천계획 포함)"를 통해하여 이에 따른 사실 검증에 최대한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평가심의관실은 각 평가반에서 평가한 결과를 사항별로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조정회의」를 운영(행정조정실장 주재)하였고, 부처별 과제에 대한 「평가조정회의」결과를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 각 부처 자체평가 (연 2회) 보고
-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 (자문회의 활용)
- 상반기 : 국무회의 보고 (7~8월)
- 하반기 : 연말 국무회의 및 대통령 보고 (국정평가에 포함)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예산의 효율적 활용, 포상제도 반영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되 각 부처를 독려·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차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제도개선에 활용하였다.

✤ 심사분석과 정책평가의 기능 비교

199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는 개별적 특정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진도와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하였고, 행정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책평가의 근본취지는 국정전반에 걸쳐 주요정책과제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개선방향을 각 부처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양 제도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과 평가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었다.

⑤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 : 1994. 12 ~ 1998. 2

가. 도입배경

1994년 이전까지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1차 기초 자료로 하여 총리실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에 1994년 12월 23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종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가 심사평가업무로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나. 추진체계

1994년 12월 기구개편으로 통합된 심사평가업무는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에서 제4행정조정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4행정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과 심사평가2심의관의 2개 심의관으로 확대되었다.

제4행정조정관은 내각 사정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정부심사평가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다. 평가방법

(1) 평가 종류 : 정기 심사평가 및 수시 심사평가

정기 심사평가는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 시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달성 여부와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수시 심사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였다. 특히, 이는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지 확인 · 점검을 통한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평가실시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2) 평가결과 보고 및 평가결과 처리

정기 심사평가 실시결과는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수시 심사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수시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기에 사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특히 심사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보고대회」등의 형식으로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는 정부업무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는데, 심사평가결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배정 시 반영하였으며, 평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조치 미흡사항은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 강구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안건화하여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였다.

⑥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 1998. 2 ~ 현재

가. 기관평가제도(1998. 2 ~ 2006. 3)

(1) 도입배경

1997년 말부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종래의 정책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이 공익·공평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한층 높이고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처 유인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평가제도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로 격상·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4행정조정관도 심사평가조정관으로 변경되어 심사평가 업무가 강조되었다.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종래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을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5774호, 1998. 4. 15)하여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의 실적평가 중심에서 평가기능에 경쟁요인을 도입하여 각 기관의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였다.

(2) 추진체계

가) 국무조정실

기관평가의 총괄적 주관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며, 심사평가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실과 심사평가2심의관실을 두었다.

- 심사평가1심의관실은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계획 및 제도발전, 평가기준·지표·평가환류 등 평가제도 관련업무와 경제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
- 심사평가2심의관실은 지방자치단체평가와 정부업무 중 사회문화 분야(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일반행정분야(통일,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

나)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 발전을 위하여 1998년 4월 17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범하였으며,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 이후 심의기구로 변화되었다.

(3)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의 종류에는 기관평가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가 있다.

- 중앙행정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 국무총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주요 정책과제 평가, 기관역량 평가 및 국민만족도 조사 등 기관평가 실시
- 또한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과제 평가를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4) 평가기준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설정(6개 평가기준, 10개 평가착안사항)
▪ 모든 주요정책과제에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실시
▪ 각 부처도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 시 별도의 평가착안사항에 대해 평가

(5)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하여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조치 사항의 이행상황은 상·하반기 정기평가 시 점검

나. 통합 정부업무평가(2006. 4 ~ 현재)

(1) 도입배경

참여정부 출범 이후 종전의 평가에 대해 개별·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업무의 과중, 자체평가제도의 형식적 운영,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그리고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종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대체하는 「국정평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2) 추진체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종전의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조직관리), 기획예산처장관(예산관리), 중앙인사위원장(인사관리), 국무조정실장(주요정책) 등을 정부위원으로 포함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9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인 평가제도 설계,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및 다수 부처 관련시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다음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 **실무위원회**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무조정실 차장 및 정부업무평가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국무조정실 소속 1급 등 25인 이내로 구성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심사평가조정관실**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 내의 심사평가조정관실(조정관 : 1급)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지원 기능 및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한다. 즉, 매년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평가대상 업무확정, 현장 확인 등 평가실무와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해 및 평가관련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기관에 평가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담당관이 참석하는 연찬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의 종류

■ **중앙행정기관 평가**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며,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며,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되는 바, 각 부처는 동 부문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요정책과제**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하되, 단순지원업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별로 분석적 계층화(AHP)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② **재정성과** : 일반재정사업 및 R&D 사업 등의 추진성과 및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집행의 효율성 등 재정운용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③ **인사** : 인력관리계획,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성과관리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④ **조직**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⑤ **정보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유지·보수 등 평가실익이 없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특정평가

국무총리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직접 평가 실시하는 바, 관리대상업무, 특정시책, 고객만족도 등 3개 부문으로 대별된다.

① **관리대상업무** :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특정시책** : 다수 부처 관련시책, 현안사항,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등을 선정·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부처의 개선조치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한다.

③ **고객만족도** :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행정기관이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평가인 합동평가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유사무에 대하여 2/3 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주관)의 합동평가를 하되, 합동평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및 업무의 능률성 등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4) 평가기준

각 평가부문별 특성에 맞는 정책과정별(계획/집행/산출·결과/활용 등)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평가 부문은 세부 평가일정, 지표 등에 대한 특정평가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 · 복수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을 차등부여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승진 · 채용 ·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 및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및 특별승급 등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주요내용

1 기본개념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 사업 ·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과제의 추진기간 및 구체성 여부에 따라 정책 · 사업 · 업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수행방식에 따라 자체평가, 특정평가, 재평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가 소관 정책 등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상향식으로 스스로 수행하는 평가를 말하며,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령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일정범위의 정책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하향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수행한 기관 이외의 기관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미 실시된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이들 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목표실현을 위한 과제의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정책 등의 품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의 최종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기존에 각 개별법을 통해 수행되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성과측정 및 보상 등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체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원칙으로는 우선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법 제정의 가장 주된 취지로써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남설 및 중복 평가를 지양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대상기관의 부담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통합적 평가의 실시를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가급적 일원화하고, 평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지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원칙으로는 평가의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참여기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평가는 각 기관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대상이 되는 해당 정책의 관련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평가의 기본방침 및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기초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매년도 평가추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의 실시 주체로서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고, 평가 협조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확인·점검 결과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한다.

그 밖에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기관에 대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평가수행을 위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경력의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

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의 각 부문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이 되는 평가결과 또는 업무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임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다. 평가총괄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자체평가는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대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1]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총괄기관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총괄관련기관은 부문별 평

1)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조정실, 재정성과부문 – 기획예산처, 인사부문 – 중앙인사위원회, 조직부문 – 행정자치부, 정보화부문 –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

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실시여부 등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해당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책 및 시책 등에 대해 하향적으로 실시하는 특정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1) 자체평가

가) 평가개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의 자율성 보장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평가 지표 및 매뉴얼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보급하고 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을 스스로 선정하되,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체평가 결과와 조직·예산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연계가 필요한 정책 등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해 평가 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평가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나) 자체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된 정부업무평가시행기획에 기초하여 당해 기관의 자체평가 대상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체평가결과의 정책·예산·인사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을 제출받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획의 보완 또는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자체평가 계획의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실시는 평가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년도에 추진된 정책 및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은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 개최, 정책추진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활성화와 자체평가의 내실화 부문을 별도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도 3월 말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는 최종 확정이 된다. 그러나 확인·점검 결과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2) 특정평가

가) 평가개요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하향적 평가라는 점에 있어 자체평가와 구분된다. 특정평가의 대상은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

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으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문 또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매년 초에 수립되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해서 관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나) 특정평가의 절차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특정평가의 대상,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평가의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특정평가는 자체평가와 달리 국무총리에 의한 하향식 평가로서 평가대상기관은 특정평가 부문별로 평가실시에 필요한 실적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정책 등의 국민 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평가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는 특정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시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평가의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평가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평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특정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분석 · 평가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 · 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가) 평가개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와, 업무의 특성 · 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별평가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절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수행 방식 및 평가대상 시책을 선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게 된다. 평가 실시를 위해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평가의 경우 주관 중앙행정기관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평가의 실시는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평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 · 개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 제출토록 규정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 공정성의 검증 및 통합적인 평가추진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추진방안 및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가) 평가개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그 대상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평가 대상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전반이며,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나) 평가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한다.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이 성과개선을 도모한다.

다. 공공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가) 평가개요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서 평가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로 간주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

수성 ·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평가절차

개별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의 객관성 · 공정성 제고 및 통합 평가체계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가) 평가개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나) 평가절차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 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의 실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업무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나.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주요내용

(1) 성과관리전략계획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 및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규명하고, 기관의 임무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목표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소한 3년 단위로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과관리전략계획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 및 관련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성과관리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등의 실현을 위한 단년도 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전략계획에서 규정한 기관의 임무 및 중장기 목표인 전략목표와 당해연도의 단기목표인 성과목표,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지표로서, 이는 가급적 객관적 · 정량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해당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을 위해 각 기관이 꾸준한 연구 · 개발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성과관리의 실태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등 성과관리의 성공적인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유사하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가. 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등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각종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주체는 자체평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정평가의 경우 국무총리 등 평가 실시주체가 직접 공개를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보고를 위해 국무총리는 각종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정책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나. 평가결과와 예산 · 인사 등의 연계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정책개선 및 성과관리 도모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 예산 · 인사 및 보수체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평

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 시 반영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 활용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보상 등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의 중단, 축소 등 시정조치를 하거나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포상, 성과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책의 성과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2 장

정부업무평가 세부내용

제2장 정부업무평가 세부내용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①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점검, 조정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였다. 이는 각 부·처·청·위원회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정책 또는 사업)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분된다.

나)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6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22개 '청' 단위 기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이 중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등을 감안, 주요정책과제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평가대상과제로서 '06년도의 경우 883개 이행과제, '07년도의 경우 2,638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06년도의 경우 연두업무보고 상의 이행과제(부처별 20개

내외)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며, '07년도의 경우 각 부처별로 20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주요정책과제'를 평가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다만,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주요정책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관리과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결과는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들의 개인 성과관리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주체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추진하였다. 각 부처는 12월 말 기준의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요정책과제 부문 확인·점검 TF'를 운영하여 평가지표 및 세부지침에 따른 평가실시여부, 평가 근거자료에 의한 평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4개 정책단계, 6개 평가항목, 11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2〉 '06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공통지표	계 획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의견수렴절차 이행, 통계 및 사례조사, 영향분석, 관련정책 연계	7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 정책수단별 장·단점 분석, 부작용 대비책 마련	4
		성과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목표 인과관계, 성과지표 객관성, 성과지표 대표성	6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 목표치 합리성, 목표치 근거의 명확성	5
공통지표	집 행	시행과정의 효율성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 기한 내 완료여부	7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 예산·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5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 대응여부	7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4
	산출·결과	목표의 달성도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과제의 목표 달성비율	40
	평 가 결 과 활 용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 평가결과 공개, 우수·미흡사례 교육	5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 적용, 조치계획 이행실적	10

첫째, 부처별 자체평가가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고, 부처간 비교평가를 위하여 공통지표를 설계하여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모두 적용하였다. 인사 또는 조직부문의 경우 특성지표를 설계하여 적용한 사례도 있다.

둘째, 계획 → 집행 → 산출·결과 → 평가결과 활용 등 정책단계별로 자체평가를 추진토록 하였다. 즉, 정책의 과정(계획, 집행) 및 결과를 평가하여 각 부처의 정책추진노력 및 성과를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평가결과 활용 측면을 평가함으로써 평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정책단계별 핵심 성공요소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먼저, 계획단계의 경우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하였다. '계획수립의 적절성'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는지, 사례 및 통계를 조사했는지, 정책대안별 정책영향분석은 했는지, 타 관련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성과계획의 적절성'은 이행과제별로 설정된 성과지표가 목표 인과관계가 있는지, 성과지표 자체가 객관성이 있는지, 또한 성과목표치 설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집행단계의 경우, '시행과정의 효율성', '시행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토록 하였다. '시행과정의 효율성'은 일정계획에 맞추어 과제를 추진했는지,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등을 적절히 투입했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산출·결과단계의 경우,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기준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활용 단계의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부처 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넷째, 정책의 성과 측면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산출·결과단계 배점을 40점으로 하고, 계획단계, 집행단계의 배점을 각각 22점, 23점으로 두었다. 아울러, 평가결과 활용은 15점으로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 4개 정책단계, 5개 평가항목, 10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3〉 '07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공통지표	계 획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1)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9
			1-2) 정책분석의 적절성	9
			1-3)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집 행	2. 시행과정의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6
			2-2)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9
			2-3) 관련기관·정책과의 협조 노력	7
	산출/결과	3. 목표의 달성도	3-1) 목표의 달성도	30
	활 용	4. 평가결과의 활용	4-1)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	10
특성지표		5.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5-1)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적시성	5
			5-2) 정비대상법령 정비율	5

첫째, 종전 특정평가에서 별도의 평가분야로 실시하던 법제업무평가를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통폐합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는 공통지표로 평가하고, 법제업무에 대한 평가는 특성지표로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 계획 → 집행 → 산출·결과 → 평가결과 활용 등 정책단계별로 자체평가를 추진토록 하는 것은 '06년도 평가와 동일하다.

셋째, 정책단계별 핵심 성공요소(Critical Success Factor)를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다만, '06년도 평가지표와 차이가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등 종전 2개 평가지표를 삭제하였고,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평가지표를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아울러, 평가지표 내 점수부여 간격을 동일한 간격으로 설정하는 등 제반 세부측정방법도 '06년도 평가경험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다.

넷째, 배점에 있어서, 정책의 성과 측면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여전히 산출·결과단계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였으나, '06년도 평가결과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종전 40점 배점을 30점 배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기타 정책단계별 배점은 법제업무 배점 등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였다.

[참고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06년부터 정부업무평가가 자율과 분권에 입각한 자체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각 기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형식적인 자체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노력 등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나)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7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21개 '청' 단위 기관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과제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관련 학습실적 등 각 기관의 평가제도 운영 실태 및 제도 개선 노력이다.

(2) 평가주체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소위원회는 실무위원, 국무조정실 과장, 민간 평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이 각 팀의 팀장을 맡아 지표별 평가를 총괄한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4〉 '06년도 자체평가수행노력 부문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1. 자체평가 역량강화	1-1)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정도	20
	1-2) 평가관련 학습 실적	10
	1-3) 성과지표 개선 노력 정도	15
	1-4)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정도	20
2. 평가 대비 노력 정도	2-1) 정책품질관리 노력 정도	15
	2-2) 국정감사수감 노력 정도	10
3. 성과관리 점검결과 환류	3-1) 점검결과 반영노력 정도	10
계	7개 평가지표	100

평가항목은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평가관련 학습실적 등의 지표로 구성된 자체평가 역량강화와 정책품질관리 노력 등의 평가 대비 노력, 성과관리 점검결과의 환류 정도로 구성하였으며, 배점은 다소 중요도가 높은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정도에 20점을 배분하였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의 차이만큼 자체평가 수행노력 점수에서 감점하도록 하여 자체평가의 관대화 시도를 방지하고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6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5〉 '07년도 자체평가 수행노력 부문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1. 평가역량 제고노력	1-1)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정도	25
	1-2) 평가관련 학습 실적	10
	1-3) 성과지표 개선 노력 정도	10
2. 평가수행의 적절성	2-1)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15
	2-2)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정도	25
3.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3-1)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노력 정도	15
계	6개 평가지표	100

'06년도 경우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을 평가하였으나 각 평가부문별 민간전문가를 자체평가위원회의 90%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짐에 따라 '07년도부터는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 횟수 뿐 만 아니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 현장점검 실시 여부, 평가관련 정보제공의 충실성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07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교육 및 활용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하였다. 평가결과의 개인 성과관리 연계노력을 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 수행노력평가로 전환하여 내부 구성원간 경쟁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 기관의 형식적인 자체평가 활동을 방지하고,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평가의 내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09년도 이후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 재정성과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재정성과 평가는 재정사업 평가(70%)와 재정운용 평가(30%)로 구분되며, 재정사업 평가는 다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에 관한 평가[2](이하 '일반재정사업')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R&D사업')에 관한 평가로 나눠진다.

일반재정사업 평가는 '05년도부터 미국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방식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시에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 편성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06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에 따라 자체평가 부분에 통합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년 9월에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부처 스스로 단위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기획예산처가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R&D사업에 대해서는 1997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 '98년도부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 · 평가를 실시하여 왔다. 2005년 말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정으로 성과중심의 R&D체계를 도입하여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자체/특정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06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 중 재정성과 부문에 통합되었다.

나) 평가대상 기관 및 평가대상 과제

평가대상기관은 48개 전 중앙행정기관이며, 재정사업이 없는 일부 기관은 재정운용만을 평가하고 있다.

재정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 도입 전에는 '세세항'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을 평가대상 과제로 하였으나, 지금은 프로그램 예산상의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다. 각 단위사업 중에서 R&D에 해당하는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나머지 사업들은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평가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에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지칭

일반재정사업과 R&D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의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R&D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자체에 표시를 하여 중복평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재정운용평가는 30점 만점으로 부처의 재정운용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06년도부터 도입되어 부처간 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으나,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개선하고 있다.

〈표-6〉「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평가대상의 변화

예산안시행지침에 의한 평가	⇒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현 행)
○ 원칙적으로 10억원 이상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다만,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제외		○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다만,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제외
○ 세세항 기준		○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단위사업을 기준
○ 적용 제외 사업 i)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인 행정경비 ii)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 iii)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등 iv) 총 61개 기금 중 평가실익이 미약한 15개 기금		○ 적용 제외 사업 i) 현행과 동일 ii) 현행과 동일 iii) 현행과 동일 iv) 삭제
○ 전체 평가대상사업 중 매년 1/3 평가		○ 현행과 동일

(2) 평가주체

자체평가 중 재정성과부문의 평가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완료하면, 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확인·점검은 기획예산처(일반재정사업, 재정운용)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R&D)가 담당하고 있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일반재정사업은 '06년도 평가까지는 3개 정책단계, 4개 평가항목, 15개의 공통지표와 부문별로 1~3개의 특성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표-7〉 '06년도 일반재정사업 공통지표

단 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획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1-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3.75
		1-2)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가?	3.75
		1-3)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가?	3.75
		1-4)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3.75
	성과계획의 합리성 (15)	1-5) 성과목표/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1-6) 성과목표/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5.0
		1-7)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0
집행 (20)	집행의 효율성 (20)	2-1) 사업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0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0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0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0
산출/ 결과, 활용 (50)	성과목표 달성도 (50)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0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0
		3-3)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가?	10.0
		3-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5.0
합 계			100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7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R&D사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법(「연구개발성과평가법」)에 근거하여, 현 평가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부처는 성과지표와 지표별 가중치를 스스로 설정하고, 추후 성과지표별 달성도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성과달성도의 경우 당초 목표치의 200%까지 실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할 경우 이론상 200점 가까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06년도 평가 시에는 R&D평가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재정성과 부문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표-8〉 '06년도 R&D 자체평가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지 표	가 중 치
기획 · 집행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신규사업 : 0.4~0.5 계속사업 : 0.1~0.3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사업개선실적 (전년도 평가결과 활용도)	
결 과	사업별로 5~15개 내외의 지표 설정	신규사업 : 0.5~0.6 계속사업 : 0.7~0.9

재정운용은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각각 3개 지표로 평가하였다.

〈표-9〉 재정운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재원배분 합리성 (15)	세출 구조조정실적	5	재정집행 효율성 (15)	재정집행실적	8
	지출한도 준수여부	5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재정운용 효율화노력	5		경상경비 절감실적	2
합 계					30

〔'07년도 평가〕

우선 일반재정사업은 '07년도 평가 시에는 13개의 공통지표와 부문별로 2개 이내의 특성지표로 축소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지표 축소에도 불구하고, 4개 평가 항목의 배점은 그대로 유지한다.

R&D평가는 '07년도 평가부터는 만점을 100점으로 바꾸고 성과지표도 일정한 수 이내로 줄이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재정운용은 '06년도와 '07년도 평가지표의 변화는 없으나, 세부 측정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지출한도 준수 지표의 경우 '06년도에는 단순히 준수여부에 따라 5점을 부여했으나, '07년도에는 5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각 1점씩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 인사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에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등 개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육훈련 종합평가는 1979년부터, 개방형직위 운영평가는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는 2001년부터 실시되었다.

이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직접 평가가 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훈련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 방식이 적용되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시행('06.4.1)됨에 따라 기존의 인사운영실태평가, 공무원교육훈련평가, 개방형 직위 평가 등이 정부업무평가의 '인사부문'평가로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표-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편 내용

구 분	법 제정 전	법 제정 후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8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 ○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등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
평가항목 및 지표	○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 : 공정성, 개방성 등 6개 항목 23개 지표 ○ 교육훈련 종합평가 : 인프라, 운영실적 등 3개 항목 16개 지표 ○ 기타 개방형직위 운영평가 등	○ 인사 전 분야 6개 항목 14개 지표 ('07년도 기준)
평가방식	○ 인사위 직접 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혼용	○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나)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이다. 평가지표는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부처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성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07년도의 경우 공통지표는 인사부문의 계획/집행/산출·결과/활용 단계에 적용되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측정하게 되며, 특성지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관리과제별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기관별 특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게 된다.

(2) 평가주체

각 중앙행정기관은 익년도 1~3월에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체평가결과를 접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인사 평가 총괄관련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에 위임해 6월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인사부문 확인·점검은 중앙인사위원회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확인·점검단을 통해 실시하며 서면검토, 현장 확인·점검, 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점검결과를 확정한다.

총괄관련기관의 확인·점검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위원회는 확인·점검결과를 심의·의결하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 확정된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평가결과를 계획, 예산,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8개 평가항목, 23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인사부분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11〉 '06년도 인사 부문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1. 인사관리계획의 적절성	1-1) 인력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1-2)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정도	6
집 행	2.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정도	2-1) 인사담당인력 전문성 정도	4
		2-2) 인사관리의 정보화 정도	5
		2-3) 능력개발 예산확보의 적극성	4
산 출/ 결 과	3.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정도	3-1)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공개 정도	5
		3-2) 인사교류 제도운영의 적극성	5
		3-3) 공직개방의 적극성·공정성 정도	5
		3-4) 주요 직위후보자 선발 시 국가인재 DB 활용 정도	5
	4.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정도	4-1) 경력개발제도(CDP) 구축 정도	5
		4-2) 5급 이상 공무원의 사전전보 비율	5
		4-3)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정도	5
		4-4) 소속 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정도	5
	5. 인사혁신 추진정도	5-1) 인사혁신 및 제도개선 정도	5
활 용	6. 평가결과 활용정도	6-1) 평가결과를 기관인사운영에 환류·활용한 정도	8
특 성 지 표	7. 성과관리체계 구축 정도	7-1) 성과관리카드 입력률	3
		7-4)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3
	8. 균형인사 달성 정도	8-1) 여성공무원 균형인사지수	4
		8-2) 장애인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3) 과학기술공무원 균형인사지수	3
		8-4)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	2
계	8 개	23 개	100점

평가지표는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구축정도, 균형인사 달성 정도를 특성지표로 하여 구성하였다.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인사관리계획의 적절성, 집행단계에서는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정도, 산출·결과 단계에서는 인사운영의 투명·공정성 및 개방성 확보 정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 정도, 인사혁신 추진정도, 활용단계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배점은 공통지표는 78점, 특성지표는 22점으로 배분하였으며, 공통지표 중에서는 산출·성과단계를 강조하여 계획단계는 12점, 집행단계는 13점, 산출·결과단계는 45점으로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공통지표 및 특성지표, 4개 정책단계, 6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인사부문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12〉 '07년도 인사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배점)	평 가 지 표(배점)	배 점
공통지표 (90)	계 획	1. 전략적 인력관리 계획 수립 (10)	1-1) 인력관리계획 유지·관리의 적절성	10
	집 행	2.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12)	2-1)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2-2)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4
			2-3) 능력개발 예산투자의 적극성	4
	산 출/ 결 과	3.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확보 (30)	3-1)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9
			3-2)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7
			3-3) 균형인사 달성도	10
			3-4)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4
		4.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 관리 (30)	4-1)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2
			4-2)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6
			4-3) 성과평가 운영의 적정성	8
			4-4)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4
	결과활용	5. 평가결과의 활용(8)	5-1) '06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	8
특성지표 (10)		6. 성과관리시행 계획 이행 (10)	6-1)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달성도	10
계		6 개	14 개	100점

'06년도 평가지표 중 유도효과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와 목표를 기 달성하였거나 방향전환이 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여 6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는 '06년도 평가지표 23개에 비해 40% 가량 축소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원칙과 기준의 사전 공개 정도', '국가인재 DB 활용 정도' 지표를 삭제하였으며, 균형인사 달성도 중 '국가유공자 균형인사지수'를 특정평가(법적 의무 · 권장사항)로 전환하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공무원, 과학기술 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지수'를 공통지표로 전환하고, '균형인사 달성도' 지표로 통합하였고, 공직사회의 전문성 향상, 경쟁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 특성지표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정도', '균형인사 달성정도'를 공통지표로 전환하고, '07년도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인사부문 성과지표를 특성지표로 신설하여 각 부처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배점에 있어서는 정책의 성과측면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산출 · 결과단계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였으며, 특성지표는 10점의 배점으로 구성하였다.

라. 조직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조직관리 계획 · 집행 · 산출 · 평가결과 활용 등 조직관리 전반을 평가함으로써 각 부처 자율적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관리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직부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부조직관리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정원 등에 대해 사전 통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조직관리가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분권과 자율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에 조직관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직관리 성과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체평가 부문에 조직관리 부문을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직부문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평가총괄관련기관으로서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 · 점검 과정에 참여하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후 확정된다.

나) 평가대상

조직부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직관리 활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 즉, 조직관리 부문에 대하여 계획, 집행, 산출·결과, 활용 등 단계별로 평가지표를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2) 평가주체

조직부문의 평가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완료하면, 이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4개 정책단계, 10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조직부문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13〉 '06년도 조직 부문 평가지표

( ) :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가 세 부 지 표
계 획 (20)	조직관리계획의 적절성(20)	자체조직계획의 수립(10)	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정도(3)
			추진계획의 구체성(3)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추진실적(4)
		중장기조직전략(10)	중기인력운영계획의 현실성(3)
			전략적 조직운영 목표제시(3)
			증원수요 상쇄방안 충실도(4)
집 행 (30)	권한의 분산(7)	권한의 하부위임(7)	과장/팀장급의 위임전결(7)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 이관(10)	기관위임, 민간위탁, 지자체 이관 수준(10)	추진실적 및 성과(10)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활용(5)	조직관리정보 시스템 이용(5)	시스템 이용실적(5)
	조직관리 참여도(8)	구성원 의견수렴(4)	의견수렴 실적 및 결과활용(4)
		조직관리 외부참여(4)	외부전문가 활용(4)
산출/결과 (25)	조직개편(10)	조직성과 향상(10)	조직의 생산성 · 서비스 향상도(5)
			고객만족도(5)
	기능 · 인력 재설계 (15)	기능효율화(8)	유사 · 중복업무 발굴 · 개선실적(3)
			불필요한 일 버리기(3)
			업무프로세스 개선(2)
		인력의 효율적 활용(7)	인력감축 실적(4)
			증원요인 기존인력 대처(3)
평가결과 활용(5)	조직관리평가 결과 활용(5)	조직관리 평가결과 반영(5)	평가결과의 반영실적(5)
특성지표 (20)	책임운영기관화(8)	책임운영기관 지정 · 운영(8)	책임운영기관 지정실적(4)
			인사 · 예산 · 조직 · 기타 지원(4)
	정부위원회관리(12)	위원회 정비계획 · 실천(7)	계획수립 · 정비 실적(7)
		위원회 관리 효율화(5)	위원회 운영 · 현황관리 실적(5)
계 (100)			

평가지표는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책임운영기관 지정 · 운영, 위원회 정비계획 · 실천, 위원회 관리 효율화를 특성지표로 하여 구성하였다.

공통지표는 조직부문의 계획/집행/산출 · 결과/활용 단계에 적용되어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측정하게 되며, 특성지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평가결과에 반영하게 된다.

배점은 공통지표 80점, 특성지표 20점으로 배분하였으며 공통지표에서는 계획 단계 20점, 집행 단계 30점, 산출/결과 단계 25점, 활용 단계 5점으로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4개 정책단계, 9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조직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14〉 '07년도 조직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공 통 지 표 (85)	계 획 (10)	1. 조직관리계획(10)	1-1)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5
			1-2)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5
	집 행 (30)	2. 조직관리체계 효율화(14)	2-1)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6
			2-2) 정부위원회 관리의 적절성	8
		3. 조직관리기반 구축(16)	3-1)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6
			3-2)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10
	산 출/ 결 과 (35)	4. 기능인력 재설계 (25)	4-1)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15
			4-2)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10
		5. 조직성과 향상(10)	5-1) 조직의 생산성 · 서비스 향상 정도	10
	활용 (10)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10)	6-1)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10
특성 지표 (15±2)		7. 성과관리시행 계획의 이행(10)	7-1)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8. 책임운영기관 운영(5)	8-1) 책임운영기관 지원도	5
		9. 위기관리 조직의 운영 및 기능(±2)	9-1) 위기관리 조직체계 구축 정도	±1
			9-2) 주요 위기관리 기능 수행 실적	±1
계		9개 평가항목	14개 평가지표	100±2

'06년도에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였던 위기관리를 조직관리부문으로 통합하였으며, 배점은 가감점(±2)으로 설정하였다.

'06년도 평가와 차이가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평가지표를 폐지하였으며, 평가를 통한 유도실익이 미미하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표(고객만족도, 지자체 이관수준, 구성원 의견수렴 등)는 삭제하였고, 평가를 통한 조직관리 정책방향으로의 유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평가지표(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추가하였다.

마. 정보화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민주성 확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에 따라 정보화 예산과 관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 추진 주체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7년 정보화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 평가는 크게 정보화사업 평가와 정보화수준 평가로 나뉘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책결정자와 사업담당자에게 정보화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는 사업 추진주체의 관리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정보화 추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7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21개 '청' 단위 기관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정보화사업이 있는 기관은 정보화사업과 정보화수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화사업이 없는 기관은 정보화수준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 과제는 각 부처가 작성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정보화 부문의 관리과제이며 1억원 미만의 정보화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일상적 업무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 평가 주체

각 중앙행정기관은 익년도 1~3월에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자체평가결과를 접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보화 평가 총괄 관련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 위임해 6월까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정보화 확인·점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확인·점검단('06년도 평가의 경우 70명)을 통해 실시하며 서면검토, 현장 확인·점검, 기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확인·점검결과를 확정한다.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확인·점검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동 위원회는 확인·점검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한다.

(3) 평가 내용

〔'06년도 평가〕

정보화사업의 경우 4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 정보화수준의 경우 3개 평가항목 8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15〉 '06년도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공통지표 (60)	계 획 (20)	1. 계획의 적절성(20)	1-1)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1-2) 사업간 연계성·중복성	3
			1-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1-4)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 행 (10)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2-1) 계획 준수성	5
			2-2)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3. 목표달성도(25)	3-1)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결과활용 (5)	4. 평가결과의 활용(5)	4-1) 평가결과의 활용성	4
			4-2)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 (40)	-	5. 정보화 기반조성(10)	5-1) CIO·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5-2) 정보화 조직·인력 역량 수준	6
		6. 정보화 적용·운영 수준(20)	6-1) 정보보호수준	6
			6-2)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수준	5
			6-3) 홈페이지 운영수준	3
			6-4)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6-5) 지식정보관리 수준	4
		7. 정보화 효과(10)	7-1) 정보화를 통한 업무·서비스 개선정도	10
계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100

공통지표의 경우 정보화사업에 적용되어 각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성지표의 경우 각 기관의 정보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07년도 평가〕

정보화사업의 경우 4개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 정보화수준의 경우 3개 평가항목, 5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16〉 '07년도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공통지표 (70)	계 획 (15)	1. 계획 수립의 적절성(15)	1-1)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5
			1-2)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 행 (15)	2. 시행과정의 적절성(15)	2-1) 계획 준수성	10
			2-2) 위험 · 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 결과(30)	3. 목표의 달성도(30)	3-1) 목표의 달성도	30
	활 용(10)	4. 평가결과의 활용도(10)	4-1) 평가결과의 활용도	10
특성지표 (30)	–	5. 정보화 기반조성(10)	5-1) 정보화 추진의지 및 역량 수준	10
		6. 정보화 적용 · 운영 수준(15)	6-1) 정보보호수준	6
			6-2)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관리 · 활용 수준	5
			6-3) 지식정보 제공 · 관리수준	4
		7. 정보화 효과(5)	7-1) 정보화를 통한 업무 · 서비스 개선정도	5
계		7개 평가항목	11개 평가지표	100

'06년도 평가에 비해 평가지표를 축소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와 개인 성과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등' 평가 목적을 달성한 지표와 '평가결과 공개' 등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의무로 규정된 지표를 삭제하여 기존 17개 평가지표를 11개로 축소하였고, 정보화사업의 평가지표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확대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하였다.

② 특정평가

가. 관리대상업무 평가

(1) 혁신관리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혁신관리 평가는 정부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유인제공 및 기관별 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혁신활동 추진을 가속화하고자, 2004년 최초 도입되었다.

정부혁신관리 평가의 주요 취지는 평가에 따른 책임과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여 조직 구성원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혁신문화를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고, 혁신활동에 따른 생산성 제고 정도, 혁신 체감도, 기관신뢰도 등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함으로서 궁극적으로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기관은 기관규모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 등 '부' 단위 또는 300명 이상 정책기관(1군 : 22개),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2군 : 17개),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3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3군 : 9개)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평가주체

정부혁신관리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의 관리대상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기본법령에서는 혁신관리 분야의 평가시행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평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관련 학계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관리평가단」[3]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평가계획의 수립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관리 평가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평가단 운영 및 평가 총괄 등을 위해 구성된 운영회의와 혁신평가 4개 부문별로 독립된 분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 혁신관리평가단은 '혁신관리평가단 운영에 관한 규정'('04.10.27 제정, '06.5.10 개정 행자부 훈령 제208호)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4개 평가항목, 26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17〉 '06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20)	1. 혁신 리더십	1-1) 혁신전략의 체계성	3
		1-2) 혁신전략의 실행 가능성	3
		1-3) 혁신의 실천	3
		1-4) 혁신의 지원	4
		1-5) 혁신활동의 모니터링	4
		1-6) 성과관리의 지원	3
집 행 (20)	2. 혁신 역량	2-1)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3
		2-2) 중간 관리층의 역할	3
		2-3) 학습체계	2
		2-4) 학습지원	2
		2-5) 학습실적	2
		2-6) 업무관리	5
		2-7)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3
산출/결과 (60)	3. 혁신 문화	3-1) 혁신활동에의 몰입	2
		3-2) 혁신의 가치에 대한 공감	2
		3-3) 개방성과 창조성	3
		3-4) 도전성과 실패관리	3
		3-5) 혁신의 제도화	3
		3-6) 혁신 커뮤니케이션	2
	4. 혁신 성과	4-1)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4
		4-2) 목표달성도	12
		4-3) 성공사례 창출 정도	4
		4-4) 혁신활동의 생산성	10
		4-5) 국민의 혁신체감도	8
		4-6) 기관에 대한신뢰도	7
		4-7) 중앙부처 BP 및 10대 브랜드 및 경진대회 수상 실적	가점+3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혁신리더십, 집행단계에서는 혁신역량, 산출결과단계에서는 혁신 문화 및 혁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배점은 계획단계 20점, 집행단계 20점, 결과단계 60점을 설정하였다.

4개 평가항목별로 혁신리더십에서 혁신전략의 체계성 등 6개 평가지표에 20점, 혁신역량에서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등 7개 평가지표에 20점, 혁신문화에서 혁신활동에의 몰입 등 6개 평가지표에 15점, 혁신성과에 부처 혁신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등 6개 평가지표에 45점을 배분하였다.

25개 평가지표는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등 24개에 대해 총 100점 만점을 부여 하고, BP(Best Practice) 및 혁신브랜드 경진대회 실적에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4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06년도 평가지표와 차이가 있는 주요내용으로는 '성과관리의 지원', '혁신 커뮤니케이션' 등 종전 3개 평가지표를 삭제하였고, '혁신전략의 체계성' 등 6개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설계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별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통한 배점방식을 서면평가결과를 기초로 면담 · 실사결과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등 제반 세부측정방법도 '06년도 평가경험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다.

배점에 있어서는, 혁신의 성과 측면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여전히 산출 · 결과단계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되, 계획 단계의 배점을 종전 20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혁신성과의 배점을 종전 4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18〉 '07년도 혁신관리 부문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15)	1. 혁신 리더십(15)	1-1)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5
		1-2) 혁신의 실천 · 지원	5
		1-3) 혁신의 환류	5
집 행 (20)	2. 혁신 역량(20)	2-1)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4
		2-2) 학습지원 및 실적	4
		2-3) 온-나라 BPS 활성화 및 시스템 간 연계 · 활용	8
		2-4)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4
산출/결과 (65)	3. 혁신 문화(15)	3-1) 혁신의 일상화	4
		3-2) 혁신가치의 확산	4
		3-3) 개방성과 창조성	4
		3-4) 도전성과 실패관리	3
	4. 혁신 성과(50)	4-1) 부처 혁신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7
		4-2) 부처 혁신과제의 목표달성도	8
		4-3) 혁신활동의 생산성	20
		4-4) 국민의 혁신체감도	8
		4-5) 기관에 대한 신뢰도	7
		4-6) BP 및 혁신브랜드 경진대회 실적	가점+2.5

(2) 정책홍보관리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정책홍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와 기관역량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홍보관리평가를 2004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② 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5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20개 '청' 단위 기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정책홍보와 관련성이 적은 점을 감안, 정책홍보관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평가주체

정책홍보관리 평가는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의 관리대상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책홍보관리 분야의 평가시행을 국정홍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국정홍보처에서는 평가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항목별 '실무평가단'과 '정책홍보관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4개 정책단계, 7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하였다.

정책단계별로는 계획단계에서는 정책과 홍보의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집행단계에서는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및 국정브리핑과 대언론 홍보와 매체활용 홍보를 산출결과단계에서는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와 정책홍보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배점은 계획단계는 13점, 집행단계는 56점, 결과단계는 31점으로 설정하였다.

〈표-19〉 '06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13)	1.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13)	1-1)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9
		1-2) 홍보교육 정도	4
집 행 (56)	2.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 (20)	2-1) 수용할 기사	10
		2-2) 대응할 기사	10
	3. 국정브리핑(15)	3-1) 활용홍보 정도	9
		3-1) 사이트 관리의 적절성	6
	4. 대언론 홍보(10)	4-1) 장·차관 언론홍보	6
		4-2) 실·국장 언론홍보	4
	5. 매체활용 홍보(11)	5-1) KTV 활용	5
		5-2) 인터넷 홍보	6
산출/결과 (31)	6.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13)	6-1) 정책고객 홍보 및 만족도	13
	7. 정책홍보 성과(18)	7-1)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	5
		7-2) 기획홍보 및 정책홍보 사례	13

7개 평가항목별로 홍보추진체계의 적절성에서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등 2개 평가지표에 13점,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의 적절성에서 수용할 기사 등 2개 평가지표에 20점, 국정브리핑에서 활용홍보 정도 등 2개 평가지표에 15점, 대언론 홍보에서 장·차관 언론홍보 등 2개 평가지표에 10점, 매체활용 홍보에서 인터넷 홍보 등 2개 평가지표에 11점,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및 변화 정도에서 정책고객 홍보 및 만족도 평가지표에 13점, 정책홍보 성과에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성과 등 2개 평가지표에 18점을 배분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5개 평가항목, 23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주요 정책과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20〉 '07년도 정책홍보관리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14)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14)	1-1) 홍보협의체 운영	2
		1-2) 홍보교육 참여도	3
		1-3)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	3
		1-4)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	3
		1-5)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	3
집 행 (68)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20)	2-1) 수용 기사 이행정도	6
		2-2) 수용 기사 모범사례	4
		2-3) 대응 기사 적정성	6
		2-4) 대응 기사 모범사례	4
	3. 매체활용 홍보(48)	3-1)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	3
		3-2)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	3
		3-3)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	3
		3-4) 대언론 브리핑	15
		3-5) 대언론 출연 · 기고	3
		3-6)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	2
		3-7) KTV 공동제작 실적	3
		3-8)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	2
		3-9) 온라인 활용 홍보	14
산 출/ 결 과 (18)	4. 정책고객 서비스(10)	4-1) 정책고객 관리	3
		4-2)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	3
		4-3)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	4
	5. 정책홍보 성과(8)	5-1)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	2
		5-2)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	6

'06년도 평가지표 중 '홈페이지 연계정도', 'PCRM 추진계획 적절성 및 달성도' 등 종전 3개 평가지표를 삭제하였다.

배점에 있어서는, 정책홍보의 집행단계 측면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집행단계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되, 계획 단계의 배점을 종전 13점에서 14점으로 1점 상향하고, 집행단계의 배점을 종전 56점에서 68점으로 상향하고, 정책홍보성과의 배점을 종전 31점에서 18점으로 축소조정 하였다.

(3)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정부기관은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사회 각 계층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공공기관에 의무 또는 권장사항으로 부여된 것을 정부 부처가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를 2004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한편, 의무 · 권장사항은 제도 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간 필요의 불일치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의무 · 권장사항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6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21개 '청' 단위 기관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 · 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공기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규 지정한 102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한다.

나) 평가주체

법적의무 · 권장사항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의 관리대상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각 의무 · 권장사항 주관부처(노동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의 협조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효율적 · 발전적 추진을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실시하여 제도의 보완 · 발전을 꾀하고 있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 시행으로 정부업무평가가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되었으며, '05년도의 9개 평가정책 중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와 '기술직공무원 채용확대',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4개 정책이 자체평가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5개 정책(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은 특정평가로 실시되었다.

또한, 법적 의무 · 권장사항 이행도 제고 외연 확대를 위하여, 94개 국가 공기업에 대하여 법적 의무 · 권장사항 6개 정책(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이행상황을 최초로 평가, 공기업의 법적 의무 · 권장사항 이행도 제고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 소관부처 및 정책 주관부처의 정부업무평가결과에 가감점으로 반영하였다.

〈표-21〉 '06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지표

법적의무 · 권장사항	평 가 지 표	배 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1-1) 부처별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현황	90
	1-2)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홈페이지 활용 실적	10
	1-3) 각 부처 홈페이지에 소속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공개	가점5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2-1) 기관별 비정규직 관리부서 지정실적	10
	2-2)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실적	10
	2-3) 직 · 간접 고용 저임금 노임단가 적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반영 실적	20
	2-4) 퇴직금 ·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편성 실적	20
	2-5) 상시적 사무 보조인원 중 기타직 보수화 실적	4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50
	3-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 비율	20
	3-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구매금액	20
	3-4)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금액	10
	3-5)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구매	가점3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4-1)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80
	4-2)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정도	10
	4-3)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노력도	10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5-1)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	30
	5-2)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달성도	30
	5-3) 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중	40
	5-4) 구매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 / 공공구매 이행도 달성을 위한 산하기관 관리	가점10

〔'07년도 평가〕

'07년도에는 '06년도 평가정책 중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이 자체평가에서 특정평가로 전환되고,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특정평가에서 자체평가로 전환되어 총 9개 정책(자체평가는 여성관리직공무원 임용확대, 기술직공무원 임용확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4개 정책, 특정평가는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5개 정책)이 법적의무 · 권장사항 평가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공기업에 대하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법적 의무 · 권장사항 6개 정책(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22〉 '07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지표

법적의무 · 권장사항	평 가 지 표	배 점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1-1) 비정규직 인원 · 인사 관리규정 제정여부	20
	1-2) 퇴직금 ·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비율	20
	1-3) '07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실적	30
	1-4)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30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2-1)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당해연도 추천의뢰 비율	20
	2-2)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당해연도 채용비율	30
	2-3)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누적 채용비율	50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3-1)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실적	10
	3-2)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60
	3-3)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30
	3-4) 서적 및 잡종인쇄물 구매실적	가점3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4-1) 구매추진 체계의 실효성	10
	4-2) 친환경상품 구매 비율	80
	4-3)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정도	10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5-1) 구매확대 노력도	10
	5-2) 중기제품 구매 비율	30
	5-3) 중기제품 구매 달성도	30
	5-4) 기술개발제품 구매 달성도	30

(4) 법제업무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계획성 있는 입법추진을 통해 국가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법·제도를 개선하며, 입법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평가가 '04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② 평가대상기관

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업무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포함되어 46개 중앙행정기관(25개 '부'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평가주체

'06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었고 평가협조 기관으로서 법제처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에 포함되어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5개 평가항목, 8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였다.

〈표-23〉 '06년도 법제업무 부문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40)	1. 입법추진의 계획성(40)	1-1) 입법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1-2) '06년도 정부입법계획 추진 실적	20
		1-3) 최초입법계획 대비 추가 또는 철회된 법안의 비율	10
집 행 (25)	2. 입법참여 활성화(15)	2-1) 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	15
	3. 의원입법 정부 의견 반영 노력(10)	3-1) 의원입법에 대하여 정부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10
산출/결과 (35)	4. 법제개선 노력(35)	4-1) '04년도 및 '05년도 정비확정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10
		4-2)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05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미정비 법령 및 '06년도 정비대상 법령 중 정비된 법령의 비율	10
		4-3)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하위규정 중 시행일 이전에 하위규정을 정비한 비율	15
중점관리법안 추진실적	중점관리법안의 국회통과 실적		±10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입법추진의 계획성을, 집행단계에서는 입법참여 활성화 및 의원입법 정부의견 반영노력을, 산출/결과단계에서는 법제개선노력을 평가하였고, 가감점 항목으로 중점관리법안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다.

배점은 계획단계 40점, 집행단계 25점, 산출/결과단계 35점을 설정하였고 가감점 항목은 ±10점으로 설정하였다.

'06년도 평가는 입법계획 대비 추가·철회 등 '입법추진의 계획성'과 20일 이상 입법 예고된 법령안의 비율을 평가하는 '입법참여의 활성화',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의견 반영노력 등 '의원입법 정부의견 반영노력', 재량행위 투명화 대상법령 정비 등 '법제개선노력', 그리고 '중점관리법안의 국회 통과실적' 등 5개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졌다.

〔'07년도 평가〕

'07년도부터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 중 주요정책과제 부문에 통합되어 평가한다.

(5) 정보공개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사전적 ·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체제 정착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의 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정보공개평가를 '06년도에 도입하였다.

② 평가대상기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04~'05년도 간 행정자치부(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개별평가를 실시하여 오던 중,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 시행(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으로 정부업무평가에 통합하여 특정평가(관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47개 중앙행정기관(26개 '부'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07년도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26개 '부처' 단위 기관 및 21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와 연결, 정보공개 평가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평가의 자체평가 전환방안을 모색 중이다.

나) 평가주체

행정자치부(정보공개위원회)가 실시하여 오던 정보공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정 · 시행(2006.4.) 후, '0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부터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하며, 평가협조기관으로 행정자치부가 동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평가계획의 수립 및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정보공개평가를 실시하였다.

〈표-24〉 '06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30)	1. 추진계획의 적절성(5)	1-1)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수립	2
		1-2)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3
	2. 정보공개 혁신의지(4)	2-1) 기관장 의지	2
		2-2) 소속 공무원 의지	2
	3. 추진기반의 충실성(21)	3-1) 비공개 기준의 충실성	8
		3-2) 사전정보공표기준의 충실성	8
		3-3) 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	5
집 행 (40)	4. 업무처리의 적절성(20)	4-1)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	6
		4-2)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12
		4-3) 이의신청처리의 적절성	2
		4-4) 허위정보공개 등 위법사실 여부	0 ~ -5
	5.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적(20)	5-1) 사전정보공표 실적	14
		5-2) 온라인을 통한 원본공개 실적	2
		5-3)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실적	4
산 출/ 환 류 (30)	6. 국민체감 만족도(20)	6-1)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20
	7. 업무개선 및 혁신성과(10)	6-2) 정보공개 혁신사례 발굴 실적	5
		6-3) 자체진단 및 평가결과의 개선 실적	5

'06년도부터는 평가를 계획, 집행, 산출/환류 등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계획단계에는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수립 및 충실성을 평가하는 '추진계획의 적절성', 기관장의 의지 등을 평가하는 '정보공개 혁신의지', 비공개 기준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는 '추진기반의 충실성'의 평가항목을, 집행단계에서는 비공개결정의 적절성, 이의신청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업무처리의 적절성', 사전정보공표실적, 정보공개심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의 평가항목을, 산출/환류단계

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국민체감 만족도', 자체진단 및 평가결과 개선실적을 평가하는 '업무개선 및 혁신성과'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였다.

배점은 계획단계 30점, 집행단계 40점, 산출/결과단계 30점을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정보공개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25〉 '07년도 정보공개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30)	1.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 (30)	1-1)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5) 1-2)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5) 1-3)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20)	30
집 행 (40)	2. 업무처리의 적절성 (18)	2-1)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10) 2-2) 법규상 비공개결정의 적절성(8)	18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실적 (22)	3-1) 사전정보공표 실적(14) 3-2)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실적(8)	22
산 출/ 결 과 (30)	4. 국민체감 만족도(20)	4-1)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20)	20
	5. 정보공개 제도 개선(10)	5-1)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10)	10

이는 '06년의 7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에 비해 2개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를 축소한 것으로, '06년 지표 중 '비공개 기준의 충실성'과 '사전정보공표기준의 충실성'을 '정보공개 기준의 충실성'으로 통합하였고, '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 평가지표를 삭제하였다.

또한,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과 '이의신청처리의 적절성'을 '업무처리절차의 적절성'으로 통합·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정보공개방의 충실성'지표와 '허위정보공개 등 위법사실 여부'와 '온라인을 통한 원본공개실적' 지표를 삭제하였다.

'07년도에는 '06년도 평가항목 중 '추진계획의 적절성', '정보공개 혁신의지', '추진기반의 충실성' 평가항목을 '정보공개 추진기반의 적절성'으로 통합하는 등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를 5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로 축소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6) 대통령지시사항관리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각 부처의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06년도 정부업무평가의 특정평가 분야에 추가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평가를 도입·실시하였다.

②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06년도 평가는 재정경제부 등 부 단위 2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03년부터 '06년까지 지시된 전 부처 공통 지시사항 중 '06.12.31까지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23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 평가주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지시사항 관리실적에 대하여 대통령지시사항 평가단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단 구성은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4명)과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평가정책심의관, 자체평가심의관 등 총 7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각 부처가 제출한 관리실적을 국무조정실이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실시하였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5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대통령지시사항 평가를 추진하였다.

〈표-26〉 '06년도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30)	1-1.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15) - 신규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선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5
	1-2. 계획 수립 시한 준수여부(15) - 지시사항 시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였는지 여부	15
집 행 (30)	2-1. 시스템 등록 준수여부(30) -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 지시사항 이행내역을 즉시 입력하였는지 여부	30
산출/결과 (40)	3-1. 처리기한 내 종료여부(20) - 당초 계획한 처리기한 내에 종료승인요청 실시여부	20
	3-2. 점검체계 유지 여부(20) - 지시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20
계	5개 평가지표	100

대통령 지시사항 평가는 계획, 집행, 산출·결과 등 정책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는데, 각 부처의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실태를 중점 평가하였다.

계획단계에는 신규 지시사항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와 '계획 수립 시한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고, 집행단계에서는 '시스템 등록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산출·결과단계에서는 당초 계획한 처리기한 내에 종료승인 요청을 하였는지와 지시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배점은 계획단계 30점, 집행단계 30점, 산출/결과단계 40점을 각각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대통령 지시사항관리 평가는 특정평가의 한 부분으로 '06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07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규제개혁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규제개혁 평가는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부문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실용적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해 오던 규제개혁업무를 2005년 각 부처의 기관평가 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종합 평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0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혁 평가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부문에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② 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기관은 '06년도에는 기관규모 및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21개 정책부서와 13개 집행부서로 구분, 총 3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07년도에는 37개 중앙행정기관(22개 '부처' 단위 기관 및 15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주체

규제개혁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부문의 관리대상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동 지침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동 결과를 확인 · 점검한 후 확정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 주요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6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규제개혁평가를 실시하였다.

〈표-27〉 '06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30)	1. 부처별 규제정비 계획의 적절성 (10)	1-1)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율	7
		1-2)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	3
	2. 추진체계의 적절성 (8)	2-1)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2
		2-2)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6
	3. 규제개혁 추진의지 (12)	3-1) 기관장 추진의지	4
		3-2)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4
		3-3)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2
		3-4) 규제개혁 교육	2
집 행 (20)	4. 추진체계 실행정도 (20)	4-1)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4
		4-2)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10
		4-3)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	6
산 출/ 결 과 (50)	5. 목표 달성도(30)	5-1)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	8
		5-2)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18
		5-3) 규제개혁 관리	4
	6.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 (20)	6-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06년도 평가에서는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규제개혁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였으며, 집행단계에서는 추진체계 실행정도를, 산출/결과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를 평가하였다.

배점은 계획단계 30점, 집행단계 20점, 산출/결과단계 50점을 설정하였다.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은 정비대상 규제 수 정도를 평가하는 '개별규제정비계획의 목표율'과 정비 시 중요규제의 비율, 파급효과 정도를 평가하는 '개별규제정비내용의 충실성'으로 구성되었고, '추진체계의 적절성'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규제개혁 추진의지'는 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개혁에 대한 교육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추진체계 실행정도'는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고, '목표달성도'는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달성도,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개혁만족도'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수행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서는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추진기반의 적절성을 집행단계에서는 시행의 적정성을, 산출/결과단계에서는 규제개혁 성과 및 규제개혁 만족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배점은 계획단계 15점, 집행단계 25점, 산출/결과단계60점을 설정하였다.

〈표-28〉 '07년도 규제개혁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1. 추진기반의 적실성	1-1)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적절성(10) 1-2) 규제개혁 추진역량(5)	15
집 행	2. 시행의 적정성	2-1)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15) 2-2) 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10)	25
산 출/결 과	3. 규제개혁 성과	3-1) 기존규제 정비 실적(35) 3-2)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5)	40
	4. 규제개혁 만족도	4-1) 규제개혁 고객만족도(20)	20

'07년도에는 '06년도에 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적절성(민간위원장 여부, 민간인 비율)'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대면회의 비율, 자체 규개위 개선 권고율)' 지표를 삭제하였고,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율' 및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을 통합하였으며, '기관장 추진의지',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규제개혁 인센티브', '규제개혁 교육'도 한 개의 지표로 통합하였다.

(8) 청렴도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관별 · 업무별 부패 유발요인을 최소화하고, 각종 제도 및 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국민 · 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② 평가대상기관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여 왔으며, 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34개 중앙행정기관(19개 '부' 단위 기관 및 15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나) 평가주체

'06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었으며, 평가협조기관으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 동 분야의 평가를 실시한 후, 동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2개 상위영역과 6개 하위영역, 11개 설문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29〉 '06년도 청렴도 부문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 위 영 역	하 위 영 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0.494)	1. 부패경험(0.483)	1-1) 금품 · 향응 제공빈도(0.544)
		1-2) 금품 · 향응 제공규모(0.456)
	2. 부패인식(0.517)	2-1) 금품 · 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잠재청렴도 (0.506)	3. 업무환경(0.241)	3-1) 금품 · 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3-2)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4. 행정제도(0.237)	4-1) 기준 · 절차의 현실성(0.569)
		4-2) 정보공개의 정도(0.431)
	5. 개인태도(0.294)	5-1)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5-2) 금품 · 향응의 기대(0.401)
	6. 부패통제(0.228)	6-1) 부패방지 노력도(0.585)
		6-2) 이의제기 용이성(0.415)

청렴도 평가는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영역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는 '체감청렴도'와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 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잠재 청렴도'로 구분되었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 간, 하위영역 간,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평가항목별 척도는 정보공개, 기준, 절차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7점 척도로, 금품 · 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8개, 9개 구간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07년도 평가〕

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07년도 평가 시에는 통합 정부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위기관리 평가

가) 개 요

① 배경 및 목적

중앙행정기관의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위기관리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유도하고, 체계적·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05년도에 위기관리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② 평가대상기관

'04년도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위기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점검형식으로 관리되던 위기관리는 '05년도부터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되었고, 2006년 4월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위기관리를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하여 28개 중앙행정기관(18개 '부' 단위 기관 및 10개 '청'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나) 평가주체

'06년도에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었으며, 평가협조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동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07년도부터는 조직부문과 연계된 평가지표의 일부를 핵심 지표화 하여 각 부처의 자체평가 조직부문으로 전환되어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다)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6년도 평가에서는 3개 정책단계, 16개 평가항목, 25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위기관리평가를 실시하였다.

〈표-30〉 '06년도 위기관리 부문 평가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계 획 (25)	매뉴얼/국민행동요령 등 수립 · 운용	수립 · 개정보완 여부, 배포 · 활용 여부	15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 · 참여	연습준비 적절성, 참여 · 협조정도	5
	인적/ 물적 자원 비축 · 관리	자원 확보 여부, 자원관리 적절성 여부	5
집 행 (53)	위기관리 연습/훈련 시행 · 참여	연습의 적절성, 참여 · 협조정도	8
	위기관리 교육실시	교육 실시여부, 내용의 적절성	5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 · 현장점검 등 위협 · 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체계 구축 및 점검시행 여부	3
	위기요인 · 징후 감시/전파 및 상황 평가/경보체계 운영	감시/전파의 적절성, 경보체계 적절성	10
	위기 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전파/공유의 적절성, 초동조치 적절성	7
	비상대책기구/현장지휘체계 가동	비상대책기구 · 현장지휘체계 적절성 등	7
	대응조치 통합시행	관계기관 등과 협조 · 지원체계 가동 여부	10
	위기관리 관련 홍보	예방차원의 홍보 여부	3
산 출/ 결 과 (22)	위기상황 대응기구 / 전담조직 구성 등의 개선	개선내용의 적절성	5
	위기관리 연습 / 훈련 시행 · 참여	사후조치 및 사후조치 적절성 여부	2
	자체/합동 위기관리업무 · 현장점검 등 위협 · 취약요소 해소방안 강구	점검결과 개선 여부	2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 · 보완	사후평가여부 · 평가결과의 학습 여부 등	6
	위기관리 관련 홍보	위기대응 홍보의 효과성	7

정책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매뉴얼, 국민행동요령 등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구축', 인적 · 물적 자원 비축 · 관리 등 '위기관리 자원 확보' 등을, 집행단계에서는 위기관리 연습 · 훈련 시행 · 참여, 위기관리 교육실시 등 '매뉴얼을 적용한 위기대응 통합연습 시행'과 위기요인 · 징후 감시 · 전파 및 상황평가, 위기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 등 '현장지휘 및 통합대응'을, 산출 · 결과단계에서는 위기상황 대응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 등의 개선, 위기관리 연습 · 훈련 시행 · 참여 등 '위기관리 조직개선'과 위기관리 활동 평가 및 개선 · 보완, 위기관리 관련 홍보 등 '위기관리활동 사후평가 및 개선'을 평가하였다.

배점은 계획단계 25점, 집행단계 53점, 산출/결과단계 22점을 설정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 시에는 자체평가의 조직평가부문으로 전환하고 특정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나. 고객만족도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당기관의 핵심적인 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요정책만족도와 해당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고객만족도는 1998년 이후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중 기관평가의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2006년 4월에 개정·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기관 또는 정책 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에서 고객만족도 평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최종고객인 국민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정책수립·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민의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고객만족도 평가는 총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25개 '부' 단위 기관(18부 3처 4위원회)과 21개 '청' 단위 기관(1처 18청 2위원회) 총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주요정책만족도 평가는 개별부처가 선정한 2~3개의 주요정책목표(별첨 참고)에 대하여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06년도에는 평가대상과제 중 내부고객 대상과제(1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내부고객 평가를 적용하였으나, '07년도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정책수립·집행 방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온·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일반민원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접수대장 등에 기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며, 인터넷 민원의 경우 참여마당신문고, 평가대상 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2) 평가 주체

고객만족도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시행하며, 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3) 평가 내용

〔'06년도 평가〕

주요정책만족도의 경우 6개 항목, 6개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일반국민, 전문가 및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항목만족도(70점)와 체감만족도(30점)로 구성(100점 만점)되며, 항목만족도는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도, 적절성, 투명성, 효과성, 일관성, 환류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1〉 '06년도 주요정책만족도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항목 만족도 (70)	1. 의견수렴도	정책수립·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한 정도
	2. 적 절 성	정책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의 적정성 여부
	3. 투 명 성	정책수립·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협조 노력
	4. 효 과 성	정책이 의도한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나는 정도
	5. 일 관 성	정책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6. 시정보완노력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는 노력
체감만족도(30)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총체적 만족도
※ 정책제안 사항 : 정책의 개선을 위해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평가대상 기관별로 평가대상 기간동안 제공된 일반 민원과 인터넷 민원을 대상으로 평가대상기간동안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항목만족도(70점), 체감만족도(30점)로 구성(100점 만점)되며, 항목만족도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 및 결과 수령 과정에서의 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정확성, 대응성, 형평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표-32〉 '06년도 일반 민원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설 문 내 용
항 목 만족도 (70)	접근용이성	○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내지 면담의 용이성 ○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신청용이성	○ 민원 신청 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방문 수 ○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신속/정확성	○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신속성 ○ 담당 공무원의 정확하고 능숙한 민원처리 ○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대응/환류성	○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나 이유 제시여부
	형평성	○ 민원 처리결과의 객관/합당성 ○ 업무처리의 신뢰/공정성 ○ 담당공무원의 청렴/투명성
체감만족도(30)		○ 일반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직관적 만족도

〈표-33〉 '06년도 인터넷 민원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설 문 내 용
항 목 만족도	신속/정확성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대응/환류성	민원 처리과정이나 상태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나 검색 가능성 불편사항들에 대한 문제제기나 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형평성	민원신청에 대한 해당 부처의 처리결과 민원업무처리의 공정성
체감만족도		인터넷 민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직관적 만족도

고객만족도는 각 설문에 대하여 7점 리커트 기술척도(descriptive scale)에 따라 일반국민, 전문가 및 민원인 등이 응답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다.

주요정책 만족도는 일반국민이 평가한 만족도와 전문가가 평가한 만족도를 7 : 3의 비율로 반영하여 만족도를 산출하되, 내부고객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 전문가 : 내부고객＝6 : 3 : 1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단,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타 부처에 대한 지원기능이 강한 부처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 전문가 : 내부고객＝5 : 3 : 2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일반 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개별 만족도를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다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객만족도 향상도에 따른 가 ·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주요정책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평가시기의 이원화에 따라 각각 가 · 감점을 적용하였다.

또한, 민원서비스만족도의 경우 비 수용민원의 비율에 따라 조정점수를 부여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 평가에는 주요정책만족도와 인터넷 민원에 대한 평가의 경우 '06년도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설문내용을 명료하게 수정 · 보완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단, 일반 민원의 경우 '06년도 6개 항목, 16개 문항에서 '07년도에는 6개 평가항목 15개 문항으로 축소하고 설문내용 및 표현을 개선하였다.

〈표-34〉 '07년도 일반 민원 평가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항 목 만족도 (70)	1. 접근용이성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충실성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용이성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2. 신청용이성	민원신청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부서의 방문 수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3. 신속·정확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4. 대응성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이유 제시 여부
	5. 형평성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체감만족도(30)		일반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07년도에는 '06년도 평가와는 달리 7점 척도에 따라 설문조사한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의 분포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07년도부터는 주요정책만족도의 경우 내부고객 평가대상 1개 과제에 대해서만 평가하던 것을 정책수행 일반에 대해서 평가하도로 하였다. 민원서비스 만족도의 경우에는 부처간 소관민원의 상대적 난이도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민원인이 직접 평가한 난이도의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 특정시책 평가

(1) 개 요

가) 배경 및 목적

특정시책 평가는 특정과제 평가와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로 구분된다.

특정과제 평가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등을 대상으로 분석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수시 선정·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0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 정부부처간 정책 조정·갈등 해결사례를 평가함으로써, 부처간 협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07년도부터는 부처간 갈등해결에서 더 나아가 부처·지자체, 공공기관, NGO간 갈등해결 사례 및 갈등예방 사례로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나) 평가대상기관 및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기관은 재정경제부 등 25개 '부' 단위 기관, 국세청 등 18개 '청' 단위 기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특수성 등을 감안, 특정시책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고,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신설기관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나, 다수 부처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06년도의 경우에는 특정과제 선정, 개선조치사항 이행상황 점검, 갈등해결 우수사례 선정 등의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06년도에는 12개의 특정과제(상반기 6개, 하반기 6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를 추진하였으며, 부처 개선조치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처가 제출한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표-35〉 '06년도 분석 특정과제

'06년도 분석 특정과제	
▸ 상반기	▸ 하반기
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평가	⑦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평가
②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정책 평가	⑧ 한-칠레 FTA 이행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
③ 농어촌 보건의료 지원정책 평가	⑨ 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태 평가
④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⑩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대책 평가
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대책 평가	⑪ 한류 지속·확산 방안의 추진실태 평가
⑥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실태 평가	⑫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평가

평가대상과제로서, 특정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부처 제안과제와 실수·실책사례(「품질 높은 정책, 실수로부터 배운다.」 책자에 수록된 실수·실책 정책사례)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부처 제안과제 1건(문화관광부, 「한류의 지속·확산의 지원실태 평가」), 실수·실책사례 20건이 선정되었다.

〈표-36〉 실수·실책 정책사례

실수·실책 정책사례	
① 세율 인상 정책(재정경제부)	⑪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정책(환경부)
②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교육인적자원부)	⑫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정책(노동부)
③ 기무사령부의 과천이전 사업(국방부)	⑬ 부도임대주택 정책(건설교통부)
④ 인터넷 발급문서 위·변조 문제(행정자치부)	⑭ 주택 발코니 제도개선(건설교통부)
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행정자치부)	⑮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발표 및 대응(해양수산부)
⑥ 집유 일원화 사업(농림부)	⑯ 지진해일 감시·예측 정책(기상청)
⑦ 농업경영개선 자금 부당 대출(농림부)	⑰ 축산 분뇨 액비화 사업(농촌진흥청)
⑧ 세녹스 유사휘발유 관련 대응 사례(산업자원부)	⑱ 소상공인지원센터 시도위임 정책(중소기업청)
⑨ 영세자영업자 대책(보건복지부)	⑲ 수입식품 안전대책(식품의약품안전청)
⑩ 혈액안전관리대책(보건복지부)	⑳ 모래구매 비축 정책(조달청)

또한, '03~'06년도에 분석된 특정과제 22건(개선조치사항 176개)에 대해 반기별로 개선조치사항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와 관련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2006년 1~12월 중에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를 평가대상과제로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표-37〉 '06년도 특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대상과제

특 정 과 제 명	개선조치 사항 수
총계 : 22개 과제	176
〈'06년도 평가과제〉 : 6개 과제	66
①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 평가	9
②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정책 평가	13
③ 농어촌 보건의료 지원정책 평가	16
④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11
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대책 평가	7
⑥ 연안해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실태 평가	10
〈'05년도 평가과제〉 : 12개 과제	97
① 도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8
②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9
③ IT분야 중소기업 육성방안	10
④ 경전철 건설 추진실태 평가	14
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정책 평가	9
⑥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평가	11
⑦ 법원 · 검찰청과 구치시설 병설운영의 효율성 평가	2
⑧ 저소득층 자녀 교육시책 평가	10
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내실화 방안	8
⑩ 테마마을 정책의 평가	6
⑪ 형사절차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정책 평가	5
⑫ 국가기간 통신망 관리 평가	5
〈'04년도 평가과제〉 : 2개 과제	11
① 공청회운영 내실화 방안 평가	7
② 우수정책에 대한 해외전파 관리방안 평가	4
〈'03년도 평가과제〉 : 2개 과제	2
① 소비자에 대한 중요정보 표지 · 광고제도 평가	1
②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 평가	1

(2) 평가주체

특정시책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정시책 평가는 특정과제 선정·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특정과제 분석 시에는 관련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으로 '특정시책평가단'을 구성, 특정과제 이행상황 평가 및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3) 평가내용

〔'06년도 평가〕

'05년도까지는 '특정과제 평가'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시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 특정과제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그 이행을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06년도부터는 기존 특정과제 평가에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를 신설하여 특정시책 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부처별 평가에 반영하였다.

〈표-38〉 '06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특정과제 (100)	과 제 선 정	1. 과제 선정	1-1) 선정된 과제의 부처 자체 제안과제 여부, 실수·실책사례 선정 여부	30
	계 획	2. 계획의 적절성	2-1) 특정과제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의 적기 수립여부	70
			2-2) 이행계획 내용이 당초 제시한 개선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집 행	3. 시행과정의 적정성	3-1) 이행계획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조치기한 내에 정책을 추진한 정도	
	산 출/ 결 과	4. 결과의 적정성	4-1) 조치사항 이행계획 대비 실제 달성한 실적 수준	
갈등해결 우수사례 (가점 +10)	집 행	1. 갈등해결의 적정성(30)	1-1) 갈등해결(예방)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 평가단이 5점 척도로 정성적으로 평가	+10
		2. 조정 소요일수 (20)	2-1) 난이도별로 갈등해결(예방)을 위한 조정(예방)소요일수 * 산출식 = 조정종료일a - 조정시작일b (예방활동종료일-예방활동착수일)	
	산 출/ 결 과	3. 조정이후 이행도 (50)	3-1) 갈등 조정(예방) 이후 이행도	

특정시책 부문별로는, 특정과제에 100점을 부여하고, '06년도에 신설된 갈등해결 우수사례에 가점 10점을 부여하였다.

특정과제는 과제 선정과 개선조치 이행상황으로 구분하여 평가했으며, 과제 선정시 부처 제안과제가 특정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부처에 과제당 10점을 부여하였다.

개선조치 이행상황은, 정책단계별로 구분하여 3개 단계가 모두 정상추진인 경우 60점, 추진미흡이 있는 경우 20점으로 평가하고, 10점 범위 내에서 부처의 이행 노력도를 반영하였다.

갈등해결 우수사례는 3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였다.

〔'07년도 평가〕

'07년도에는 갈등해결의 중요성 및 '06년도의 제도 운영 결과 얻은 시사점 등을 반영하여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를 본 배점에 포함하고 점수 비중을 높였으며,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측정기준을 제시하였다.

〈표-39〉 '07년도 특정시책 부문 평가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특정과제 (70, 가점+10)	과 제 선 정	1. 기관노력도	1-1) 선정된 과제분석 지원 및 향후 조치에 대한 부처노력	+10
	계 획 (20)	2. 계획의 적절성	2-1) 특정과제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의 적기 수립여부	20
			2-2) 이행계획 내용이 당초 제시한 개선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	
	집 행 (20)	3. 시행과정의 적정성	3-1) 이행계획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조치기한 내에 정책을 추진한 정도	20
	산출/ 결과(30)	4. 결과의 적정성	4-1) 조치사항 이행계획 대비 실제 달성한 실적 수준	30
갈등해결 우수사례 (30)	집 행 (18)	1. 갈등해결의 적정성	1-1) 갈등해결(예방)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 평가단이 5점 척도로 정성적으로 평가	10
		2. 조정 소요일수	2-1) 난이도별로 갈등해결(예방)을 위한 조정(예방)소요일수 * 산출식 = 조정종료일a - 조정시작일b (예방활동종료일-예방활동착수일)	8
갈등해결 우수사례 (30)	산출/ 결과(12)	3. 조정이후 이행도	3-1) 갈등 조정(예방) 이후 이행도	12

특정과제에 대해 계획, 집행, 산출/결과 단계별로 배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하고, 단계별 배점은 평가지표 내용, 정책적 중요도 및 타 부문의 배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정책·제도 도입 또는 시행과정에서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으로 인한 갈등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를 가점 10점('06년도)에서 본 배점

30점으로 조정('07년도)하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산출방식 등을 보완, 조정 소요일수의 경우 갈등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난이도 관련 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갈등해결 우수사례의 대상범위를 정부부처 간 갈등해결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 갈등해결 사례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처별 사례 제출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평가목적 및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정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미친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다시 환류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1998년부터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제'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999년 '시범평가', 2000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기에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01년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고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현행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② 평가 종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로 구분된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와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표-40〉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류

구 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합 동 평 가	개 별 평 가	
평가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합동 (행정자치부 주관)	해당 중앙행정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 기 관	광역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평가대상 업 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와 동일. 다만,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불일치 등으로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
평 가 방 법	행자부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평가대상·방법 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평가	지자체 스스로 '정부업무 평가 시행계획' 및 '지자체 자체평가 운영지침(행자부)'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③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며, 평가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과 그 밖에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개별평가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하고, 평가 대상 업무는 국가위임사무 ·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합동평가와 동일하나 업무의 특성 · 평가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표-41〉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문 · 기술적 점검 등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한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포함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등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평가절차 및 방법

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1) 평가절차

가) 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동평가의 경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평가를 실시한다.

〈표-42〉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포함할 사항

○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등

나) 개별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개별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대상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2) 평가방법

합동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및 「합동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당해 시책의 계획, 집행, 산출/결과, 결과활용 등 정책추진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 지역특성 반영과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1〉 합동평가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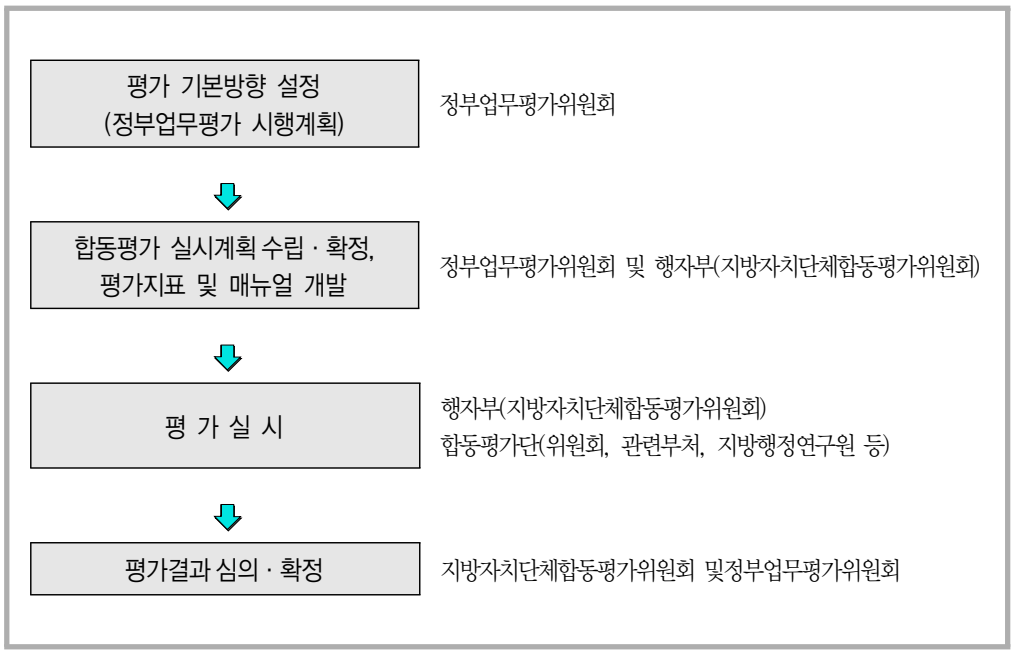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 제출하도록 하여 객관성 · 공정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방안 및 평가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마련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기관의 정책 등을 평가한다.

〈표-43〉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 · 대상 · 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3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을 구성 ·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및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1】 '06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과제

〈표-44〉 합동평가 (14개 부처 46개 과제)

분 야	평 가 대 상 과 제	소관부처	분 야	평 가 대 상 과 제	소관부처
일반행정 (5)	• 지방행정 조직관리 •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 기록물관리 평가 • 지방규제개혁 • 지적행정 관리	행자부	지역경제 (6)	• 고용촉진훈련 • 일자리 지원 정책 •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 중기제품 공공구매이행력 확보	노동부 행자부·노동부 노동부 행자부 노동부 중기청
보건복지 (5)	• 장애인 생산품 구매 • 노인복지시설 확충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확산 • 한약재 유통관리 평가	복지부 보훈처 식약청	지역개발 (6)	• 건축행정 내실화 •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 지방과학기술 진흥 • 공정거래질서 확립	건교부 행자부 과기부 산자부·특허청
환경관리 (6)	• 환경관리일반 • 자연환경 보전 • 폐기물 관리 일반 • 대기 관리 • 온실가스 감축 • 수질관리	환경부	문화관광 (5)	• 관광 인프라 구축 •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옥외광고물관리	문광부 행자부
여성복지 (6)	•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 보육서비스 확대 • 양성평등 정책 확산 • 공무원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 가정·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여성부	안전관리 (5)	• 민방위 역점시책 •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강화 • 범국민 안전문화 육성 지원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시설물 안전관리	방재청 건교부
			중점과제 (2)	• 식품안전관리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식약청 산자부

〈표-45〉 개별평가(12개 부처 35개 과제)

평 가 대 상 과 제	소관부처	평 가 대 상 과 제	소관부처
• 국유재산관리 · 처분실적 평가 • 지자체 소비자 행정 평가	재경부 (2)	• 노인 일자리 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 건강생활 실천사업 •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 •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 한방공공보건사업 • 모자보건 사업	복지부 (8)
• 낙후지역 개발사업 평가 • 소도읍 육성사업 • 신활력 지원사업 • 자원봉사센터 운영 •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 지방재정 · 분석 진단 평가 • 지방행정 혁신 평가 •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 •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 종합평가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행자부 (11)	• 지방자치단체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여성부
		• 개별공시지가조사 평가 • 주거복지 평가 • 도시별 교통문화 지수 • 하천제방정비 평가	건교부 (4)
		• 비상대비업무 확인 평가	비기위
		•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정책 평가계획	청소년위
•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 고품질쌀 생산 · 유통대책 평가 • 가축방역시책 평가	농림부 (3)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방재청
		•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평가	문화재청
		• 지방농촌진흥사업 평가	농진청
		• 산림행정 종합평가	산림청

【참고2】

〈표-46〉 '07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과제

합동평가 대상과제(38개)	소관 부처	개별평가 대상과제(26개)	소관 부처
• 지방행정 조직관리	행자부	• 국유재산 관리 · 처분 실적 평가	재경부
•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	• 지자체 소비자행정 평가	〃
• 기록물관리 평가	〃	•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 평가	행자부
• 지적행정 관리	〃	• 낙후지역 개발사업	〃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복지부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 노인복지사업 평가	〃	• 지방재정 · 분석 진단 평가	〃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평가	〃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시책 평가	보훈처	• 시군구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
• 식품 안전관리	복지부	• 지방행정 혁신 평가	〃
• 한약재 유통관리 평가	〃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평가	〃
• 환경관리일반	환경부	• 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농림부
• 자연환경 보전	〃	• 고품질 쌀 생산 · 유통대책 평가	〃
•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	〃	• 가축방역시책 평가	〃
• 폐기물 관리 일반	〃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복지부
• 성별영향평가 추진실태 평가	여성부	• 한방공공보건사업	〃
•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	• 전염병관리사업 종합평가	〃
•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	• 모자보건 사업	〃
• 가정 ·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	• 지자체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실적	여성부
• 보육서비스 확대	〃	• 개별공시지가조사 평가	건교부
• 지자체 여성공무원정책 종합평가	행자부	• 주거복지 평가	〃
•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 하천제방정비 평가	〃
• 청년 실업대책 추진	〃	• 비상대비업무 확인 평가	비기위
•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평가	청소년위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중기청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	소방방재청
•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산자부	• 지방 농촌진흥사업 평가	농촌진흥청
• 공정거래질서 확립	산자 · 중기청	• 산림행정 종합평가	산림청
• 건축행정 내실화	건교부		
•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기부		
• 시 · 도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평가	행자부		
• 지방문화 예술 활동 평가	문광부		
•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 · 마케팅 활동	〃		
• 옥외광고물 개선 추진실적 평가	행자부		
• 민방위 운영	소방방재청		
• 소방안전 및 대응능력 강화	〃		
• 범국민 안전문화 육성 지원	〃		
• 시설물 안전관리	건교부		
• 국민임대주택건설 지원	〃		
• 지방규제 개혁	행자부		

제3절 공공기관 평가

① 추진경위

각 개별 법률 등에 의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던 공공기관 평가도 평가의 중복 방지 등 통합평가방향과 조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06.4.1시행)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검토하게 되었다.

② 평가 개요

가. 평가의 종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시행) 등 7개 법률에 의한 평가"(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지정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평가로 간주되며(법 제22조 제2항), 지정 공공기관 평가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법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19조)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법 제22조 제4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5항)

나. 평가대상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평가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②「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③「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⑦「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 총 9개 분야 562개 공공기관이다.

〈표-47〉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대상

근 거 법 률	평 가 대 상	대표적 유형	평 가 주 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공기업(24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예산처 장관 (공공기관운영 위원회)
	준 정부기관(78개)	예금보험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국가재정법	기금(60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기획예산처 장관 (기금정책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	과기부·방사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8개)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과기부 장관, 방사청장
	과학기술분야 연구회(3개)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4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326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공기업경영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6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재편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최초로 지정되는 공기업·준 정부기관은 법 시행 당시 정부투자기관(14개), 정부산하기관(100개)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기관(3개) 중 직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2항)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06년도 실적평가는 구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9개 기관(투자기관 14개, 산하기관 75개)을 대상으로 하고(동법 부칙 제4조 제4항) '07년도 평가는 24개 공기업(기존 투자기관 11개, 기존산하기관 10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3개) 및 78개 준정부기관(기존 투자기관 3개, 기존 산하기관 66개, '07년 신규지정 산하기관 9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 지정 공공기관 평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평가 대상은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중 "구성원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동조 제2항) (예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라. 평가절차

(1)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①공공기관 평가 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②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를 하며 ③평가 실시기관은 정부업

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당해 또는 차기년도 평가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④공공기관평가실시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즉시 제출한다.

〈표-48〉 개별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평가절차

소 관 중앙행정기관장	⇨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	소 관 중앙행정기관장
개별법률 절차에 따른 평가계획 수립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당해 또는 차기 평가계획에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평가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동법 제48조)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7조),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관장이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한다(동법 제48조) 평가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한다(동법 시행령 제27조)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나)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평가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며, 3년마다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전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동법 제82조)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평가단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의뢰가 가능하며(82조 제2항), 기금정책심의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75조 제2항).

기금의 존치평가는 기금의 정책정합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기금의 운용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사업운영부문은 사업계획·집행·성과 3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자산운용부문은 여유자금운용에 관하여 평가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및 국회에 제출한다(동법 제82조 제3항).

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방위사업청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3개 연구회 평가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KAIST 등 8개 기관) 및 과학기술 3개연구회(기초기술, 공공기술, 산업기술 연구회)에 대한 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며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기술부 및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은 기관의 임무 및 장기발전목표의 전략성, 연구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 기관운영의 효율성, 연구 및 사업수행결과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며(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학기술 3개 연구회는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및 연구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48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 과학기술부 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고(동법 제32조 제2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과기혁신본부장)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동법 제32조 제3항)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각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를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며(동법 시행령 제21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된 평가결과를 종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다(동법 제28조).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한다. 경제·인문사화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평가기준에 따라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를 실시한다(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무총리는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회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8조).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평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7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경영지도법인, 경영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경영평가 내

용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동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며.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동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 대표자는 경영평가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예산의 우선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규정 제13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6항).

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평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지사(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경영평가전문기관 등을 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평가 표준안을 마련한다(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표준안을 참작하여 지방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경영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영평가표준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영평가결과 제출을 요청 할 수 있고(동법 시행령 제9조) 시·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출연연구원에 대한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 경영개선합리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6항).

(2) 지정 공공기관 평가

①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외에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동법 시행령 제19조) ②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체계와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즉시 제출하게 된다.

〈표-49〉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절차

소 관 중앙행정기관장	⇨	정부업무평가 위원회	⇨	소 관 중앙행정기관장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대상 공공기관 지정 및 평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평가계획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 제출

③ 공공기관의 평가계획 검토 및 평가결과 제출

가. 평가계획 검토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계획과 지정 공공기관 평가계획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목적, 평가지표 체계,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결과의 활용 등 평가의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2006년 4월 법 시행 이후 2007년 7월 현재까지,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금 등 9개 분야의 공공기관 평가계획을 제출받아 아래 세부 검토사항에 따라 평가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표-50〉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검 토 대 상	세 부 검 토 사 항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 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 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 내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간의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07년도 정부투자기관평가계획의 경우 기관평가 시 고객만족도 평가지표에 중복이 존재하여 '07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는 계획에 수정 반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07년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06년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06년도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0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시 '고객만족도' 평가시기를 당해 공공기관 평가대상기간에 맞춰 조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06년도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보화수준 평가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07년도 과학기술 정보화 수준 평가방안 수립 시 '정보화 수준' 평가시기를 당해 공공기관 평가대상기간에 맞춰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06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과학기술분야 3개 연구회 등 3개 분야의 평가계획 수립시기를 현행 평가대상 다음 연도에서 평가대상 연도 이전 또는 평가 연도 1/4분기로 앞당기도록 하고 '08년도 평가계획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2개 분야의 '07년도 고객만족도 평가시기를 당해 공공기관 평가대상기간에 맞추어 평가대상 다음 연도 1/4분기로 조정하여 '07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나. 평가결과의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에 의해 총 423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공공기관 평가결과는 '05~'06년도 경영실적 등을 대상으로 하여 '06~'07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이다.

8개 개별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 평가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7개 법률에 의해 총 285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출하였다.(이중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07년도에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는 없었음) 금번에 제출한 공공기관 평가는 '05~'06년도 경영실적 등을 대상으로 하여 '06~'07년도에 실시한 평가결과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8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법 제22조), 2007년은 법 시행('06. 4. 1)이전에 평가계획이 확정되어 제출되지 않았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계획에 따라 8개 분야의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결과는 각 개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커나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표-51〉 공공기관의 평가 현황('07. 7.현재)

평가대상 공공기관(대상수)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제출일
정부투자기관(14개)	'05년도 경영실적	'06. 10. 4
정부산하기관(87개)	'05년도 경영실적	'06. 9.11
기금(36개)	'05년도 사업운영 및 자산운용	'06. 9.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3개) 과기부·방사청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8개)	'05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06. 10.26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1개)	'05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06. 10. 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23개)	'05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06. 10. 20
지방공기업(169개)	'05년도 경영실적	'06. 1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23개)	'06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07. 4. 30
기금(39개)	'06년도 기금운용 및 존치평가	'07. 7. 24

《별첨》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 : 102개

〈표-52〉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공기업 · 준정부기관)

구 분		지 정 요 건	유 형
공기업 (24) ※직원 50명 이상일 것	시장형 (6)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건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18)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이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재경부) 한국조폐공사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농림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부) 산재의료관리원 (건교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해수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준정부 기관 (78) ※직원 50명 이상일 것	기금 관리형 (13)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재경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문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자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정통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감위) 한국자산관리공사

구 분		지정요건	유 형
준정부 기관 (78) ※직원 50명 이상일 것	위탁 집행형 (6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재경부) 증권예탁결제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과기부)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행자부) 대한지적공사 (문광부)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산자부) (재)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정통부)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소위)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청) 한국소방검정공사

② 기금 : 60개

〈표-53〉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기금)

소관부처(기금 수)	기 금
재정경제부(9)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인적자원부(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통일부(1)	남북협력기금
외교통상부(1)	국제교류기금
국방부(2)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행정자치부(1)	공무원연금기금
과학기술부(2)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문화관광부(6)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진흥기금
농림부(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산업자원부(3)	전력산업기반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수출보험기금
정보통신부(1)	정보통신진흥기금
보건복지부(3)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환경부(4)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노동부(5)	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여성부(1)	여성발전기금
건설교통부(1)	국민주택기금
해양수산부(1)	수산발전기금
기획예산처(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위(1)	부실채권정리기금
국가보훈처(2)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중소기업청(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방송위원회(1)	방송발전기금
국무조정실(1)	복권기금
청소년위원회(1)	청소년육성기금
계	60개

③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23개〉

〈표-54〉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조세연구원
• 통일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국토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④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 7개

〈표-55〉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과학기술부 산하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 고등과학원(KIAS)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 광주과학기술원(GIST)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⑤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 : 1개(국방과학연구소(ADD))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4개

〈표-56〉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 주체	평가 대상기관
기초기술 연구회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국가수리과학연구소(NIMS),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핵융합연구센터(NFRC)
산업기술 연구회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기계연구원(KIMM),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화학연구원(KRICT), 안전성평가연구소(KIT)
공공기술 연구회 (1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한국해양연구원(KORDI),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극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⑦ 지방공기업 : 326개

○ 지방직영기업 : 221개

〈표-57〉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지방직영기업)

세 부 사업별	단 체 수	단 체 별
상수도	105 (특별 · 광역시 7, 도 1, 시 74, 군 2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김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청원,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당진,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칠곡,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제주수도사업
하수도	6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과천, 성남, 구리, 시흥, 포천, 오산, 여주, 군포, 용인, 의왕, 남양주, 안성, 광주, 평택, 안양, 김포, 가평, 춘천, 속초, 청주, 제천, 공주, 천안, 아산, 서산,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목포, 순천, 나주, 영암, 경주, 구미, 안동, 영천, 경산, 상주, 영주, 창원, 진주, 진해, 김해, 마산, 사천, 거창, 통영, 밀양, 양산, 창녕, 제주
공영 개발	37 (시 · 도 2, 시 · 군 35)	인천, 울산, 대구달성군,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판교IT업무지구조성,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 개발 기금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공사 및 공단 : 105개

〈표-58〉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공사 및 공단)

형태별	사 업 별	단체 수	단 체 별
지 방 공 사 (40개)	지 하 철	7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16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지자체 50% 이상출자	2	태백관광개발공사, 정남진장흥유통공사
지 방 공 단 (65개)	시설관리	63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부산, 대구, 인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울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구미시, 안동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광주환경
	경 륜	2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

⑧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16개

〈표-59〉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현황(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강원발전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 충북개발연구원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충남발전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	• 전북발전연구원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경남발전연구원
• 대전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경기개발연구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제 3 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백.서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개념

① 성과관리의 개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는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 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성과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각국 정부들이 직면한 재정위기, 국민들의 기대수준 상승, 정보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과관리의 도입은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한계로 종래 예산의 투입에만 관심을 갖던 정부업무관리 방식이 정책의 영향 등 '결과 지향적(Result-oriented)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② 성과관리의 기본 구조

성과관리는 '성과관리계획 수립 - 집행·점검 - 평가 - 환류' 체계로 구성된다. 정부 각 기관은 기관의 임무와 목표, 구체적 실행수단을 포함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추진한 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기관은, 기관별 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정책집행을 통하여 사전에 계획된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제시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정책개선, 예산, 조직, 인사, 보수 등에 환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그림-2〉 정부업무 성과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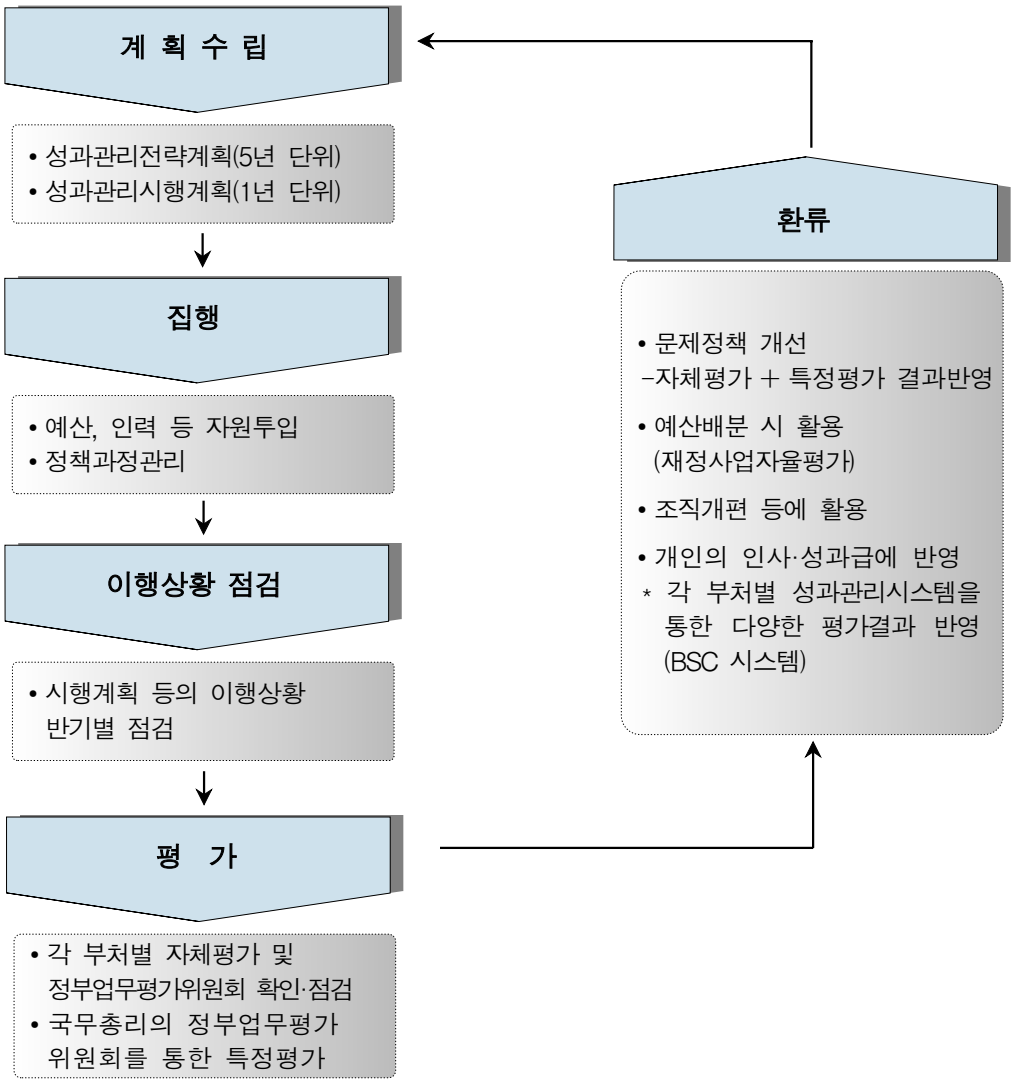

제2절 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① 추진전략 및 도입과정

성과관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일 잘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 개개인 및 조직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관차원에서는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개인의 성과를 누적 기록하여 능력 있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발탁되고 역량 있는 조직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 기관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각종 노력으로 구체화된다. 아울러 정책을 추진한 개개인 및 조직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성과에 대한 기록체계를 갖추고, 구체적인 성과의 환류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은 그간 부분적으로 운영되던 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2005년부터 정부업무평가체계와 연계된 연두업무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역량을 축적하는 한편 기관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과에 관한 평가결과를 인사·예산 등의 부분에 환류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성과관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단기 목표로 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략적 조직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를 장기적인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조직, 예산, 인사·성과보수 등 기능별 주관기관(행자부, 인사위, 예산처)에서 실무팀을 구성하여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

의 활용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어 사례발표, 설명회 등 지속적인 포럼활동을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통해 제도화 되었는 바, 기관별로 임무, 전략목표, 연도별 성과목표 등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장기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당해연도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제시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화 되었다.

〈표-60〉 성과관리 추진전략

'05년 초	•종합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단순투입/산출지표위주의 성과지표 선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관리 한계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및 보상체계 취약
'05년 말	• 연두업무목표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본격 시행 – 분기별 모니터링 및 연말 상위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 내실화 및 자체평가활성화 등을 통해 성과관리 역량 제고 촉진 •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에 관한 평가결과의 환류 및 보상체계 강화
'06년 이후	• 통합적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전략적 조직 운영 정착 – 성과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 · 시스템화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 · 성과지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정책의 집행 · 평가 · 환류 강화 – 통합평가체계 정착을 통한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확보

② 성과지표 개발 · 개선 노력

성과관리제도의 정착과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는 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여부이며, 성과측정의 기본 도구가 성과지표이다.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환류 되어야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관리 방식은 '05년도 연두업무계획부터 시작되었다. 성과지표의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각 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은 성과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제대로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담감은 각 부처가 성과지표를 예산, 인력, 시간 등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하는가와 관련된 투입중심적인 지표로 설정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보다는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이후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요인이 되었다. 성과지표 설정이 갖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05년도 연두업무보고 시 제시한 각 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 보완하기로 하였다.

검토과정 중 각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들이 대부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인 산출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투입과 과정위주의 지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과정을 거쳤음에도 모든 기관의 성과지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도 결과중심의 공공부문 성과지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하나의 지표를 개발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지표의 충실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 성과지표의 개발이 어려운 사례

① 성과측정이 어려운 포괄적 업무의 경우

통일 · 외교 · 일반행정 분야는 포괄적 업무성격으로 인해 계량화된 객관적인 지표개발이 어려워 정성적 측정이 불가피하다.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 분야는 정량지표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실제 목표와는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와 같은 지엽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정량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돌파구 마련' 과제의 경우 '남북 장관급 회담 등에서 관련문제 해결을 촉구한 비율'이라는 지엽적인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과제의 성과 도출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판단도 모호하여 대체지표 개발이 곤란하였다.

② 관련통계 미비로 구체적 기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만 작성하는 현실성 없는 통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근거 또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법무부의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 과제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 감소'라는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을 죄명별로 구체화하여 범죄별 재범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나 관련통계 미비로 개선이 불가한 상황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강도와 사기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대표죄명인 강도로만 등재하는 등의 통계산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③ 불법행위 관련 성과측정의 한계

적발률, 단속률 등의 불법행위 관련 지표의 경우 단속체계 등의 개선에 따라 적발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 자체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검토과정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적발률 기준인 불법행위 발생 총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률'의 경우 불법마약거래 추세를 계량화한 통계나 국제적인 공통기준이 없는 실정이어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6년부터는 각 기관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였다.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감사원 평가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결과, 당초 성과지표 1,480개 중 557개(37.6%)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여 부처와 공동으로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9개 정책목표, 883개 이행과제에 대해 총 1,594개 성과지표를 확정하였다. 하반기 들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성과지표의 개선 · 보완이 필요한 122개의 성과지표를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1,605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05년도 및 '06년도 연두업무 보고 시 각 부처가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설정한 성과지표와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지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과지표

의 계량화는 상당부문 확보되고 있고, 지표의 성격도 산출이나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1〉 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정책목표 (전략목표)	이행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기관	계량화 여부		지표 성격			
				계량	비계량	투 입	과 정	산 출	결 과
'07년도	268	1,022	7,596 / 48	5,838 (76.9%)	1,758 (23.1%)	150 (2.0%)	633 (8.3%)	3,526 (43.3%)	3,287 (43.3%)
'06년도	229	883	1,605 / 48	1,247 (77.7%)	358 (22.3%)	86 (5.3%)	227 (14.1%)	811 (50.5%)	481 (30.0%)
'05년도	218	840	1,591 / 44	1,213 (76.2%)	378 (23.8%)	90 (5.7%)	299 (18.8%)	870 (54.7%)	332 (20.8%)

* '07년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현황 (전략목표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체계)

성과지표의 개선 보완과정에서 입수한 방대한 성과지표 관련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지표의 개선과 보완 그리고 장래 신규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성과지표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과의 연계를 고려하였으며, 지표의 개발과 검토, 개선 및 보완과정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지표의 변화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3월에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관대표 성과지표」 개발에 착수하였고, 시범적으로 '부' 단위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108개 지표를 개발하여 각 기관에 보급하였다. 시범보급 이후 많은 기관이 대표 성과지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어 2006년 12월에는 위원회, '처'·'청' 단위 27개 기관에 대한 대표지표를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2006년 10월에는 성과지표 검토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례와 유의점, 개발원칙, 국내외 지표사례 등을 수록한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부처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지원과 부처 스스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해져 각 부처 성과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각 기관 성과관리시스템 상의 개인별 지표와 기관의 지표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경쟁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평가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조직원 모두가 공정하고 타당한 지표 설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3절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단계별 주요내용

①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2006년 4월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 제6조)되었다.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은 실제 정부가 할 일의 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예산 등에 환류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은 각 기관이 5년 시계의 중·장기 전략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성과관리시행계획'은 이의 연도별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이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일종의 '정부와 국민 간의 성과약속'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각 기관은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한 해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구체적인 측정 방법 등을 담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고, 연말에는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계획수립 및 성과측정 범위도 실·국 수준에서 과·팀 단위로 구체화하여 정책성과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한다.

이와 같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은 국제적인 공공부문 성과관리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로서의 의미와 함께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한 통합 성과관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지닌다. 즉,

미국·영국 등 서구 선진국은 재정부문에 한정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전례가 없고 경험이 없는 데서 부처 담당자들의 부담은 컸고, 그만큼 각 부처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처음으로 실시하는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한 달여간 계획 및 목표체계,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결과 기존부터 BSC(Balanced Score Card) 등을 기관의 성과관리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던 기관이 비교적 성과관리 체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으로 그간 「국가재정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 온 성과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일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획 수립시기도 '08년도부터 예산순기에 맞추도록 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관성을 강화하였다.

- **임무** : 해당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 기능을 의미
- **비전** :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전략목표** :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
- **성과목표** :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
- **관리과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
- **성과지표**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

〈그림-3〉 성과관리계획의 목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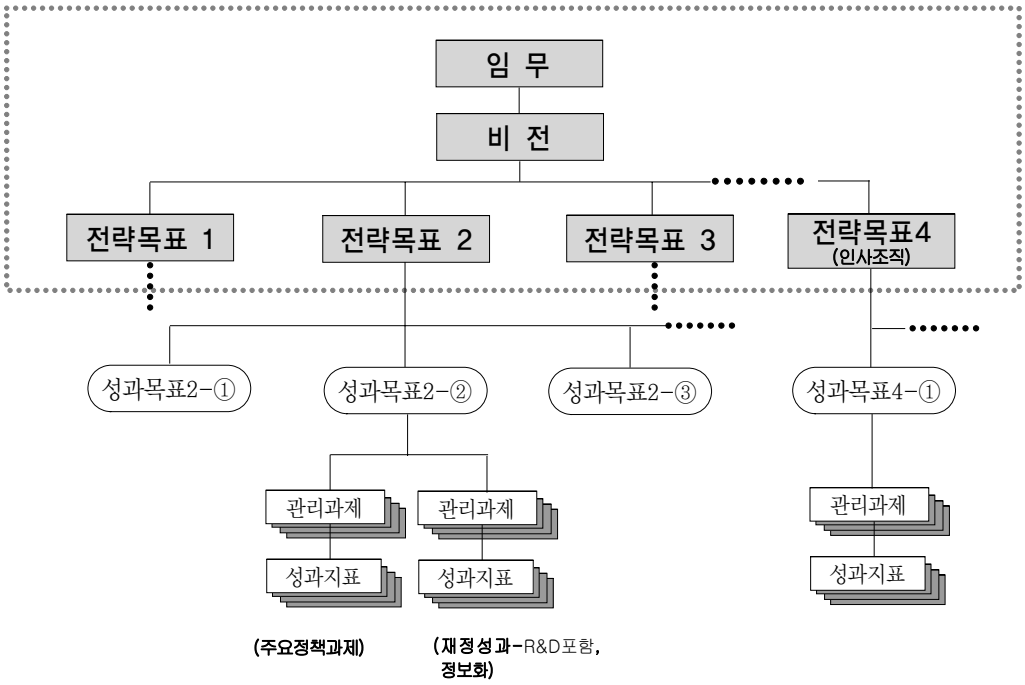

② 집행 · 점검

중앙행정기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정도, 성과달성 정도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평 가

각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대상은 주요정책과제 · 재정성과 · 정보화 · 인사 · 조직 분야 등 기관 전체의 업무를 망라한다. 매년 연말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해 1~3월까지 기관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그 결과를 확인 · 점검토록 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30개 이상의 기관은 BSC 기법을 도입·운영하면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목표체계와 BSC상의 전략체계를 일치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BSC상의 핵심성공요인(CSF; Critical Success Factor)과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기초한 평가보다도 구체적이며 상세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4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결과의 환류는 크게 기관차원과 개인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차원은 평가결과가 정책개선, 예산, 조직 등에 환류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개인차원은 인사, 보수 등에 환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가. 정책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체 시정조치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그림-4〉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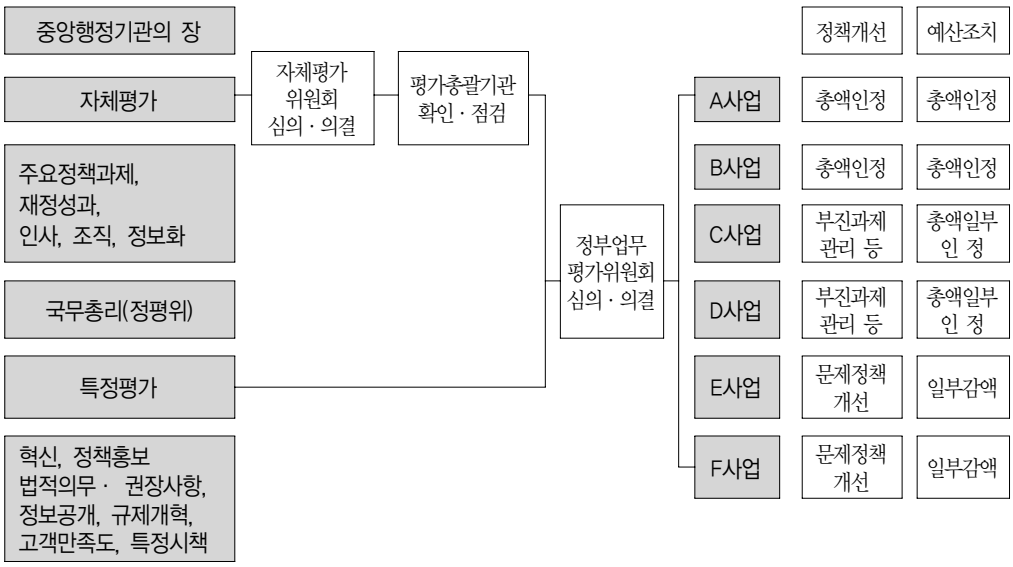

나. 예산편성 시 반영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근거와 예산편성의 판단자료 등 재정운용 과정에 활용한다. 2005년부터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사업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3년 주기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계획, 집행, 결과 및 활용 단계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목표 달성도 등 4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62〉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계 획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2. 성과계획의 합리성	•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집 행	3. 집행의 효율성	•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결 과/ 활 용	4. 성과목표 달성도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 우수(85점 이상), 다소우수(84~70점), 보통(69~50점), 미흡(50점 미만)

사업별 평가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4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구조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이상 구조조정을 하고,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 조직관리에의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의 자율권을 차등화한다. 즉, 자율적 증원의 범위(기관 총 정원의 3% 이내), 3·4급 및 4·5급 정원의 상한 기준(본부의 경우 각각 4급, 5급 정원의 1/3 이내, 소속기관의 경우 15% 이내) 등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라. 인사·보수 등과 연계

평가결과의 인사와의 연계는 직무성과계약제, 근무성적평가제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보수와는 성과급제도 등을 통해 연계되고 있다.

〈그림-5〉 개인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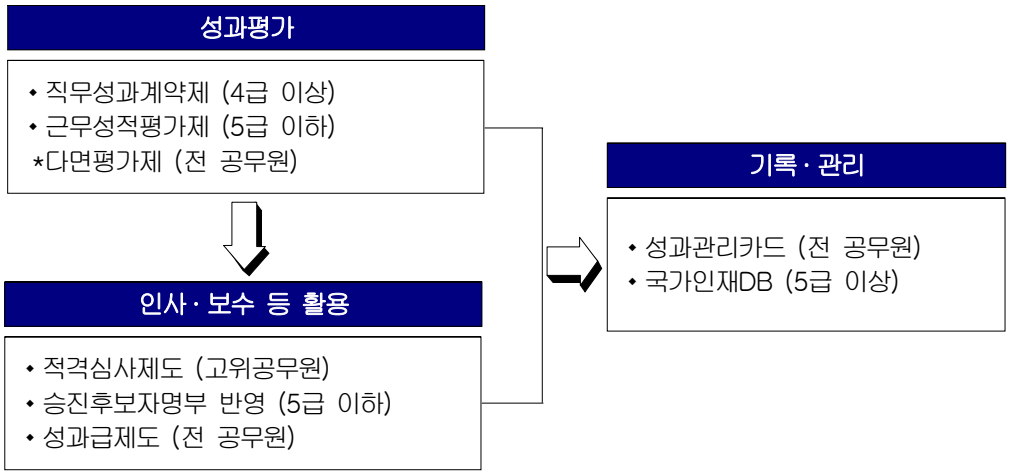

직무성과계약제는 장·차관 등 조직의 책임자와 실·국장, 실·국장과 과장 간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이다. 연공체계에 익숙한 공직사회에 성과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직무성과계약제는 '04년 말 시범 도입 후 '05년부터 전 부처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연초에 각 기관은 기관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확정한다.

연초에 체결된 직무성과계약에 대해서는 7~8월경에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해 초에 연말까지의 성과 등을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는 직무성과계약에서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자질·태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정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림-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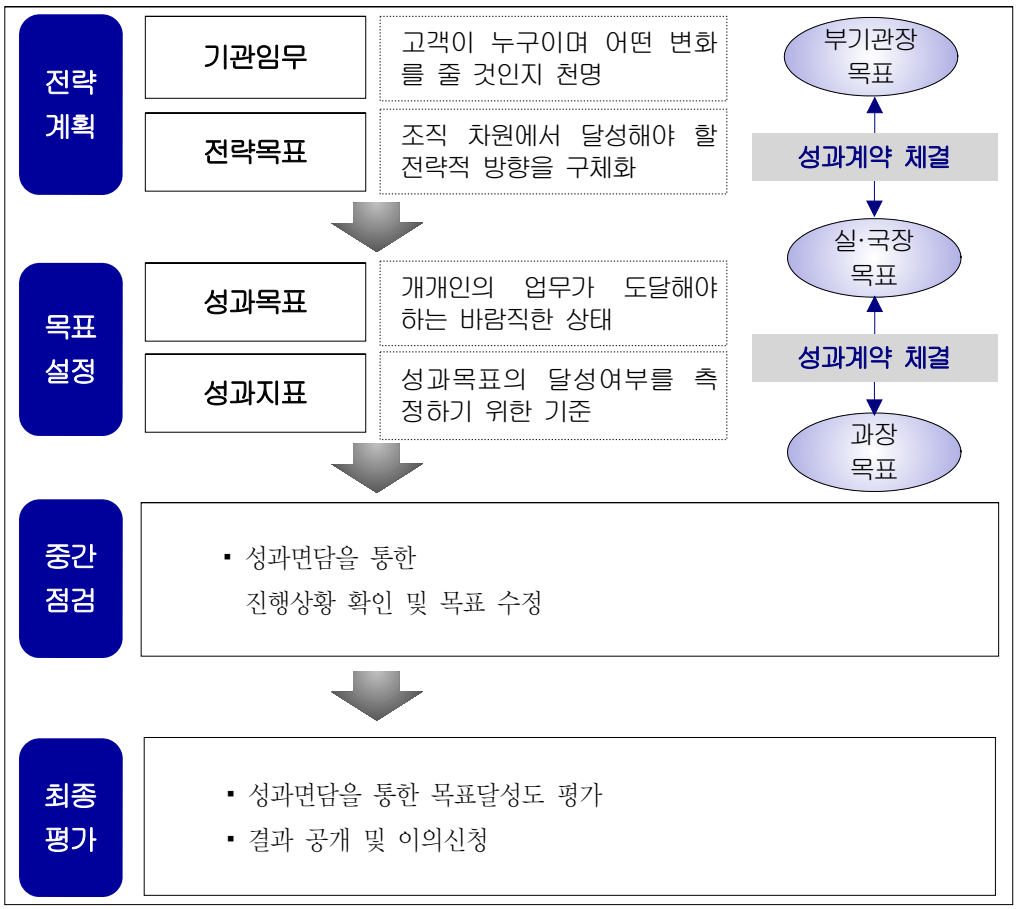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에서는 근무실적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근무실적 부분의 목표 달성도 평가 결과에 반영된다.

개인별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 관리하여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성과관리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는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직무성과계약 주요 이행실적과 상사의 평가의견 및 최종평가 등급이 기록되어, 승진 · 전보심사, 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인재추천 등에 활용된다.

〈그림-7〉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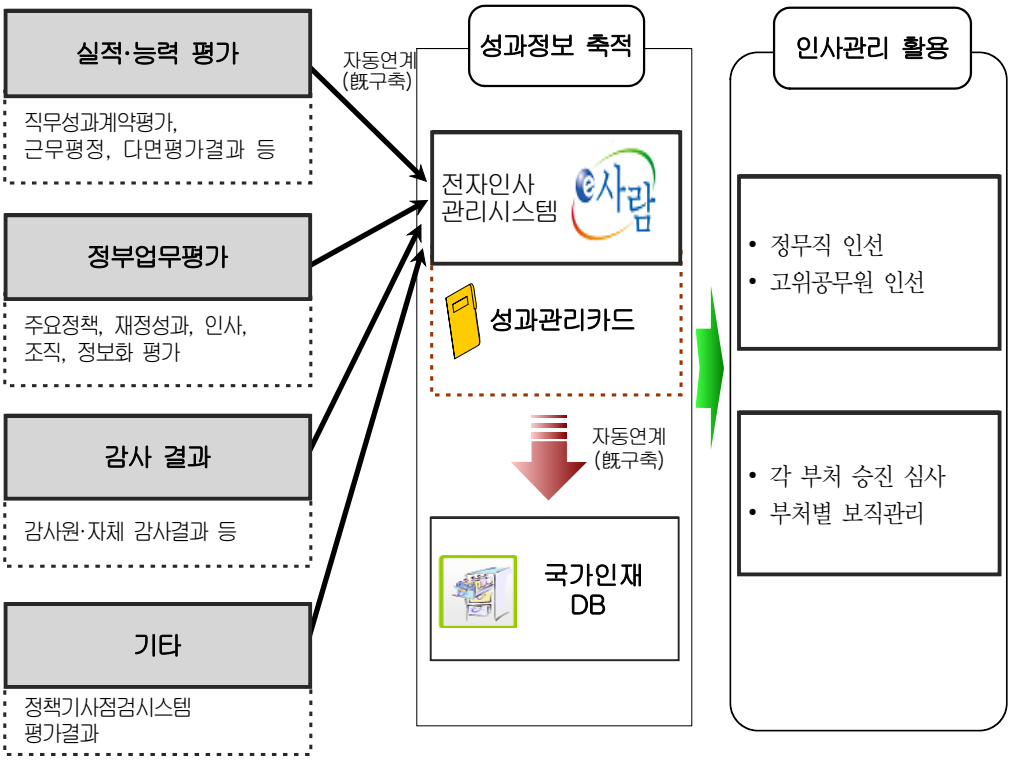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결정 시 정부업무평가결과가 반영된 직무성과계약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표-63〉 성과연봉 등급 결정 기본모델 ('07년도)

절대평가	⇒	상대화 (서열화)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직무성과계약에 따라 최종평가등급 결정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으로 구분)		직무성과계약 평가결과를 기초로 다면평가, 혁신평가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서열화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등급은 S, A, B, C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보수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기타 3%)에서 2010년에는 10%(기타 6%)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고위공무원의 경우 연속하여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평가결과가 불량하면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64〉 '07년도 성과급 지급등급별 지급액 (고위공무원의 경우)

지급등급	S	A	B	C
인 원 비 율	20%	30%	40%	10%
지 급 률	15%	10%	5%	0%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 정부업무평가결과가 반영된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활용하거나 정부업무평가결과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다.

[참고] 정부업무 성과관리 순기

기 간	정부업무 성과관리	예산 관련 일정
1~3월	각 부처별 5대 부문 자체 평가 추진 각 기관별 성과관리계획 국회 상임위 보고 (2월 임시회) 직무성과계약평가 및 성과급 지급	국가재정운용계획(법 제7조)수립 작업반 활동 (예산처 및 각 기관, 전문가 등 참여, 1~3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공개토론회 * 성과보고서 작성 · 제출(각 부처→재경부, 2월 말)
3월	N+1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각 기관 시달 * 지침은 정평위 심의 · 의결을 통해 확정 N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시달	재정사업자율평가보고서 기획예산처 제출
4월	부처별 N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 (~4월) 부처별 N+1년도 성과관리계획안 수립 (~6월) 각 부처별 성과관리계획 초안 수립 (~6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각 부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 및 평가결과 확정 (~6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지출한도 설정 및 예산편성지침 통보
5월		* 정부결산제출 시 성과보고서 및 감사원 성과검사보고서 첨부 (2009년부터)
6월	N+1년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초안 제출 * 각 부처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 시 차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함께 제출 * N-1년도 재정 · 정보화 · R&D 평가결과의 N+1 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 재정사업자율평가 완료 및 발표 * 각 부처 예산자율편성안 제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반영) * N-1년도 평가결과의 N+1연도 예산요구 및 편성에의 반영 * 조직, 인사, 보수체계에의 반영 * N+1년도 성과계획서안 및 N-1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각 부처→기획처)
7~8월	N+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사전검토(목표체계, 지표) * 정평위 주관, 5대 총괄기관 참여 N+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사전검토 결과 통보 및 각 부처 반영조치 * 정평위 → 각 기관	
9~10월	N+1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서안을 예산(안)에 첨부 제출 * 전략계획이 수정된 경우 전략계획도 포함하여 제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변경 (10월) (각 기관 요청→정평위 심의 · 의결)	N+1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제출 2008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시 2008년도 성과계획서 첨부 (법 제 34조 8호) (국회제출은 2009년부터) * 국정감사
11월		예산안예비심사(상임위), 예산안종합심사 (예결위)
12월	예산 확정 결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예산안 본회의 의결 → N+1년도 예산확정
1월	차년도 연두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연계	

제 4 장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제4장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 · 활용

제1절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① 개 념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 electron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평가업무시스템)하고 2007년부터 도입된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성과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성과관리시스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서는 다양한 평가부문별로 평가지표에 따른 실적입력과 평정이 이루어진다.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는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입력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진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② 법적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시행('06.4.1.)에 따라 정책 · 사업 · 업무에 대한 평가과정,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업무의 개선, 개인의 인사, 예산, 조직 등에 반영하는 등 정부업무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 **법 제13조(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절 추진 경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은 평가결과에 대한 온라인 공유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 행정개혁과제로 선정(2003년 7월)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국무조정실은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행정연구원)을 실시하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최초로 마련(2004년 6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을 구성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업무평가의 온라인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2004년 12월)하고, '05년도 1차 정보화사업을 통해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수립(2005년 6월~10월)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06년도 2차 정보화사업을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업무시스템과 평가관련 안내, 커뮤니티 기능 등을 제공하는 평가업무 포털을 개발하였고, 2007년부터 시행하는 성과관리제도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 ISP 수립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프로토 타입(Proto-Type)을 구축하였다.

2006년 12월 2차 정보화사업 완료 이후 사용자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2월부터 동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2007년~2011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였다. 또한, '06년도 인사부문 평가 중 일부지표에 대해서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및 확인 ·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활용은 '07년도 자체평가계획의 등록 및 검토 전 과정을 평가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7년 현재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및 이행점검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07년도 3차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변화된 제도, 지표 및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개선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도화 하였다. 또한, 온-나라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 e-사람(전자인사관리시스템), d-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2007년 4월~10월)을 추진하였다.

제3절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기능

① 성과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비전, 일반현황 등 전략계획 개요, 전략목표, 성과목표, 환류 등 관련계획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 관리과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상세내용을 입력 및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요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등 자체평가 부문의 평가대상관리과제에 대해 반기별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자체점검 할 수 있는 기능과 평가총괄기관의 이행상황 확인 · 점검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65〉 성과관리시스템 주요기능

구 분	메 뉴	주 요 기 능
성과관리 전략계획	전략계획개요	임무, 비전, 일반현황 등 전략계획의 개요 등록
	목표체계	전략목표, 성과목표를 등록
	전략목표	전략목표에 대한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목표	성과목표에 대한 상세내용을 등록
	환류 등 관련계획	평가결과 환류체계, 혁신 및 갈등관리 계획 등록
	전략계획 조회	시스템에 입력한 전략계획 내용을 조회
	분석보고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대한 보고서 출력 기능
성과관리 시행계획	시행계획개요	당해년도 정책추진방향, 일반현황 등 개요 등록
	목표체계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등록
	성과목표	성과목표의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관리 시행계획	과제별 설명자료	관리과제별 상세내용을 등록
	성과지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상세내용 등록
	시행계획 조회	시스템에 입력한 시행계획 내용을 조회
	자체점검	시행계획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 자체점검
	이행점검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 점검 기능
	분석보고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점검,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 출력

② 평가업무시스템

평가업무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정부업무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평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기능으로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평가현황관리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 작성 및 검토, 자체평가시행, 평가총괄기관의 확인 ·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정평가의 경우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규제개혁, 법적의무 · 권장사항, 정보공개, 고객만족도, 특정시책 분야에 대해 온라인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결과, 종합평가결과 등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출력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표-66〉 평가업무시스템 주요 기능

구 분	메 뉴	주 요 기 능
자체평가	평가현황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진행현황 조회
	자체평가계획관리	자체평가계획 입력, 조회 및 수정, 평가총괄기관의 자체평가계획 검토 기능
	자체평가시행	평가지표별 평가근거자료 입력, 자체평가위원의 자체평가 시행
	확인 · 점검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 기능
	재평가	재평가 대상과제에 대해 재평가 실시
	개선사항	자체평가 확인 · 점검결과 지적된 개선사항 모니터링 기능
	분석보고서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보고서 출력 기능
특정평가	혁신관리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지표별 실적을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온라인 평가 실시
	정책홍보관리	
	규제개혁	
	법적의무 · 권장사항	
	정보공개	
	고객만족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조회 및 수정 기능
	특정시책	특정시책 대상과제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평가
	분석보고서	특정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기능을 제공하고 보고서 출력 기능

③ 평가업무 포털

평가업무 포털은 사용자관리, 평가업무시스템과 성과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공지사항, 평가제도 및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와의 커뮤니티 기능 등을 지원한다.

④ 유관시스템 연계 기능

성과관리계획상 관리과제, 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와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별 실적 및 근거자료 입력 시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된 온-나라시스템,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동일한 자료의 중복입력을 방지하고 업무효율성과 시스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평가업무시스템의 평가결과 활용을 위해 d-브레인과 e-사람시스템에 평가결과가 환류 될 수 있도록 연계기반을 구축하였다. 연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입력한다.

②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관리과제명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 전송한다.

③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은 관리과제별 단위과제를 매핑하여 온-나라시스템에 전송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온-나라시스템에서 관리과제별 문서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실적 및 근거자료를 축적한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성과관리시스템과 평가업무지원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⑤ 중앙행정기관 담당자는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평가지표별 실적에 해당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⑥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서는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e-사람시스템에 전송하여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서는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d-브레인에 전송하여 평가결과를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8〉 시스템 간 연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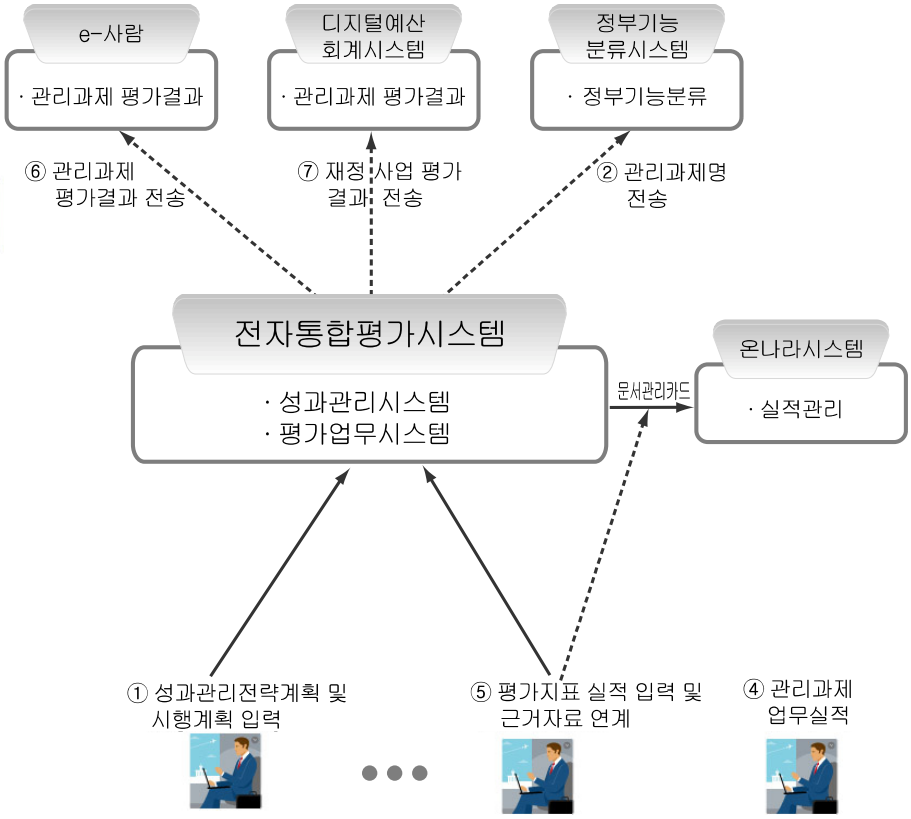

제4절 기대 효과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도입 및 활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평가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제반 평가업무를 온라인화 하고 평가자료를 지식정보로 구축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업무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지표별 실적과 근거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평가업무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둘째,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다. 평가절차별로 평정의 근거자료, 검토의견 등이 DB로 구축되어 관리되는 등 평가처리 전 과정을 기록 · 관리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성과관리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 기존의 부문별로 분산 · 운영되던 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이 성과관리계획을 기반으로 개선되어 주요정책, 재정,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기관의 업무전반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된 형태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를 통해 정부업무 추진의 결과를 부서 및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정부업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다.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온-나라, d-브레인, e-사람 등 유관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계획-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자료작성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시스템 이용이 활성화 되고, 연계시스템이 정착되면 평소에 작성한 업무실적을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고 평가받을 수 있고, 동일한 자료를 중복 작성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등 평가관련 자료작성 및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정책개발과 집행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 효과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대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제 5 장

향후 발전방향

제5장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① 정부업무평가 통합화

가. 각종 평가의 지속적인 통합 · 연계

현재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 및 신설 평가의 통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관심도, 공통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가능성 및 피평가기관 범위 등을 고려하여 통합 정부업무평가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타 평가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평가부문은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총괄 · 조정기능 강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및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평가제도의 기획 ·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각종 평가의 남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평가제도 도입을 억제하여야 한다.

다. 평가 관련기관 간 협조 강화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원 감사간의 목적 및 역할 분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한 주요 국책과제 등의 과제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양자간의 중복 우려를 해소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여 상호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중심 평가 추진

가.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체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 관대화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자체평가위원의 객관적 평가수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정보와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평가 자료를 위원이 직접 작성토록 하는 등 적극적 평가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자체평가위원의 회의참석, 안건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실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이견발생 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자체평가 활성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방법의 조정 추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으로 '06년도부터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자체평가 정책추진 과정별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부문별로 지표별 측정기준 등의 평가방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바 평가총괄관련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문간 평가방법의 균형 및 조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처·청의 평가관련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평가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객관적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 특정평가 부문을 단계적으로 자체평가로 전환

국무총리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법 제20조)하고 있다. 특정평가는 법령상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연도별 평가계획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다. 특정평가 부문 중 자체평가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체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각 부·처·청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6년도 평가경험 등을 토대로 자체평가로 전환할 특정평가 부문 선정기준 · 전환방법 · 일정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전 부 · 처 · 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평가분야, 계량화된 목표설정 및 실적평가가 가능한 분야, 특정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평가분야 등은 가급적 자체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라. 특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특정시책 · 고객만족도 평가 등 특정평가 추진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는 등 민간 연구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시책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 틀, 고객만족도 평가의 고객설정기준 및 민원서비스 범위 등의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과정상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③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가.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 정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07년도 최초로 수립된 동 계획의 운용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계획의 중장기적 성격 및 발전적 모델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 성과관리계획과 각 부 · 처 · 청이 도입 · 운용 중인 BSC · 직무성과계약제 등의 목표,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합 성과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나. 성과관리체계와 평가의 연계 강화

기관별 전략목표 및 임무 등을 포함하는 성과관리계획 및 BSC · 직무성과계약제와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일치시키고,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및 성과관리 등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양자간의 일정을 조정하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우선, 재정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각 부처 세출예산(안)에 연계하여 평가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 예산규모를 일정비율 삭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반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화 부문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예산협의회에 제공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평가등급과는 별도로,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높은 평가지표는 개별 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 및 보수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과제담당자별 성과관리카드 및 국가인재 DB에 축적하여 향후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관련 제도적 인프라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인건비 중 성과급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성과연봉(4급 이상) 또는 성과상여금(5급 이하) 지급 시 정부업무평가결과를 보다 적절히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결과 도출시기와 인사주기·성과급 지급시기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노력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조직관리 자율권을 차등 부여하는 등 인력증원 및 복수직급정원 상한 등 현재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① 합동평가 중심으로 평가부담 완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합동평가 실시가 원칙이다. 불가피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평가시기를 합동평가와 일치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관련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성격의 평가는 가능한 통합 운영하고, 평가대상 시책을 각 부처의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하여 지자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합동평가를 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는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평가지표 개발 노력 강화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계획, 집행, 산출/결과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③ 평가관련 인식전환 및 교육 강화

자체평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및 경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교육기관의 지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사례 및 선진국 평가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컨설팅 기능 수행 등 평가기반 구축을 지원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의 공개 및 성과공시제의 도입

평가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지역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06년도부터 재정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생활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평가제도와 공시제도의 통합·운영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절 공공기관 평가

① 공공기관 평가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공공기관 평가실시기관과 자료 협조 및 의견교환 등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평가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해 평가계획의 자율성·전문성을 존중하되, 전반적 정부업무평가체계와의 연계성, 목표지향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평가 방법 및 지표 조정

공공기관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개별 법률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평가 방법 및 지표 등을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평가관련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통합 평가체계 지원을 위한 향후 과제

① 정부업무평가 정책 및 제도 연구 · 개발

평가관련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평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원 평가연구원과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제도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결과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선진국의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평가관련 각국 공통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제도의 해외 홍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정부업무평가 방법 연구 · 개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06년도부터 평가부문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의 이해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등 각 평가분야의 평가지표를 보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단순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과 척도에 대한 명확한 세부 해석기준을 조기에 마련, 각 기관에 제시하여 평가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평가지표의 개발 · 보완 시 피평가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보다 제고하여야 한다.

추후 특히 특정평가의 경우는 지표에 의한 평가에서 진일보하여 사업이나 과제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둔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방법을 활용하여 적실성 높은 처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05년도부터 각 부·처·청은 개별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제시하는 지수로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 중이지만, 공공부문 성과측정의 한계 상 정책 대표성을 갖춘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대표성, 구체성, 인과성 및 측정가능성이 있는 성과지표 개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된 성과지표를 종합하여 풀(pool)을 운영하고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이력관리 등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업무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나타내는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성과지표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④ 평가관련 인력·예산·조직 등의 지원

자체평가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는 정책, 재정, 조직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해당 기관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체평가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평가관련 민간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 기관의 업무성격 및 범위, 예산, 조직 등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평가 이외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교육과정'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교육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평가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평가관련 인재확보 및 역량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평가담당관의 민간분야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민·관 인력교류 추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 163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07~'09) / 183

3.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207

4.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 255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부록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 ·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 사업 · 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재정성과 · 인사 · 조직 · 정보화 및 혁신관리부문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보좌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원회 및 비상기획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 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나.「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동법 별표 제1호 및 제8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의 평가 2.「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공무원교육훈련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회"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종합평가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6.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7.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11.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평가제도와 평가방법 등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통합평가체계(이하 "전자통합평가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예산·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기본방향 2.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4.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대한 공공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5. 그 밖에 당해 연도의 정책등에 관한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무총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중앙인사 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가. 평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 중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관한 안건을 미리 검토 ·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①법 제10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정부업무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차장 및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무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평가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기관으로부터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주요정책과제부문 : 국무조정실 2. 재정성과부문 : 기획예산처 3. 인사부문 : 중앙인사위원회 4. 조직부문 : 행정자치부 5. 정보화부문 :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
제11조(평가총괄관련기관) 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평가제도의 운영 · 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2.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 점검, 재평가의 실시여부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 · 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국무총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정책 등 2. 그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등 3. 자체평가결과와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하나의 정책등이 여러 부문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주요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주요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 ·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 ·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 ·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특정평가의 절차) ①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통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위하여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특정평가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 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④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이를 특정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특정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위임사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합동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가위임사무등의 평가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7. 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3.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4.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평가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평가 5.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8.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미리 그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제23조(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 ①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 제도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방법과 평가지표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평가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및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예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책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①국무총리는 매년 각종 평가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것을 말한다)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 · 인사 등에의 연계 · 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 · 예산 · 인사 및 보수 체계에 연계 · 반영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 · 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 ·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②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특정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3항·동조제10항·제11조제2항·제14조제2항·제18조제2항·제20조제3항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련 위원회의 위원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그 평가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 업무평가기본계획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07~2009)

부록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07~2009)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의의

가.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책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 결과,

– 종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폐지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하여 '06.4월부터 본격 시행

✱ 각종 정부업무평가의 통합실시, 자체평가 중심체계,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등 명시

▪ 이에 정부업무평가의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을 설정한 중장기 관점의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할 필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06년 말까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법 제8조)

나. 주요 내용

▪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연구 · 개발, 평가관련 인력의 전문성 · 독립성 확보 및 평가관련 예산 · 조직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다. 대상 기간

▪ '07~'09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며, 최소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 보완 실시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및 종류〉

(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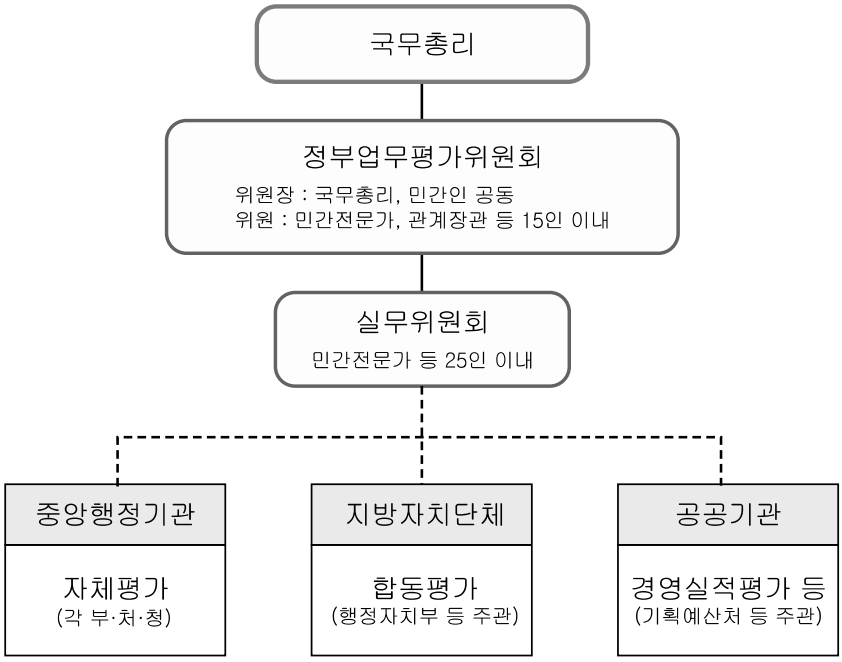

(2) 정부업무평가 종류

① 중앙행정기관 평가

❍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
-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관리대상업무, 특정시책, 고객만족도에 대하여 직접 평가

② 지방자치단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성과 등에 대해 평가하며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 평가 및 지자체 자체평가로 구분

③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② 정부업무평가 목표체계 및 기본방향

가. 정부업무평가 목표체계

비 전	“책임 있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					
목 표	성과관리를 위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효율적 정착				
⇧					
기본방향	정부업무평가 통합화	자체평가 중심 평가 추진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평가관련 기반 지원	
역점추진 과제	○ 각종 평가의 연계·통합 ○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총괄·조정 강화 ○ 평가관련 기관간 협조 강화	○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최소화 ○ 특정평가의 자체평가로의 전환	○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정착 ○ 성과관리와 평가 연계 강화 ○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 평가관련 연구·개발 ○ 전자통합평가체계 구축·운영 및 개선 ○ 평가관련 인력, 예산 등 지원	

나.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1) 정부업무평가 통합화

▪ ’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통합국정평가체계의 원활한 정착 및 지속적인 통합노력 추진

– 더불어 평가부문별 총괄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평가의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부담 경감

(2) 자체평가 중심 평가 추진

▪ 각 기관별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을 토대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부처청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 점검 등을 추진

(3)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시행으로 '07년부터 각 부처청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감
▪ 또한 개인, 부서, 기관 단위의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결과의 예산 · 인사상 반영을 강화하는 등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4) 평가기반 구축 지원

▪ 현행 각종 평가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대상 분야를 실효성 있게 관리
▪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구축 · 운용, 평가관련 인력 ·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

③ 평가유형별 역점 추진과제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 주요내용

◇ 각종 평가의 지속적 통합 및 평가관련 총괄 기능 강화
◇ 기관별 자체평가 내실화 및 특정평가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 정착, 평가와 성과의 연계 등을 통한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1) 정부업무평가 통합화

가) 각종 평가의 지속적인 통합 · 연계

▪ 현재 개별법에 의해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 및 신설 평가의 통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 국민적 관심도, 공통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가능성 및 피평가기관 범위 등을 고려하여 통합국정평가의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로 포함

– 여타 평가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평가부문은 점진적으로 정비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총괄 · 조정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및 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평가제도의 기획 · 조정 기능을 강화

– 각종 평가의 남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무분별한 평가제도 도입을 억제

다) 평가 관련기관 간 협조 강화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총괄관련기관과 특정평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총괄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 · 운영

– 관련 정보 공유 및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등을 강화하여, 평가시행 과정상 혼선을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일관된 평가제도 마련

▪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원 감사간의 목적 및 역할 분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

– 감사원은 주요 국책과제 등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한 과제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양자간의 중복 우려를 해소

– 또한 평가 및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여 상호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자체평가 중심 평가 추진

가)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체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 관대화 현상을 최소화할 필요
- 민간 자체평가위원의 객관적 평가수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평가정보와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평가 자료를 위원이 직접 작성토록 하는 등 적극적 평가활동을 유도
  - 또한 민간자체평가위원의 회의참석, 안건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실비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객관성 제고

  ✱ 각 부 · 처 · 청 자체평가위원회는 2/3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 및 이견발생 시 재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자체평가 활성화 지원

나)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방법의 조정 추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으로 '06년부터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자체평가 정책추진 과정별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 실시
- 그러나 평가부문별로 지표별 측정기준 등의 평가방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바 평가총괄관련기관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문간 평가방법의 균형 및 조화를 기할 필요
  - 이를 통해 각 부 · 처 · 청의 평가관련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평가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객관적 평가결과 도출

다)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의 최소화

- 현재 각 부 · 처 · 청의 형식적 자체평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평가 수행노력'(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노력, 평가관련 학습실적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다만, 이는 통합국정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실시하는 것이므로 자체평가 체계의 내실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항목을 가능한 최소화

– 향후 수행노력 평가의 개별 요소를 자체평가 부문의 평가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각 부·처·청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라) 특정평가 부문을 단계적으로 자체평가로 전환

▪ 국무총리는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등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법 제20조)

▪ 특정평가는 법령상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연도별 평가계획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평가

– 특정평가 부문 중 자체평가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주기적으로 검토, 자체평가로 전환함으로써 각 부·처·청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할 필요

– '06년 평가경험 등을 토대로 자체평가로 전환할 특정평가 부문 선정기준·전환방법·일정 등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전환

✱ 전 부·처·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평가분야, 계량화된 목표설정 및 실적평가가 가능한 분야, 특정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평가분야 등은 가급적 자체평가로 전환

마) 특정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 특정시책·고객만족도 평가 등 특정평가 추진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는 등 민간 연구기관과의 상시적인 협조체제 구축

▪ 또한 특정시책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 틀, 고객만족도 평가의 고객설정기준 및 민원서비스 범위 등의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이를 통해 평가과정상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 도출

(3) 통합적 성과관리 구현

가)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정착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이에 근거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의무를 규정

✱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에 한번 이상 수정·보완

- '07년도 최초로 수립된 동 계획의 운용결과를 토대로 성과관리계획의 중장기적 성격 및 발전적 모델을 모색해 나감

▪ 동 성과관리계획과 각 부·처·청이 도입·운용중인 BSC·직무성과계약제 등의 목표,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일치시켜 나감으로써 통합성과관리 정착 유도

나)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강화

▪ 기관별 전략목표 및 임무 등을 포함하는 성과관리계획 및 BSC·직무성과계약제와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일치시키고,

- 평가계획 수립, 평가실시 및 성과관리 등 일련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양자간의 일정을 조정하여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다)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

① 예산 편성과의 연계

▪ 재정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연계 추진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각 부처 세출예산(안)에 연계하여 평가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년도 예산규모를 일정비율 삭감
- 정보화 부문의 평가결과를 정보화예산협의회*에 제공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활용

✱ 체계적 정보화 예산 편성·심의를 위해 민간인,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예산협의회(의장 : 예산처 예산재정실장)를 설치·운영('06.6)

- 특히, 전체 평가등급과는 별도로,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높은 평가지표는 개별 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연계 강화

✱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높은 평가지표(예시) : 재정지원의 필요성, 중복·유사성 등

② 인사 및 보수와의 연계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과제담당자별 성과관리카드 및 국가인재 DB에 축적하여 향후 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진입, 개방/공모직위 채용, 5급 이하 승진심사, 특별승진 등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및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에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하고 향후 인사관리에 반영

▪ 인건비중 성과급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성과연봉(4급 이상) 또는 성과상여금(5급 이하) 지급 시 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영

▪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인사·보수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결과 도출시기와 인사주기·성과급 지급시기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추진

③ 조직 관리와의 연계

▪ 평가결과에 따른 조직관리 자율권의 차등 부여

- 인력증원 및 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 현재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다년간 조직관리 우수부처로 선정될 경우, 일부 평가지표 적용 면제('평가지표 졸업인증제' 실시)

✱ '06~'07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거쳐, '08년도부터 제도 개선·운용 추진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를 통한 전문적 조직진단 지원

- 평가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 성과향상을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중앙행정기관 평가	정부업무평가 통합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총괄·조정 강화 ○ 평가총괄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개별 평가의 통합 및 정비 ○ 평가총괄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신규 평가의 증설 억제 및 개별 평가 지속 통합
	자체평가 중심 평가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항목 간소화 ○ 특정평가 대상분야 조정방안 마련 ○ 고객만족도 평가의 '고객'기준 등 개선 ○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계 및 평가 결과 환류 강화 방안 마련	○ 부문별 평가 방법의 조정방안 마련 ○ 특정시책 선정·평가기준 등 개선 추진 ○ 특정평가 연구포럼 구성·운영	○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의 자체평가화 ○ 특정평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통합적 성과 관리 구현	○ 성과관리계획과 직무성과계약제의 과제체계 연계 ○ 평가결과 미흡사업 차년도 예산 일정비율 삭감 ○ 성과급 지급 비중 연차적 확대	○ 성과관리계획과 기관 자체 성과관리시스템(BSC 등)의 과제체계 연계 ○ 인사, 성과급 지급시기와 평가결과 도출시기 조정	○ 평가결과 다년도 우수부처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 주요내용

◇ 국정운영의 통합성, 연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 추진

○ 개별평가보다 합동평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관련 교육 강화 등 자체평가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1) 합동평가 중심으로 평가부담 완화

-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합동평가 실시가 원칙
  - 불가피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평가시기를 합동평가와 일치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관련 부담을 최소화
  - 또한, 유사성격의 평가는 가능한 통합 운영하고, 평가대상 시책을 각 부처의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하여 지자체 평가의 효율성 제고
- 장기적으로는 합동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는 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

(2) 평가지표 개발 노력 강화

-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유도
  - 계획, 집행, 산출/결과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정책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 또한, 인구규모 및 재정여건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 강화

(3) 평가관련 인식전환 및 교육강화

- 자체평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및 경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
  - 평가교육기관의 지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사례 및 선진국 평가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평가 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컨설팅 기능 수행 등 평가기반 구축을 지원

(4)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의 수정·보완과 병행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율적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토록 하여 성과관리체계 정착 유도

(5) 평가결과의 공개 및 성과공시제의 도입

▪ 평가과정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지역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통제를 확보하기 위해 '06년부터 재정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바, 주민생활 관련 지표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시도 적극 추진

– 또한, 현행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평가제도와 공시제도의 통합·운영 검토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 정책추진 과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 평가업무 담당자 교육 강화 ○ 평가결과의 활용 강화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의 활성화	○ 개별평가 실시요건 강화 및 합동평가 비중 확대 ○ 정책추진 과정별 평가지표를 적용한 평가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확산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합동평가의 지자체자체평가로의 전환 방안 마련

다. 공공기관 평가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기관 운영 개선 및 통합적 성과관리체제의 구축 지향

(1) 공공기관 평가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공공기관 평가실시기관과 자료 협조 및 의견 교환 등 상시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운영
-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평가계획을 사전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 제시
  - 당해 평가계획의 자율성·전문성을 존중하되, 전반적 정부업무평가체계와의 연계성, 목표지향 등의 관점에서 검토

(2) 공공기관 평가 방법 및 지표 조정

- 공공기관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
  - 다만, 개별 법률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 평가 방법 및 지표 등을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평가관련 부담을 완화할 필요

(3) 평가결과 활용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 평가계획 수립 시 통합국정평가제도의 평가 틀에 기초하여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체제 구축 유도
- 평가결과를 경영진 성과급 지급 등 인사 및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성과 제고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등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임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지급 및 유공자 표창 등 실시
  -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불이익 부과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공공기관 평가	○ 정평위와 평가실시기관의 협조 강화 ○ 평가결과의 경영진 인사·예산 등에의 활용 방안 마련	○ 개별 공공기관 평가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 평가결과의 활용 등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체계 확산 유도

④ 평가기반 지원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

가. 정부업무평가 관련 연구 · 개발

✤ 주요내용

◇ 평가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평가제도 확립을 위한 각종 평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 평가지표의 타당성 제고, 성과지표의 합리적 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정부업무평가 정책 및 제도 연구 · 개발

가) 평가관련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 평가관련 연구기관 및 관련 학회 등의 협력을 강화하여 평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강화

– 학술대회,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평가제도 관련 연구 수요 충족 및 실제(practice)와 연구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또한 감사원 평가연구원*과 국무조정실 등 평가총괄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제도의 개선 · 발전 도모

– 평가연구원은 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컨설팅, 평가인력 교육 · 새로운 평가기법 전파 등 지원기능 수행

✱ '05년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평가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 · 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의 구축 · 지원을 위해 감사원 평가연구원을 설립

✤ **연구필요사항**

◇ 평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framework) 연구
- ○ 지속적인 통합성 및 자율성을 지향하고 평가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가방식, 평가지표 개발 등
- ○ 자체평가의 관대화 경향 방지, 자체평가 활성화 방안 및 자체평가결과 확인 · 점검 방식, 재평가의 구체적 요건 등

◇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방안
- ○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성과관리 체계와 자체평가 체계의 연계(성과관리시행계획과 자체평가계획의 일원화 문제 등) 방안 및 평가결과의 효과적 활용방안 등

◇ 평가 및 성과관리 교육 · 훈련 및 선진제도
- ○ 평가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 ○ 선진 주요 국가의 우수 평가사례 수집 및 백서 발간 등

◇ 성과지표 개발
- ○ 계량 · 결과 지표 위주의 성과지표 및 기관 대표지표 개발방안 및 선진국의 성과지표 사례 등

나) 평가제도 관련 국제협력 강화

- ▪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결과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선진국의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각국 공통의 평가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공동 연구 등 추진
- ▪ 또한, 평가제도 도입초기의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전파 실시

(2) 정부업무평가 방법 연구 · 개발

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① 평가지표의 단순화 · 핵심화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06년부터 평가부문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의 이해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등 각 평가분야의 평가지표를 보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단순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

- 또한 평가기준과 척도에 대한 명확한 세부 해석기준을 조기에 마련, 각 기관에 제시하여 평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 또한, 평가지표의 개발·보완 시 피평가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가지표의 적합성 제고

② 다양한 평가방법 개발

▪ 획일적인 기준적용보다 평가목적(결과·과정평가), 평가대상(기관별·정책별 특성) 등에 맞는 평가방법의 개발 도모

- 현재 정책추진 결과인 성과지표와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체계의 정착과 더불어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점차 강화할 필요
- 사전·사후 평가, 결과·과정평가 및 양적·질적 방법 등을 접목한 다양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참여나 면접 등에 의한 평가방법도 도입

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① 각 기관별 성과지표 개발노력 강화

▪ '05년부터 각 부·처·청은 개별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제시하는 지수로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 중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대표성, 구체성, 인과성 및 측정가능성이 있는 성과지표 개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특히,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해 정량적·계량적 지표 및 정책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결과지표 위주로 개발·선정

▪ 개발된 성과지표들에 대한 풀(pool)제 운영 및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이력관리 등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

- 또한, 그 기관의 업무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나타내는 기관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

② 성과지표 개발노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성과지표의 개발·관리가 성과관리의 핵심요소임을 감안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기관별 성과지표 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

– 각 부·처·청이 마련한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 강화 및 정책여건변화로 인한 지표 변경·보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성과지표의 적실성 제고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정부업무평가 정책 및 제도 연구·개발	○ 민간 연구기관 및 선진국과의 평가관련 협력 강화	○ 한국의 평가제도에 대한 해외 소개·전파 강화	○ 각종 평가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제도 확립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 평가지표 적용 결과 문제점 보완	○ 핵심적 지표 위주로 단순화	○ 평가대상, 목적 등에 따른 평가방식 다양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 성과지표의 개발 및 지표관리 강화 ○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컨설팅 등 강화	○ 기관 대표지표 활용 방안 마련	○ 성과지표별 이력관리 및 성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정착

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선

✤ 주요내용

◇ 각종 평가주체의 평가업무 지원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완료

○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지원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추진

(1) 평가업무지원시스템 및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보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electronic-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의 평가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정부업무평가 수행 지원

– 평가처리 전 과정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06년 이후 정부업무평가 적용 결과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변화하는 평가제도·지표 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통해 원활한 통합평가 지원

▪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각 부·처·청의 성과관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성과관리 확산 유도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ISP 수립

▪ 공공기관 평가계획 및 결과를 기관장의 인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기관 평가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수립하고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소관 부처별, 부문별, 사업별, 연도별 등의 DB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ISP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시스템 구축 추진

(3)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e-IPSES와 정부업무관리시스템, e-사람(구 PPSS, 중앙인사위원회)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획예산처) 등 여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각종 성과관리 업무의 통합적 수행 지원

▪ 연계시스템의 확대 및 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평가결과 활용 강화 지원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업무지원시스템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보완	○ 평가업무지원시스템 적용결과 문제점 보완	○ 지식기반포탈의 확장 구축	○ 지속적인 편의성 제고 및 DB 구축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간의 연계 추진	○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문제점 지속 보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ISP 구축	–	○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원을 위한 ISP 수립 및 구축	○ 공공기관 평가지원을 위한 ISP 수립 및 구축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 업무관리시스템, e-사람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 연계 범위 지속 확대	○ 연계시스템 문제점 지속 보완

다. 평가관련 인력 · 예산 · 조직 등의 지원

✤ 주요내용

◇ 평가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요소인 인력, 예산 및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검토 ·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강화, 평가관련 예산항목 신설, 평가관련 부서의 위상 제고 등 추진

(1) 평가관련 인력 지원

가) 자체평가위원회의 전문성 · 독립성 확보

- 각 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는 정책, 재정, 조직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또한, 해당 기관과 특수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체평가위원의 독립성 확보
- 국무조정실은 평가관련 민간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을 지원

나) 평가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 각 기관의 업무성격 및 범위, 예산, 조직 등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전담인력 확보하도록 하고, 평가 이외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 교육훈련기관의 '정부업무평가 관련 교육과정'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평가관련 교육 강화
  - 각 기관의 평가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 기획예산처 · 행정자치부 등 평가총괄 관련기관 담당관이 동 교육과정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각종 평가 활동의 원활한 정착 도모
  -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 평가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 · 지원하여 공직사회의 평가에 대한 공감대와 동참을 유도
- 한편 평가관련 인재확보 및 역량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거나, 평가담당관의 민간분야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등 활발한 민 · 관 인력교류 추진

(2) 평가관련 예산 · 조직 지원

가) 평가관련 예산항목 신설

▪ 현재 각 기관이 평가업무 관련 예산을 기본운영경비 등을 통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자체평가 업무범위 확대, 자체평가위원 증원 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평가수행이 곤란

– 추후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각 기관 예산편성 시 평가 수행 관련 별도의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평가관련 예산 편성의 체계성 확보

– 동 예산 항목 하에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용역 사례금 등을 계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책정 도모

나) 평가담당 부서의 위상 확보

▪ 각 기관별 평가 담당 부서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인력으로 충원

– 또한 평가담당 부서의 권한 및 위상을 내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평가업무 수행 담보

〈'07~'09년간 연도별 계획〉

부 문	2007년	2008년	2009년
평가관련 인력 지원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가이드라인 제시 ○ 민간전문가 인력 풀(pool) 구성 · 운영 및 제공 ○ 각 기관의 평가전담인력 확보	○ 민간전문가 인력 풀 지속 보완 ○ 평가관련 교육 과정 확대 추진	○ 평가관련 강사 양성 및 교육매뉴얼 보완 등 교육과정 심화
평가관련 예산 · 조직 지원	○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항목 신설 검토 및 협의 ○ 평가관련 부서의 위상 및 역할 강화방안 검토 및 협의	○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예산항목 신설 ○ 평가관련 부서의 위상 및 역할 강화	○ 평가관련 예산 및 조직 지원 강화방안 연구

⑤ 향후 조치계획

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 동 기본계획을 기초로 '07년 3월 말까지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 각 부·처·청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07년 자체평가계획』 수립하여 평가 추진

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수요, 평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실시
  - 향후 '07년도 정부업무평가 운용결과를 토대로 '07년 말경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부록3.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①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

가. 통합평가의 효율적 실시

▪ 평가 관련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평가의 효율성 제고

– 특정평가 대상부문 중 자체평가 분야로 통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지속적인 전환 추진

나. 자체평가체계의 정착 및 활성화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체평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 적용 및 성과지표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제고

다.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강화

▪ '07년부터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

▪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조직 · 예산 · 인사 · 성과급 등에 활용하고, 평가 총괄관련기관은 이를 지속 관리

라. 평가지표의 개선 및 온라인 평가 실시

▪ 각종 평가지표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고, 유사 · 중복적인 지표를 조정하여 평가 부담 경감

▪ 각종 평가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 온라인으로 실시

2 06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분야 조정

- 평가대상 · 시기 · 평가지표의 성격 등이 상이한 '대통령지시사항' 평가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 종전 특정평가 부문 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 부문의 특성지표로 통합
  - 또한 법적 의무 · 권장사항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를 조직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사 부문의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항목을 법적 의무 · 권장사항의 별도 항목으로 전환

나. 평가지표 핵심화 · 단순화

- 평가분야별 유사 · 중복지표의 통합,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지표를 삭제

  ✱ 자체평가 분야 : 종전 93개 ⇒ 74개로 통폐합(19개 감소)
  특정평가 분야 : 종전 141개 ⇒ 81개로 통폐합(60개 감소)

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관련자료 등을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 실시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자체평가 평가부문별 평가시기를 단일화(자체평가 1~3월, 확인 · 점검 4~6월 실시)
- 종전에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였으나, 연 1회 평가로 조정하고 평가지표도 간소화

③ 평가 실시

가.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평가개요

가) 평가대상기관 : 48개 중앙행정기관

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분

-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점검
- 국무총리는 관리대상업무, 고객만족도, 특정시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

〈중앙행정기관 평가 개요〉

구 분			평가 시행기관	협조 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성과			기획예산처
	인사			중앙인사위원회
	조직			행정자치부
	정보화			정보통신부 · 행정자치부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혁신관리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법적 의무 · 권장사항		노동부, 복지부 등
		정보공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국무조정실

✱ 종전 관리대상업무 중 법제업무는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특성지표로, 위기관리는 조직부문의 특성지표로 전환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2) 자체평가

가) 자체평가대상

① 주요정책과제

❑ 평가대상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과제로 선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중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단순 지원업무는 평가대상과제에서 제외가능하며, 과제수행의 난이도 · 중요성 · 자원투입량 등을 고려하거나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 등을 활용하여 과제별로 가중치 설정

❑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안
공통지표	계획	1.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 · 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 ·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또는 장 · 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 ·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여부
			성과지표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집행	2.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행정여건 ·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 · 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관련기관 · 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산출/결과	3. 목표의 달성도	목표의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와 정책영향이 나타났는지 여부
	활용	4. 평가결과 활용도	평가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한 정도	○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실적
특성지표	–	5. 법제업무	–	–

✱ 특성지표(법제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4월 중 통보하고, 평가지표별 배점 및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 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② 재정성과

□ 평가분야 및 배점

▪ 재정사업(일반재정사업, R&D사업) 성과 및 재원배분, 재정집행 등 재정운용

평가 분야		배 점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 R&D사업	70 ✱ 일반재정사업과 R&D사업의 가중치는 각각의 예산규모를 적용
재정운용	- 재원배분 합리성, 재정집행 효율성	30
계		100

□ 일반재정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성과 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 '05, '06년 기 평가사업은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평가 실시

✱ 단, '07년 평가대상과제의 범위를 현행유지(1/3) 또는 전체평가대상과제로 할지 여부는 관계 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6월경 최종 결정·통보할 예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재정성과 부문 관리과제

– 예산·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ⅰ) 인건비·기본사업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ⅱ)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비(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ⅲ)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및 기타 세출비목으로만 구성된 사업

– 복권기금사업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분류하여 평가('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 시설 · 장비 구매	서비스 · 조사 · 행사	출연 · 출자	융자	민간 보조	지자체 보조
계획	1.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다른 사업과 중복 · 유사하지 않게 사업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여부	3.75	3.75	5.0	3.75	5.0	3.75	3.75
		소 계	11.25	11.25	15.0	11.25	15.0	11.25	11.25
	2. 성과 계획의 합리성	성과목표/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7.5	7.5	7.5	7.5	7.5	7.5	7.5
		소 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집행	3.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4.0	5.0	5.0	5.0	3.33	4.0	4.0
		소 계	16.0	20.0	20.0	20.0	13.33	16.0	16.0
산출/ 결과, 활용	4. 성과 목표 달성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30.0	30.0	30.0	30.0	30.0	30.0	30.0
		사업고객이나 이해관계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 방식의 보완 · 변경 등에 활용하였는지 여부	5.0	5.0	5.0	5.0	5.0	5.0	5.0
		소 계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유형별 배점						
		SOC	대형시설·장비 구매	서비스·조사·행사	출연·출자	융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사업유형별 지표〉								
①SOC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집행)	4.0						
②대형시설·장비 구매사업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계획)		3.75					
③서비스·조사·행사 등 기타 직접수행 사업	✱ 유형별 질문 없음							
④출연·출자 사업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지 여부(계획)				3.75			
⑤융자 사업	대출조건의 설정은 합리적인지 여부(집행)					3.33		
	자금회수계비 대비 자금회수율은 양호한지 여부(집행)					3.33		
⑥민간 보조 사업	다년간 지원된 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충실한지 여부(집행)						4.0	
⑦지자체 보조 사업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하였는지 여부(계획)							3.75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집행)							4.0
		7.75	3.75	–	3.75	6.67	7.75	7.75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 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 R&D사업

❍ 평가대상

– '07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R&D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대상 R&D사업을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 R&D 특정평가 대상사업은 국과위에서 별도 통보하며, 그 결과는 당해 부처의 R&D 부문 평가에 반영('06.8.11, 제4차 정평위 의결)

✱ 장기·대규모 사업, 다수부처 관련사업, 기타 국과위의 직접 평가 필요사업 등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R&D부문 관리과제

•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사업과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국과위 비 심의대상 사업은 제외

❍ 평가방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사업분류(28개 분야)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유형을 분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계획, 집행, 결과단계의 평가지표를 설정

– 각 부처는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평가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인·점검

✱ R&D사업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별도 지침에 따라 추진

□ 재정운용

❍ 평가대상

– Top-down 예산편성제도 시행 등에 따라 개별사업의 성과 뿐 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 예산절감 등 각 부처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항목 및 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1. 재원배분 합리성(15)	세출구조조정 실적	5
	지출한도 준수 여부	5
	재정운용효율화 노력	5
2. 재정집행 효율성(15)	재정집행실적	8
	예산낭비사례 대응실적	5
	경상경비 절감 노력	2
계		30

✱ 세부 측정기준 등은 6월 경 자체평가 매뉴얼을 마련하여 통보할 예정

❑ 인 사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인력관리, 인사제도 개선 등 인사관리 전반

– 인력관리계획,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성과관리제도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인사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 평가항목 및 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공 통 지 표 (90)	계 획(10)	1. 전략적 인력관리 계획 수립 (10)	인력관리계획 유지 · 관리의 적절성	10
	집 행 (12)	2. 인사관리 인프라 강화 (12)	인사담당인력의 전문성 정도	4
			인사관리 정보화 정도	4
			능력개발 예산투자의 적극성	4
	산출/결과 (60)	3. 인적자원의 역량과 다양성 확보 (30)	능력개발 활동의 적극성	9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7
			균형인사 달성도	10
			인사교류제도 운영의 적극성	4
		4.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30)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12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적정성	6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8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4
	활 용(8)	5. 평가결과의 활용(8)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8
특성지표 (10)	–	6.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10)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
계				100

□ 조 직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관리, 기능인력 재설계 등 조직관리 전반

– 조직관리계획, 조직관리 업무의 적절성, 조직관리기반 구축 등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항목(공통지표)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조직부문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특성지표) 등

❍ 평가항목 및 지표

구 분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공통 지표	계획	1. 조직관리계획	자체조직관리계획의 충실도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적절성
	집행	2. 조직관리 체계 효율화	행정권한의 위임 · 위탁
			정부위원회 관리
		3. 조직관리 기반구축	조직관리정보시스템 활용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적절성
	산출/결과	4. 기능인력 재설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기능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5. 조직성과 향상	조직의 생산성 · 서비스 향상 정도
	활용	6. 조직관리 평가결과 활용	'06년도 평가결과 반영실적
특성 지표	–	7.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이행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8. 책임운영기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도
		9. 위기관리	–

✱ 위기관리 지표의 구체적 내용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 중 통보할 예정

□ 정보화

❍ 평가분야 및 배점

평 가 분 야	배 점	적 용 대 상
정보화사업 (공통지표)	60	개별 정보화사업
정보화수준 (특성지표)	40	기관 전체
계	100	

❍ 평가대상

▪ 정보화사업

–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단순 유지·보수 등 평가 실익이 없는 다음 사업은 제외

•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 당해연도 사업비가 10억 미만인 사업 중 아래와 같이 간접비 성격을 갖는 사업

ⅰ) 소속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사무관리용 S/W 보급, 교체

ⅱ) 시스템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ⅲ)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ⅳ) 직원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 정보화수준 :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 적용·운영수준 및 정보화 효과

❍ 평가항목 및 지표

구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60)	계획 (20)	1.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간 연계성 · 중복성	3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집행 (10)	2.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10)	계획 준수성	5
			위험 · 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산출/결과 (25)	3. 목표달성도(25)	성과목표의 달성도	25
	활용 (5)	4. 평가결과의 활용(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특성지표 (40)	–	6. 정보화 기반조성 (10)	CIO · CEO의 정보화 추진의지	4
			정보화 조직 · 인력 역량 수준	6
		7. 정보화 적용 · 운영 수준 (20)	정보보호 수준	6
			정보자원 및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 활용 수준	5
			홈페이지 운영 수준	3
			S/W 공공구매 혁신 수준	2
			지식정보관리 수준	4
		8. 정보화 효과(10)	정보화를 통한 업무 · 서비스 개선정도	10
계				100

* '06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6월 경 보완 · 통보 예정

≪**자체평가 수행노력**≫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자체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수행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관련 학습실적,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등 자체평가의 정착 및 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지표 위주로 평가

☐ 평가방법

▪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수행노력 실적을 토대로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 실시

–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여 부처 평가부담을 경감

☐ 평가항목 및 지표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1. 평가역량 제고노력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정도
	평가관련 학습 실적
	성과지표 개선 노력 정도
2. 평가수행의 적절성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 정도
3. 평가결과의 활용노력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노력 정도

✱ 평가지표별 배점은 4월 중 통보 예정

나) 자체평가방법

① 부처 자체평가

□ 자체평가계획 수립

▪ 각 부처는 '07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07년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계획은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양식 1)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계획 심의,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자체평가,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30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및 평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2/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

✱ 위원은 3개 부처 이상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결원보충 및 재위촉 시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타 부처 공무원 및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

– 자체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평가관련 회의는 회의결과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위원에게 통보하거나 공개

□ 자체평가 실시

▪ 각 부처는 '0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

▪ 각 부처는 '07년도 연말 기준의 업무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실시

② 확인 · 점검 및 재평가

□ 확인 · 점검

▪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 · 점검 실시

– 자체평가결과에 첨부된 증빙자료의 신뢰성 여부 확인 등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를 점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 점검에 관한 사항을 최종 심의 · 의결

□ 재평가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 점검 후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재평가 실시

✱ 확인 · 점검 및 재평가의 대상, 방법, 점수 처리방안 등은 추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 예정

③ 자체평가일정

□ 자체평가계획 수립 등 : '07. 4월

❍ 각 부처는 4월 중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필요시 자체평가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도 함께 등록(양식 2)

□ 자체평가 매뉴얼 통보 : '07. 6월

□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 각 부처 스스로 반기별 실적을 점검하고 자체평가에 반영

– 주요정책과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추진실적(양식 3) 및 반기별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4)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

✱ 관련 근거 : "국정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말까지 평가"
(대통령 지시사항 '05.1.4)

✱ 다만, 1/4분기 실적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7.10까지 등록

– '06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상황을 함께 등록(양식 5)

□ 자체평가 실시 : '08. 1~3월

❍ 각 부처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양식 2)

□ 자체평가결과 확인 · 점검 및 재평가 : '08. 4~6월

③ 특정평가

가. 특정평가대상

(1) 관리대상업무

가) 혁신관리

□ 평가대상

▪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을 위한 혁신문화, 혁신활동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비롯한 성과창출 등을 중점 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측정방법	배점	비 고
계획 (15)	1. 혁신 리더십	○ 혁신전략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 혁신의 실천 · 지원 ○ 혁신의 환류	서면심사, 기관장 면담	15	정성
집행 (20)	2. 혁신 역량	○ 혁신추진조직의 역량 ○ 학습지원 및 실적 ○ 온-나라 BPS 활성화 및 시스템 연계 · 활용 ○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서면심사, 현장실사	20	정성
산출/ 결과 (65)	3. 혁신 문화	○ 혁신의 일상화 ○ 혁신가치의 확산 ○ 개방성과 창조성 ○ 도전성과 실패관리	서면심사, 현장실사	15	정성
	4. 혁신 성과	○ 부처혁신 과제의 적합도와 난이도 ○ 부처혁신과제의 목표달성도 ○ 혁신활동의 생산성 ○ 국민의 혁신체감도 ○ 기관에 대한 신뢰도 ✱ 중앙부처 BP 대회 및 브랜드경진대회 수상실적(가점 등 추후결정)	서면심사, 현장실사, 설문조사	50	정성 (정량 : 설문)

□ 평가방법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평가항목별로 다양한 측정방법(면담, 실사, 설문) 활용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관리평가단'에서 실시

❍ 평가등급 : 지표별 5등급(S, A, B, C, D) 정성적 절대평가

나) 정책홍보관리

□ 평가대상

❍ 정책과 홍보의 연계체계, 매체활용 홍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참여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정책홍보와 관련이 적은 국조실, 청렴위, 비기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배점	비 고
계획 (16)	1. 홍보 추진 체계의 적절성 (16)	○ 홍보협의체 운영(2) ○ 홍보교육 참여도(4)	협의체, 교육실적 서면심사	6	정량
		○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 참여도(4) ○ 주요정책발표 사전기획 적절성(3) ○ 정책광고 사전협의 참여도(3)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정성평가	10	정량/정성
집행 (53)	2. 정책기사 수용 및 대응 정도 (20)	○ 수용 기사 이행정도(6) ○ 수용 기사 모범사례(4) ○ 대응 기사 적정성(6) ○ 대응 기사 모범사례(4)	e-PR 등재 실적을 기초로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20	정량/정성
	3. 매체활용 홍보 (33)	○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관리(5) ○ 국정브리핑 뉴스사이트 운영(3) ○ 국정브리핑 블로그 관리(4)	사이트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2	정량/정성
		○ 장·차관 대언론 홍보활동(6) ○ 실·국장 대언론 홍보활동(4)	홍보활동 실적에 대한 서면심사	10	정량
		○ KTV 정책책임자 출연실적(2) ○ KTV 공동제작 실적(3)	출연실적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5	정량/정성
		○ 홈페이지 활용 정책홍보(2) ○ 온라인 활용 홍보사례(4)	홈페이지 홍보실적 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6	정량/정성
산출/결과 (31)	4. 정책고객 서비스(13)	○ 정책고객 관리(4) ○ 정책고객 서비스 모범사례(4) ○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5)	서면심사, 평가단 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13	정량/정성
	5. 정책홍보 성과 (18)	○ 공기업 협력홍보 성과(5) ○ 중점홍보과제 기획홍보(6) ○ 상·하반기 정책홍보사례(7)	서면심사 및 평가단 정성평가	18	정량/정성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관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평가자료 제출 부담 완화

❍ 평가항목별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외부전문가 포함)

다) 법적 의무·권장사항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평가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과제 이행실태 중점 평가

✱ 청렴위, 검찰청, 비기위 등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및 집행 (20)	1. 노력도 (20)	○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포함) 인원·인사 관리 규정 제정 실적	· 제정 여부	20	정량
산출/결과 (80)	2. 이행도 (80)	○ 퇴직금·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 전체대상인원 대비 '08년도 예산 별도편성인원	20	정량
		○ '07년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적	· 전환계획인원 대비 전환인원	30	정량
		○ 저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 '08년도 예산 편성 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및 예산집행 시점까지 적정임금 인상율 반영 시 : 30점 · '08년도 예산 편성 시 시중 노임단가 인상율 반영 시 : 15점 · 미조치 시 : 0점	30	정량

□ 평가방법

❍ 각 부처에서 제출한 관련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등 다양한 측정방법 활용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함

②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우선구매품목 구매금액 등에 대해 중점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구입총액)×100×0.1	10	정량
산출/결과 (90 +3)	2. 이행도 (90)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비율 충족 품목 수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품목수) ×100×0.6	60	정량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 (우선구매대상 품목 중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입총액) ×100×0.3	30	정량
	3. 인쇄물 구매 가점 (+3)	○「서적 및 잡종 인쇄물」 구매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비율 대비 실적 - 전체 평가기관 평균 구매금액 대비 실적	· (전 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전 부처 인쇄물 구매총액)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해당기관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 (전 부처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총액 / 총 평가기관수) < 해당기관 장애인생산 인쇄물 구매액 → 가점부여	+1.5 +1.5	정량

□ 평가방법

❍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화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 '06. 7. 1~'07. 6. 30

③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 평가대상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07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실태를 중점 평가하되

– 구매 체계 정비 및 관련 교육 추진 등 의무구매를 위한 기관 의지와 노력 여부에 대해서도 지표에 반영 ·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 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배 점	비 고
계획 및 집행(10)	1. 노력도 (10)	○ 구매추진 체계의 실효성	· 당해연도 제도 개선 실적, 교육실적 등	10	정성
산출/결과 (90)	2. 이행도 (80)	○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 (친환경상품 구매액 / 대상품목 전체 구매총액) ×100 ※ '07년도 대상품목은 120개 (매년 대상품목 변동)	① 90% 이상 : 80 ② 80% 이상 : 70 ③ 70% 이상 : 60 ④ 60% 이상 : 50 ⑤ 50% 이상 : 40 ⑥ 40% 이상 : 30 ⑦ 30% 이상 : 20 ⑧ 실적 있는 경우 : 10	정량
	3. 향상도 (10)	○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정도	· 일반사무용품 · 사무기기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3)	① 10% 이상 : 3 ② 5% 이상 : 2 ③ 실적 있는 경우 : 1	정량
			· 일반사무용품 · 사무기기 외 기타상품 당해년도 구매비율 – 전년도 구매비율 (7)	① 10% 이상 : 7 ② 7% 이상 : 5 ③ 5% 이상 : 4 ④ 3% 이상 : 3 ⑤ 실적 있는 경우 : 1	

□ 평가방법

❍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 등 실시

❍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정량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성평가 병행 실시

④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 평가대상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 혁신형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달성도 및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10)	1. 노력도 (10)	○ 구매확대를 위한 노력도	· 전년대비 구매율 향상도(6) ※전년도 우수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점수를 받기 위한 향상도를 전년도 중기제품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감소 시는 0점) ·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 (4)	· 전년도 구매비율이 ① 75% 이상 기관 – 1%이상 향상 : 6 – 1%미만 향상 : 3 ② 50%~75% 기관 – 3%이상 향상 : 6 – 3%미만 향상 : 3 ③ 50% 미만 기관 – 5%이상 향상 : 6 – 5%미만 향상 : 3 · 건당 1점 (최대 4점)	정량
산출/결과 (90)	2. 이행도 (90)	○ 중기제품 구매비중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100	·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 중기제품 구매달성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100	·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 기술개발 제품 구매달성도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액)×100	· 90% 이상(30)~30% 미만(5) 8단계 배점	정량

□ 평가방법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입력한 기관별 통계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필요시 근거자료 조사 병행

✱ 계획 및 집행단계에 대한 평가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고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정성평가 병행실시

❍ 평가대상기간 : '06. 7. 1~'07. 6. 30

⑤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인사평가에서 법적 의무 · 권장사항으로 전환)

□ 평가대상

❍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08년까지 채용률 5%를 목표로 하여 수립 ·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률 제고 종합대책"과 관련,

– 동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산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및 집행 (20)	1. 노력도 (20)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추천의뢰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추천의뢰 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100% 이상 : 20 ② 50% 이상 : 15 ③ 실적이 있는 경우 : 10	정량
산출/ 결과 (80)	2. 향상도 (30)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채용 비율	(당해연도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채용인원/ 당해연도 기능직 공무원 채용인원)×100	① 90% 이상 : 30 ② 70% 이상 : 25 ③ 50% 이상 : 20 ④ 30% 이상 : 15 ⑤ 실적이 있는 경우 : 10	정량
	3. 이행도 (50)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누적 채용 비율	(국가유공자 기능직공무원 누적 채용인원/기능직 정원)×100	① 10% 이상 : 50 ② 7% 이상 : 40 ③ 5% 이상 : 30 ④ 3% 이상 : 20 ⑥ 실적이 있는 경우 : 10	정량

□ 평가방법

❍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지점검 실시

✱ 공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결과의 주관 · 소관부처 평가 반영

✤ 대통령 지시사항

◇ 각 부처는 소관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권장정책을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점검시스템을 일반 평가 외로 따로 평가할 것('06.3.28 국무회의)

□ 평가대상

❍ 인사(3개) :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물품구매(3개) : 장애인생산품, 친환경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 '07년 상반기 중 공기업의 법적 의무 · 권장사항 이행도 평가

– 평가 대상기간 : '06. 1~'06. 12 기간동안의 이행실적 기준

✱ 구체적인 평가대상 공기업, 평가시기, 평가지표는 추후 확정 · 통보

□ 시책 주관부처 및 공기업 소관부처 책임성 확보 유도방안

❍ 해당시책 주관부처의 책임성 확보

– 법적 의무 · 권장사항별 정부 전체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해당 시책의 주관부처의 평가결과에 반영(가감점 부여)

❍ 해당 공기업 소관부처의 책임성 확보

– 공기업의 법적 의무 · 권장사항 이행도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에 대한 법적 의무 · 권장사항 평가결과에 반영(가감점 부여)

✱ 구체적인 가감점 부여방법은 6월 경 통보 예정

라) 정보공개

□ 평가대상

❍ 사전적·자발적 정보공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체제의 적절성

–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등 '06년도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

✱ 청렴위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지표

단 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배점	비 고
계 획 (30)	1. 정보공개 추진 기반의 적실성 (30)	○ 정보공개운영계획의 충실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정성
		○ 기관장의 정보공개 추진의지	· 전담인력 배치, 인센티브 제공 등 · 정보공개 개선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실적 유무	5	정량
		○ 정보공개 기준의 적정성	· 정보공개기준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20	정성/정량
집 행 (40)	2. 업무처리의 적절성(18)	○ 업무처리 절차의 적절성	· 공개여부 결정통지 소요기간 등	10	정량
		○ 법규상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	· 비공개(부분공개) 사유의 적절성 · 불복신청의 인용비율 등	8	정성/정량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22)	○ 사전정보공표 실적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사업의 공표실적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표실적 등	14	정성/정량
		○ 정보공개심의회 활용실적	· 공개결정 곤란한 경우의 심의실적 등	8	정량
산 출/결 과 (30)	4. 국민체감 만족도(20)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사전안내 등	20	만족도 조사
	5. 정보공개 제도개선(10)	○ 자체정보공개제도 개선실적	·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의 개선여부 등	10	정량

□ 평가방법

❍ 현장확인 평가 : 계량항목에 대해 운영 실태 확인 후 평가

❍ 비계량 평가 :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

❍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 평가부문 조정

❍ 정보공개 평가는 '07년에 한해 특정평가로 유지하되, '08년부터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전환

마) 규제개혁

□ 평가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에 대해 중점평가

– 아울러,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도모

*** 원칙적으로 등록규제가 있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등록규제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은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제외기관은 향후 세부지침 수립 시 확정 통보 예정(6월 경)

□ 평가항목 및 지표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비고
계획 (15)	1. 추진기반의 적실성(15)	○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	· (정비계획 규제수 / 등록 규제수)×100 ·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정비계획 규제수)×100	10	정량
		○ 규제개혁 추진역량	· 규제개혁 추진노력 관련 세부항목 합산점수 * 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의 추진의지,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실적, 교육활동 등	5	정성
집행 (25)	2. 시행의 적정성(25)	○ 신설·강화 규제의 적절성	· (개선권고 규제수 / 규개위심사 규제수)×100 · (당해년도 신설·강화 규제수 / 과거 3년 평균 신설·강화 규제수)×100	15	정량
		○ 규제영향 분석의 충실성	· 규제영향 분석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부항목 합산점수	10	정성
산출/ 결과 (60)	3. 규제개혁 성과(40)	○ 기존규제 정비 실적	· (정비 규제수 / 정비계획 규제수)×100 · (실제 정비된 폐지·법률·중요 규제수 / 계획상 폐지·법률·중요 규제수)×100 · (이행 과제수/이행대상 과제수)×100	35	정량
		○ 규제개혁 우수성과 사례	· 특정사례의 기대효과(비용감축 효과, 경제 활성화 등) 및 통과기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문가집단이 평가	5	정성
	4. 규제개혁 만족도(20)	○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 일반국민 및 전문가 만족도조사 결과 환산점수	20	정성

□ 평가방법

❍ 원칙적으로 각 부처가 작성·제출한 서면자료를 토대로 평가(필요 시 현장 점검 실시)

❍ 평가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적절히 활용

(2) 특정시책

가) 평가대상

▪ 특정시책 평가는 특정과제 평가와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로 구분

– 특정과제 평가는 다수 부처 관련 시책, 현안사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시책 등을 선정,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부처의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평가

– 갈등해결 우수사례 평가는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상의 제반 갈등을 해결한 과제를 발굴하여 평가

✱ 특정시책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추후 세부지침 통보 예정(6월 경)

▪ 평가대상기관

〈특정과제〉

– 과제선정 항목의 경우, 부처의 과제 제안 및 선정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의 경우, '05~'06년 특정과제 점검대상 개선조치사항에 해당 있는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부'단위 기관(18개) :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문화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금감위

• '청'단위 기관(8개) : 통계청, 경찰청 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해경청, 청소년위

✱ 추가·변경되는 기관 등은 6월 경 통보 예정

〈갈등해결 우수사례〉

– '07년도에 부처간 당사자 협의·조정 등을 통한 갈등해결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방법

〈특정과제〉

▪ 과제 선정 및 개선조치 이행상황 2개 항목에 대해 과제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가 공동으로 작성·제출한 서면자료 및 현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과제선정 항목

– 부처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과제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되어 '07년도에 평가 완료된 과제에 점수 부여

✱ 현행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정량지표 중심의 단년도 과제 평가로는 한계가 있어 정성평가의 보완이 필요하고 적시성 있는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사안 등을 선정

▪ 개선조치 이행상황 항목

– '07년도 상·하반기 이행상황 점검 대상 개선조치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내용을 점검하여 평가

〈갈등해결 우수사례〉

▪ 갈등해결 우수사례는 갈등해결 만족도, 협의·조정 소요일수, 조정 이후 이행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갈등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갈등해결 수단을 발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사례, 관계기관 간 당사자 협의·조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 등을 선정

(3) 고객만족도

가) 평가대상

▪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로 구분

– 정책의 최종고객인 국민의 주요정책 만족도 평가 결과를 정책수립·집행과정에 반영, 민의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도모

–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유도

✱ 고객만족도 세부평가지침은 6월 경 통보 예정

❍ '07년도에는 주요정책 만족도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기를 '08년 상반기로 일원화

✱ 청렴위, 국조실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나) 평가항목 및 방법

〈주요정책 만족도〉

❍ 대상기관별로 대표적 정책(3개 내외)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국민의 평가에 비중을 두고 전문가, 내부고객 등의 평가도 병행 실시

✱ 일반국민 중 직접적 정책고객 선정 포함 여부, 내부고객 선정기준 및 평가대상과제 범위 등은 6월 경 통보 예정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항목 만족도 (70)	1. 의견수렴도	○ 정책수립 · 집행과정에서의 고객 의견수렴도
	2. 적절성	○ 정책목표 및 하위 정책수단 등 정책내용의 적정성
	3. 투명성	○ 정책수립 ·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한 정책 협조노력
	4. 효과성	○ 정책이 의도한 성과(계량 및 비계량)가 나타나는 정도
	5. 일관성	○ 정책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집행된 정도
	6. 시정보완노력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정 · 보완 노력
체감만족도(30)		○ 정책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 · 직관적 만족도

✱ 정책제안 사항 : 추후 정책에 참고할 보완 · 개선 사항은 별도항목으로 설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대상기관별로 한 해 동안 제공한 민원서비스에 대해 민간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평가하되, 일반 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모집단 구성비율에 따라 설문대상 표본을 구성한 후, 민원 수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항목만족도(70)	1. 접근용이성	○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의 충실성 ○ 담당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용이성 ○ 민원실 공간의 쾌적성
	2. 신청용이성	○ 민원신청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부서의 방문 수 ○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3. 신속·정확성	○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정확성 및 능숙도 ○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4. 대응성	○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이유 제시 여부
	5. 형평성	○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체감만족도(30)		○ 일반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 인터넷 민원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항목만족도(70)	1. 신속·정확성	○ 민원서비스 처리 소요시간
	2. 대응성	○ 민원처리과정·상태에 관한 정보제공 및 검색 가능성 ○ 불편사항 관련 문제제기·건의에 대한 수용태도
	3. 형평성	○ 민원처리결과의 객관성 및 합당성 ○ 민원업무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
체감만족도(30)		○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직관적 만족도

(2) 특정평가방법

가) 특정평가 자료입력 및 제출

▪ 각 부처는 특정평가 근거자료 등을 평가 추진일정에 따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국무조정실, 평가협조기관에 제출

나) 특정평가 실시

▪ 관리대상업무는 국무총리가 평가부문별 협조기관, 관계전문가 등의 협조 및 지원을 통해 평가 추진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부문별 평가결과를 최종 심의·의결

▪ 특정시책은 정부업무평가위원·실무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가

▪ 고객만족도는 민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실시

(3) 특정평가일정

가)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07. 6월

▪ 특정평가 시행에 필요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상세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보

나) 특정평가 실시 : '08. 3월

▪ 평가협조기관은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 근거자료를 기초로 평가 실시

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08. 4월~6월

▪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 실무위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하여 평가결과의 사전검토 실시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평가개요

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합동평가)

✱ 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

– 다만,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개별평가)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지방자치단체 제외)이 자율적으로 자체평가 실시

(2)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가) 평가계획 제출 및 평가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평가(합동평가 및 개별평가)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계획을 작성(양식 6)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4.16)

–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편적인 사업이나 시책은 부처 자체 확인·점검으로 전환

– 특히, 유사성격의 사업은 통합하고 평가 대상시책을 각 부처의 중점과제 위주로 선정

① 합동평가

□ 계획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실시 3개월 전)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시책이 정책추진 방향에 맞게 평가될 수 있도록 시책의 지표개발 단계부터 의견제시 등 합동평가에 적극 참여

– 평가대상과제를 종적으로 계열화(평가분야–평가영역–평가시책)하여 평가과제 간 균형을 유지

▪ 행정자치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실시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행정자치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 당해 시책의 계획, 집행, 산출/결과, 결과활용 등 추진단계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

– 특히,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 평가 실시 및 보고

▪ 행정자치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적검증 및 기관방문 확인 등의 합동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 처리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조치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통보

– 평가결과를 정책개선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기능을 강화

② 개별평가

□ 계획 수립

▪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평가

✤ 개별평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세부평가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전문 기술적 점검 등 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평가 실시 및 보고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양식 7)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결과 처리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
– 개별평가 과제 중 정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합동평가에 연계·반영

(3) 자체평가

가) 평가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실·국·과 등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서 평가과제 선정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중점시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

나) 평가방법

① 자체평가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계획 수립

✤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기본방향·대상·방법
○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② 자체평가 실시 및 활용

- 민간위원 2/3이상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와 연계·반영

다. 공공기관 평가

(1) 평가개요

가) 공공기관 평가의 종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
-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

(2)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

가) 평가대상

▪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 공공기관〉

근거법률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평가주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획예산처장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국가재정법	기금	기획예산처장관 (기금운용평가단)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과학기술부장관 – 방위사업청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행정자치부장관 (경영평가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장 (경영평가전문기관 지정)

나)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 공공기관 평가를 실시하고자 기관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해 통합평가지표체계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견제시

✱ 관련 근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제⑤항) :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검토대상	세부 검토사항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 내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 간의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제출〉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 제출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

가) 평가대상

▪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의 조화, 불필요한 평가대상 확대 방지 등을 위해 지정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의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 복리증진 · 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동조 제2항)

나) 평가방법

〈평가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관 공공기관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실시 3개월 이전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양식 8)

〈공공기관 평가계획 검토대상 및 세부 검토사항〉

검토대상	세부 검토사항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
통합평가지표 체계와의 부합여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평가항목 및 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과정별 평가지표체계(계획-집행-산출/결과-평가결과의 활용)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대상 중복여부	동일한 평가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평가항목 내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상이한 평가항목 간의 평가지표 간 중복이 있는지 여부
평가시기 일원화 여부	평가항목 또는 평가지표를 동일한 시기에 평가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동일한 실적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평가결과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사전 협의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실시 후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결과 제출

참고 : 공공기관 평가시기(2007년도 실적)

공공기관 유형	평가대상 (평가내용)	계획수립 완료(또는 예정)	평가결과 확정(예정)	법상의무 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2007.7월	2008.6.20일까지	6월 20일까지 평가완료
기금	2007년도 (기금운용)	2006.12월	2008.5월	평가결과를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2007년도 (기금존치)	2006.12월	2007.5월	
연구회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6월	국과위 보고는 8월 중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4월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11월	2008.4월	· 4월30일까지 국과위에 평가결과 제출 · 4월30일까지 과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평가결과 제출
정부출연연구 기관	2007년도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2007.7월	2008.4월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 평가결과 제출
지방공기업	2007년도 (경영실적)	2008.3월	2008.11월	3월 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2007년도 (경영실적)	2008.3월	2008.11월	3월 말까지 평가계획 수립

* '07.4.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평가대상에 포함

④ 평가결과의 활용

가. 평가결과의 공개

자체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나. 평가결과의 보고

- 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평가보고회를 개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확인·점검을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을 보고

다.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조직,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

(1) 정책개선에의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
  -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체 시정조치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 및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

- 국무총리는 특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2) 조직 관리와의 연계

-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직관리기준(인력증원·복수 직급정원 상한 등)에 대해 자율권 차등 부여
-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평가결과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위한 전략 및 방법 제시

  ✱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조직관리지침」등에 반영할 계획(행정자치부, '07.4)

(3) 예산 편성과의 연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
- 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
  - 원칙적으로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액 조정

    ✱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반영할 계획 (기획예산처, '08.4)

(4) 인사 및 성과급 등과의 연계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개인별 성과관리에 반영
  - 승진·채용·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직무성과계약평가(4급 이상),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결과를 반영
  - 성과급(성과연봉·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특별승급 등에 반영

    ✱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07.2)」등에 반영(중앙인사위)

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정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⑤ 행정사항

가. 각 부·처·청 대상 설명회 개최

- 각 부·처·청 평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관련 설명회 개최(4.9)

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각 부·처·청 자체평가위원회간의 교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정보공유 및 평가제도의 원활한 정착 도모(구체적 방안은 상반기 중 통보)

다.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 세부지침 통보

▪ 평가총괄관련기관 및 협조기관 협의를 거쳐 평가부문별 구체적 측정방안 등에 대한 자체평가 매뉴얼 및 특정평가의 세부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6월 경)

✱ 평가분야별로 각 기관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 · 통보 예정

라.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환경 조성

▪ 각 부처는 사용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무조정실은 Help Desk 운영 및 교육 지원 추진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규정은 '07년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9월 말 이후 배포하고 이에 대한 교육 실시

⑥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 · 변경 추진

▪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대상과제 및 성과지표의 조정 · 변경(안)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 · 의결(하반기 중)

4.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부록4.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

① 추진 개요

가. 추진배경 및 근거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특히, 동법에서는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법 제5조 및 6조)

나. 성과관리계획의 개념

(1) 「성과관리전략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 · 장기계획

– 전략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계획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 · 장기 계획의 포함이 가능하며, 「국가재정법」에 의한 중 ·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2) 「성과관리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

– 시행계획에는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 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의 과거 3년간 성과결과 등을 포함

다. 성과관리계획 수립 기본방향

(1)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법 제1조)

▪ 기존에 부문별로 분산·운영되던 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주요정책과제·재정·조직·인사·정보화 등 기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부서·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계된 통합 체계 구축

(2) 최대한의 자율성 부여와 엄격한 책무성 확보 (법 제4조)

▪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에 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국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수립

✱ 특히, 계획 수립은 관련기관, 이해관계인 및 조직 구성원들과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관한 의견조율 등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립

(3) 정책의 결과와 효과에 중점을 둔 계획수립 (법 제4조)

▪ 투입 또는 과정중심의 성과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조직 및 구성원의 활동에 따른 궁극적인 정책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접근

(4)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계획과 업무관리 (법 제5조, 제6조)

▪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

(5)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환류 (법 제28조~제30조)

▪ 제시된 목표와 달성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조직·재정 등에 환류하는 등 성과와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포함

라. 계획수립 대상기관

▪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이 되는 48개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계
부 단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27개
청 단위	국정홍보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21개

마. 계획수립 범위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포괄하여 작성

▪ 평가 및 개인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부문(주요정책과제 · 재정성과 · 인사 · 조직 · 정보화)을 고려하여 작성

〈부문별 계획수립 범위〉

부 문	범 위
주요정책과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을 망라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내에 해당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함 ※ 인건비 ·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 제도 · 규제 등 정책관련 세부업무도 주요정책과제 부문에 포함
재 정 성 과	○ 재정성과 부문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 체계상 정보화 사업을 제외한 모든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단, R&D 부문은 「200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기획예산처, '07.4 시달예정)」상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으로 함
인 사	○ 해당 기관이 설정한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보유인력 및 조직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운영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를 대상 –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정부 인사혁신 기본방향 및 인사관련 법령 · 지침 · 매뉴얼, 인사부문 평가지표 등을 고려
조 직	○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조직수준 등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운영 방향 및 역점 추진과제를 대상 –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07년 정부 조직관리 지침'을 비롯한 조직관련 법령 · 매뉴얼, 조직부문 평가지표 등을 고려
정 보 화	○ 각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시달한 '2008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의한 대상사업을 비롯하여 그 외의 정보화 사업까지 포함

② 지난해 보다 개선되는 사항

(1)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기를 예산순기에 맞춰 운영

✱ 지난해의 경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06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지침 시달 및 계획 수립이 하반기로 순연되어 운영

▪ 특히, 성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과계획서'를 통합 · 운영

(2)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의 논리적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목표 설정 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지양

▪ 각각의 목표들이 임무달성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계획기간 동안 성과의 개선여부 또는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

○ 임무–목표–과제 간 논리적 관계 설명 방법 (p14, p39~40, p55~56)
- 전략목표가 기관의 임무를 어떻게 달성하고 전략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기술하고, 해당 성과목표가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되는 관계를 제시 (전략맵 등의 활용도 가능토록 함)

○ 구체적 목표설정의 방법 (p9, p17)
-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또는 계획기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
  (예) "참여 · 협력 · 통합의 뉴 거버넌스를 구현한다" (×)
  "2007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24.5억불을 달성한다" (○)

(3) 성과측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목표치 설정근거 명확화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제시 필수화

▪ 성과지표별로 목표치 설정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연구노력, 통계인프라 확충,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 성과지표별로 계획연도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된 근거와 사유 등을 과거 3년치 실적과 함께 기술토록 하여 목표 설정의 합리성 확보

과제 및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08년 목표치 산출근거
	'05	'06	'07	'08	
○ 관리과제명 · 성과지표명 · 성과지표명	※실적기재				'08년 목표치 산출의 구체적 근거를 상세히 제시 (예) 과거 실적 및 추세와 '07년도 실적인○○을 감안하여 08년에 ~할 것을 목표로 설정

○ 성과지표 개선 · 관리 계획 등의 제시
- 각 기관의 성과측정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검토체계, TF운영방법, 성과지표 POOL, 이력관리 방법 등과 기관 특성을 고려한 성과측정 특수성 또는 인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을 기술
- 특히, 통계적 뒷받침이 없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계의 발굴계획과 기존 통계수치가 정책성과와 역행 · 상충하는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통계의 수정 · 보완, 관련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등 대책 제시

▪ 성과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위해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외에도 성과목표의 성과를 종합적 ·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제시 필수화

○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제시 – ✱ '07년 계획에서는 선택사항
- 해당 목표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보다는 정책 대표 범위가 넓으며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중 정책대표성이 있는 지표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개발하여 제시

③ 성과관리전략계획 작성 방법

가. 기본방향

○ 기관의 임무와 전략목표의 명확한 제시
○ 계획수립 과정에서 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 환경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혁신 실천계획 수립

▪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과정은 조직 구성원 간 목표를 공유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조직 활동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상시 점검하는 연속 과정임을 인식
  – 조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이해 관계자간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과정으로 추진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임무와 전략목표간의 연계를 고려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중·장기적 전망의 구체화를 위해 기관의 임무와 장기목표 및 외부 환경요인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 임무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혁신 실천 계획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

나. 목표 수립체계 및 방법

▪ 해당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중·장기 성과목표를 제시하며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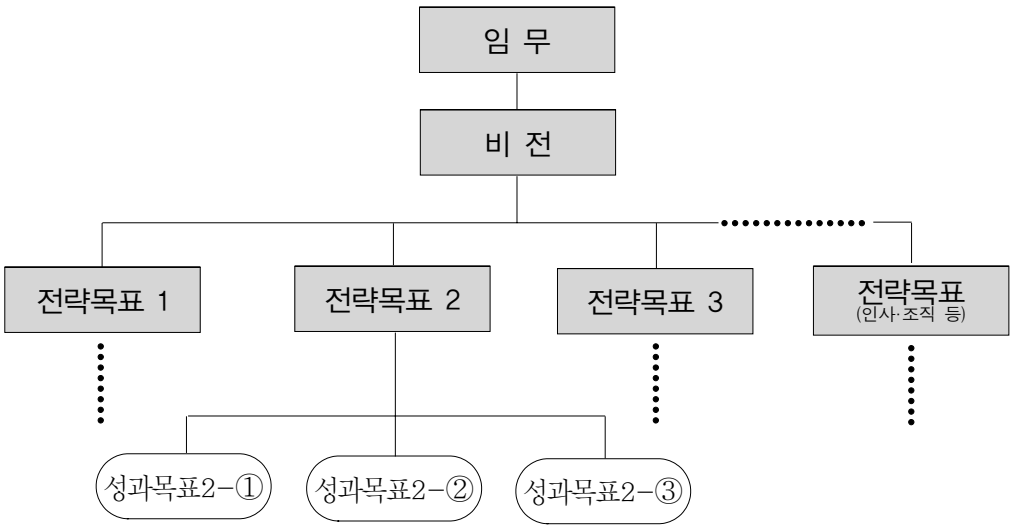

✱ 인사·조직 분야 등 기관 전반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성과목표와 과제는 별도의 전략목표를 구성하여 사업 중심의 전략목표와 구분하도록 함

✱ 전략계획에서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않음

(1) 임무와 비전

▪ 임무는 해당기관의 존재이유(목적)와 주요기능을 의미

– 해당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규정,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역할 등에 근거하여 가급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지향적'인 내용으로 설정

– 설정된 임무는 기관의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타 기관과의 불필요한 중복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함

– 표현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목표 지향적이어야 함

✱ 임무설정 사례 (국세청) : "국세청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비전은 장기적인 목표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조직의 정책 추진 방향 설정과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을 수행

– 비전 설정은 조직의 현재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해하기 쉽고 종합적이며 고무적인 표현으로 함

✱ 단순한 전략의 나열 또는 상상에 의한 비전 수립은 피함

(2) 전략목표

▪ 전략목표는 국정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이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할 내용으로 제시

–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져야 하며, 전략계획에 이러한 연계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

▪ 전략목표는 전략계획의 계획기간(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전략목표는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정책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표어 형태로 작성

(예)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변칙 상속 · 증여 등 지능적 · 고의적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한다"

✱ 전략목표를 임무 수준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정책 성과 예측 또는 성과목표 설정이 곤란

(예)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한다"(×), "선진 ○○체계를 구축한다"(×)

▪ 전략목표 수립 시 국가 장기계획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포함 (법 제5조 제1항)

–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 계획의 주요 내용을 활용

–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이 소관 분야별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활용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5년 주기)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0년 주기)

▪ 특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수립 시 「국가재정법」 제7조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 (법 제5조 제3항)

–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 중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분야별 주요 성과목표'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수립

▪ 전략목표는 기관 내의 실·국·본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부서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유사 정책은 동일한 목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전략목표의 수는 기관 전체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전반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정

(3) 성과목표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정

✱ '성과관리전략계획'상의 성과목표는 계획기간 5년간의 '중·장기 성과목표'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수립되는 '연도별 성과목표' 보다는 넓은 개념

–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고려하여 설정

– 다만, 특정 전략목표 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체계가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연도와 목표 수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책 방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것

▪ 성과목표도 전략목표와 동일하게 계획기간(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함

– 일반적이거나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표어 형태로 작성

✤ 성과관리계획과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연계

◇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한 성과측정 및 평가의 결과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연계

○ 즉, 기관별로 성과관리계획의 성과목표와 예산서상의 프로그램을 연계

– 이 경우,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재정성과 부문)는 프로그램의 하부 단위인 '단위사업'을 활용하여 작성

다. 계획 작성 방법

(1) 성과관리전략계획 작성모델

▪ 다음의 체계를 참고하여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성과관리전략계획 작성모델〉

1 그 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 ○ 그 간의 정책추진 기조 및 추진성과, 향후 정책방향 제시

2 일반현황 및 전략계획 개요
- ○ 기관의 개요 (조직 · 인원 · 재정 등)
- ○ 전략계획의 개요
- ○ 목표체계 (임무 · 비전 설명 및 체계 도식화)

3 세부 추진계획
- ○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 – 성과목표 제시
  - – 추진계획 및 실행수단
  - – 외부 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의 근거

4 환류 등 관련계획
-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환류체계
- ○ 기관의 전반적 혁신계획
- ○ 이해관계자 관리 등 갈등관리계획

✱ 전체적인 작성체계는 유지하되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

(2) 항목별 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첨 양식 참조)

가)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 그 간의 정책기조 및 성과

–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까지의 정책기조 및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이에 근거한 현 시점에서의 수준 제시

✱ 관련 통계 및 그래프 등을 제시하여 구체성 확보

▪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앞으로 해당기관이 추진할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략목표 설정의 근거로 활용

– 목표설정의 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 설정 부분이므로 전략목표를 요약하거나 동일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일반현황 및 전략계획 개요

▪ 기관의 개요

– 기관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위해 조직 및 인원 (조직도, 조직 · 직급별 인원), 주요 항목별 재정규모 등을 제시

▪ 전략계획 개요

– 전략계획서 작성 시 주안점을 두고 고려했던 요소와 국민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새로운 내용 및 그 배경에 대해 기술

▪ 목표체계

– 해당기관이 추진해야할 기본적인 고유 임무와 비전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립된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구성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

다) 세부 추진계획

▪ 전략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각각의 전략목표별로 이의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와의 연관관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제시

– 성과목표별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수단, 기술, 각종 자원(재원 · 인력 · 정보) 등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정과 수단 제시

***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성과 정책 추진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략목표 추진과 관련한 외적 환경요인 및 이해관계자 분석, 참고자료 및 관련 정보 제시

라) 환류 등 관련 계획

▪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함께 추진해야할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기관 전반의 혁신 계획, 갈등관리 계획을 기술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는 평가결과를 조직 · 인사 · 예산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문제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

✱ 각 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구성체계 및 운영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업무평가결과를 해당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의 방향 제시

– 기관 전반의 혁신부문에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계획(예산절감 · 업무프로세스 · 조직문화 개선 등) 등을 제시

✱ 성과측정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노력, 통계인프라 확충노력,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노력 등에 관한 중장기 추진방향 포함

– 갈등관리계획 부문은 전략목표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갈등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제시

라.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정 · 보완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소한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법 제5조)

– 이는, 국정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다른 법령에 의한 '중 · 장기계획'의 수정 등 정책 방향이 조정될 경우 '성과관리전략계획'도 적기에 수정 · 보완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수정 · 보완도 가능

▪ '06년 12월 수립된 「'07~'11년 성과관리전략계획」을 기관의 주요 정책방향 변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중 · 장기 계획, 전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 보완

– 수정 · 보완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은 향후 5년간인 '08년~'12년간을 내용으로 함

④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방법

가. 기본방향

○ 전략계획에 기초한 연간 성과목표의 명확한 정의
○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제약조건에 대한 엄격한 분석
○ 성과목표 설정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등
○ 성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나. 목표수립 체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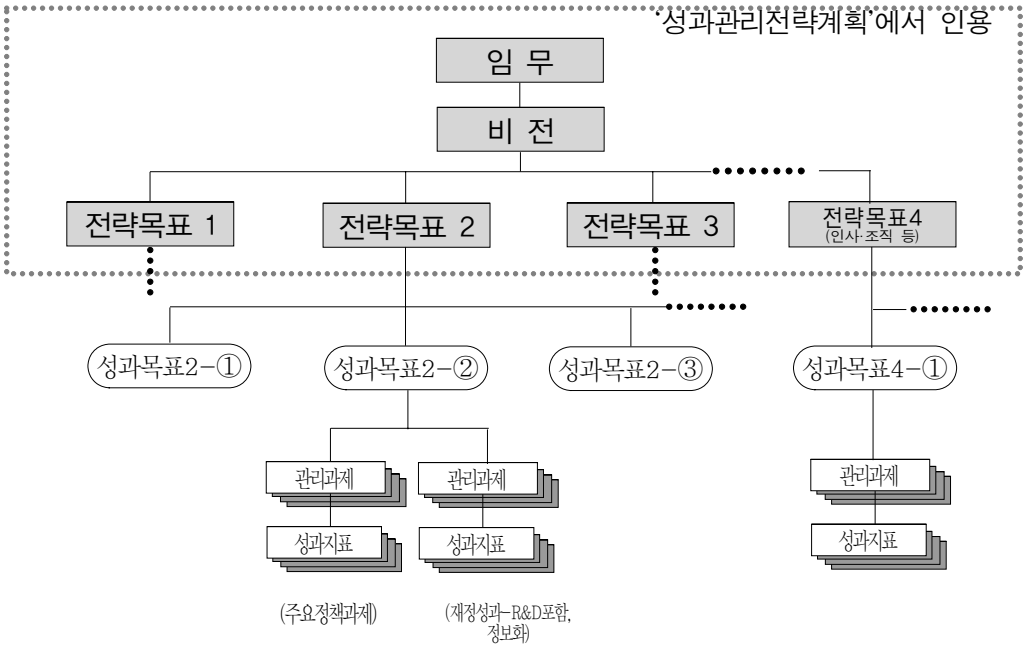

✱ 인사 · 조직 분야 등 기관 전반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성과목표와 과제는 별도의 전략목표를 구성하여 사업 중심의 전략목표와 구분하도록 함

(예) 특정 사업에 연계되지 않고 기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정보화 부문), 국제교류 업무(주요정책과제 부문) 등

(1)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임무 · 비전 · 전략목표는 '성과관리전략계획' 상의 임무 · 비전 · 전략목표를 인용하여 동일하게 작성

(2) 성과목표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 목표로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임
- 성과목표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의 목적에 맞게 가급적 업무의 최종적인 효과를 파악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측정가능성 및 목표 달성만을 강조하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 성과목표 설정 시 업무 범위를 과 · 팀 등 조직체계에 따라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수의 과 · 팀에 의해 수행되는 사항이라도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사항은 통합
- 전략목표별로 설정하는 성과목표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 전반을 고려하여 설정할 것
- 다만, 특정 전략목표에 지나치게 많은 성과목표를 기술하여 목표체계가 균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

(예) 7개 전략목표에 54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중 1개의 전략목표에 17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목표 체계가 균형을 상실

▪ 성과목표는 당해연도 동안 성과의 개선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 성과목표는 일반적 · 추상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하며 표현방식은 표어 형태로 수립

✱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성과목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는 동일해도 무방
(3) 관리과제 (✱ '주요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의 개념 및 선정방법' 참조)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 정책 또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며, 업무 추진 및 향후 성과 측정의 대상이 됨

(예) 성과목표에 따른 관리과제

• 성과목표 : 2010년까지 ○○생명과학단지를 BIO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관리과제 : ① ○○단지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 ② 4대 국책기관 이전 · 신축
  – 관리과제 설정 시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R&D포함), 정보화, 인사, 조직 등 5대 부문간 과제의 명칭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도록 설정

  ✱「'07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단위과제(주요정책과제), 단위사업(재정 · 정보화, 인사, 조직)으로 표현한바 있으나, '성과관리계획'과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관리과제'로 명칭 변경

(4) 성과지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개별 정책과 사업 단위인 관리과제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시
  – 특히,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부터는 성과목표의 종합적 성과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도 제시토록 의무화

  ✱ 시행 첫해인 '07년 시행계획에서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과제별 성과 측정을 보완하기 위해 '08년부터 의무화

✤ 주요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의 개념 및 선정 방법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의 개념
  ○ 주요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기관이 계획 기간 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개별 정책으로서 재정성과 · 정보화 등 타 부문의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의 과제

◇ 타 부문 과제수준과의 비교
  ○ 재정성과, R&D, 정보화 부문 등의 관리과제와 비교할 때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분야 과제들을 포괄하여 설정한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개념임
  – 주요정책과제 부문은 재정성과, 정보화 부문의 관리과제 보다 상위단계의 개념으로 해당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관리과제'로 선정

  ✱ 지엽적인 내용을 주요정책과제부문 관리과제로 설정할 경우, 성과관리의 실익이 없어지며 과제 설정 시 혼란 초래
  (예) ○○○개발회의 활성화(×), 관계부처와의 협력 · 조정(×), ○○계획수립(×)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 선정방법
  ○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를 선정하되,
  – 주요정책과제 부문이 타 부문보다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 정책 중 각종 정책과 사업을 종합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
  – 주요정책과제 부문 관리과제 설정 시 재정성과(재정사업자율평가대상), 정보화 부문(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 대상과제)의 과제를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의 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함

  ✱ 단, 사업단위가 세부사업 수준의 사업일지라도 인건비 · 기본경비 등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 · 제도 · 규제 등 정책관련 사항 중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것은 '주요정책과제' 부문으로 선정하여 관리

다. 계획 작성 방법

(1)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모델

▪ 다음의 체계를 참고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모델〉

1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 ○ 그간의 성과 및 당해연도 정책추진 방향 설명

2 일반현황 및 시행계획 개요
- ○ 기관현황 (조직 · 인원 · 재정 등)
- ○ 시행계획의 개요
  - – 전략계획과의 연관성, 목표체계도, 목표 및 과제현황

3 세부 추진계획
-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제시
  - –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R&D, 정보화 부문으로 구분 작성
  - – 목표 및 과제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등

4 환류 등 관련계획
- ○ 당해연도 평가 및 환류계획
- ○ 기관 전반의 혁신계획
- ○ 이해관계자 관리 등 갈등관리 계획

5 관리과제별 설명자료
- ○ 성과목표별로 제시된 관리과제의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제시

(2) 항목별 작성요령 (※세부 작성요령은 별첨 양식 참조)

가) 2008년도 정책추진 방향

▪ 그간의 성과 및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 제시
- – 당해연도에 해당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간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

나) 일반현황 및 시행계획 개요

▪ 기관 현황

– 조직 및 인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

▪ 시행계획의 개요

– 시행계획의 근거가 되는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핵심사항을 요약하고 전략계획과의 연관성을 기술

✱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임무 및 비전, 전략목표가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제시

– 시행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분야 또는 국민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주요 정책 환경 변화 및 동향 등 계획수립 기본방향과 특성 등을 제시

– 당해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등의 목표 체계도를 제시하고, 목표와 관리과제 현황 기술

다) 세부 추진계획

①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정보화 분야 순으로 관리과제의 내용 제시

✱ 관리과제 설정 범위는 본 지침 '부문별 계획수립 범위' 참조

– 각 과제 및 사업이 해당 목표 달성에 연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계획 및 수단을 제시

② 성과지표의 제시

– 제시된 관리과제별로 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검증방법 등을 기술

✱ 구체적인 내용은 'V장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참조

③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등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영향에 대한 분석과 주요 갈등 요인을 분석 · 제시

라) 환류 등 관련계획

▪ 당해연도에 추진해야할 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기관 전반의 혁신계획, 갈등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행상황 점검은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추진정도,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하는 체계 및 방법 등을 기술 (법 제6조 제4항)

–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서는 평가결과를 조직 · 인사 · 예산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문제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

✱ 주요 평가 및 점검 일정, 각 기관 성과관리시스템 구성체계 및 운영방법을 상세하게 설명

✱ '정부 조직관리지침'(조직), '직무성과계약 운영지침'(인사), '예산편성 지침'(예산), '공무원 연봉 업무 처리지침'(성과급) 등을 참고하여,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제시

– 기관 전반의 혁신부문에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 계획(예산절감 · 업무프로세스 · 조직문화, 성과측정 체계 개선 등) 등을 제시

✱ 각 기관의 성과측정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노력, 통계인프라 확충 노력,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제시

– 갈등관리계획 부문은 전략목표 추진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갈등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제시

마) 관리과제별 설명 자료

▪ 주요정책과제 및 재정성과(R&D포함), 정보화 부문의 관리과제별로 구체적인 설명 자료 제시

– 관리과제별로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재정지원형태(재정관련 사업) 등을 제시

– 단, 인사 · 조직 분야는 사업별 설명자료 제시 불필요

✤ 성과관리계획과 정부업무평가의 관계

◇ 성과관리는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일련의 과정임

- ○ 각 기관별로 매년 6월 말까지 차년도 성과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협의 · 보완 결과,'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 차년도 연두업무계획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
- ○ 이를 통해 확정된 성과관리계획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차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

5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가. 기본방향

- ▪ 성과목표는 임무 ·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연결하는 중간목표 이므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또는 성과목표와 사업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
-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 ·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객관적 · 정량적 설정이 어려운 경우는 최대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 (법 제6조 제2항)

나. 성과목표 설정 방법

(1) 결과지향적인 목표설정

- ▪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정책 등의 최종적인 효과를 적절히 파악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 – 측정가능성 및 달성 가능성만을 강조하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2)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

▪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가 불명확할 경우 이에 근거한 성과지표 또한 모호해지므로 성과목표 설정단계부터 구체성 확보에 노력

(3)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의 연계성 확보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연간)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간의 연계성 강화

다. 성과지표 설정 원칙[4)]

(1) 객관적 · 결과 중심적 지표설정

▪ 성과지표는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한 성과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도록 설정하고, 특히 관리과제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의 난이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

구 분	정량지표 (계량지표)	정성지표 (비계량지표)
정 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 성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음 반복측정 시 동일한 결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
예	– 우량농지 조성면적 – 해외건설 수주액 – 관광수입액 증가율 – 인구 10만명 당 5대 범죄 발생율	– 민원인 만족도 –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정도 –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 기획 · 조정 등 포괄적 업무의 경우 오히려 실제 목표와는 거리가 먼 '회의빈도', '참가자 수'와 같은 지엽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정량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

4) 성과지표의 구체적 개발방안은 '06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보급한 '성과지표 개발 · 관리 매뉴얼'을 참고

▪ 가급적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위주로 설정하며,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

〈지표내용에 따른 분류〉

구 분	개 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 ·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율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 직업훈련 수료자 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2) 정책대표성 및 목표치 수준의 적정성 확보

▪ 성과지표는 해당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함

▪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3년 간의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

✱ 3년간 실적 평균을 근거로, 전년도 보다 낮은 실적을 제시하시 않도록 함

(3) 성과지표의 객관성 확보

▪ IMD · WEF · UN 등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및 각 기관의 분야별 국가경쟁력 강화노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국가경쟁력지수를 직접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국가경쟁력 지수'의 성과제고를 위한 세부 수단으로서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그 자료의 출처 등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과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함

✤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

○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성과목표 확인
- 지표 개발에 앞서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주요내용 확인

○ 성과지표의 수집
- 기존지표와 해외 또는 타 기관 선진지표를 수집하여 관련지표 Pool을 형성

○ 후보 성과지표 개발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가 적정하지 않거나 선진사례를 통해 지표수집이 어려운 경우,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따른 적정한 지표를 새롭게 개발
- 새로 개발된 지표들 중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목록 작성

○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대표성이 있는 소수의 성과지표로 통합
-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달성이 용이한 지표를 사용하였는지 점검
- 수시 측정이 가능하고 자료 활용이 용이한 지표를 선택

○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간 중복 또는 상충여부를 검토 · 조정하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여러 부서 간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경우 성과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결정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수립
- 성과지표 관련 자료의 생성과 관리절차를 구체화하고, 외부 환경변화 및 조직변화에 따른 성과지표의 변경 · 수정 등 지속적 관리방안을 명확화

○ 성과지표의 상세화
-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한 상세화
- 계산식 표현을 통한 상세화

6 추진 일정

(1) 계획 초안 수립 및 제출 ('07.6.29까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성과관리전략계획(안)」과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을 '07년 6월 29일까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성과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08년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는 「'08년도 성과계획서」는 「'08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계획(안) 사전검토 ('07.7.2~8.31)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전반적인 체계, 목표 수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내에 위원·실무위원·관련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성과관리계획 검토 TF'를 구성·운영

✱ 사전적으로 '평가총괄 관련기관'은 각 기관의 부문별 성과지표 체계와 지표의 정책대표성,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종합검토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보완을 요청

✱ '07.8.31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에 최종 검토의견 통보예정

(3)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보고 ('07.12.31까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 및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내용을 반영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년 12월 31일까지 수립

✱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립된 「'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내용도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08년 최초로 개최되는 국회 임시회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정부업무평가 백서

발행일 : 2007년 12월

발　행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TEL : (02)2100-2244
FAX : (02)2100-88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011호

※ 백서의 내용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psec.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